

월간

# 재정포럼 10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10월호 제160호

**현안분석** •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특집 · 2010년 예산안** •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정책토론포트** •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정책흐름**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b>권두칼럼</b></p> <p><b>현안분석</b></p> <hr/> <p><b>특집 · 2010년 예산안</b></p> <p><b>정책토론티포트</b></p> <p><b>주요국의 조세동향</b></p> <p><b>정책흐름</b></p> <p><b>재정통계</b></p> <p><b>이슈 &amp; 포커스</b></p>	<p>02 친서민 친기업은 동반관계 · 배병후</p> <p>08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 전병목</p> <p>27 소득분배 동향 고찰 · 성명재</p> <hr/> <p>52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 안일환</p> <p>57 2010년 예산안 평가 · 홍승현</p> <p>64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p> <p>75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p> <p>88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p> <p>115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p> <p>11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p> <p>125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p> <p>127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p> <p>12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p> <p>130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p> <p>133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p> <p>136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외</p> <p>139 외국기업, 한국은 세금으로 가장 힘든 나라 외</p>
---	---

# 친서민 친기업은 동반관계

- 상품설계, 공급, 사후관리가 성공요인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 실용정책이란 온건, 화합, 만사형통형 위기 관리 정책으로 들린다. 정부 출범 초기의 친기업 실용주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대한 반론이자 경제위기에 상심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생활공감형’ 대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부자 지갑 열기도 친서민 뒷받침

친기업 실용주의는 초보정부 시절 촛불시위로 좌왕우왕하느라고 반서민, 부자정권이란 정치적 비판에 걸려 들었다. 그러다가 오히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MB경제가 순발력을 발휘하여 선수(先手)경영으로 조기 위기극복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이다. 내년도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친서민·중도 실용을 내세운 후 경제민심이 좋아지고 MB의 인기가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보금자리 주택보급을 비롯하여 학자금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장기융자, 생계형 전과자 대량 사면에 이어 최근에는 2조원의 서민은행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지방경제를 배려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고소득층의 소비기반 확충계획도 확정했다.

고소득층에게 요트와 골프를 권장하겠다는 정책도 친재벌이기보다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서민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친서민이다. 이들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된 친서민형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어 집값 안정, 주가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니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선수 경영으로 고삐를 잡고 친서민으로 친재벌 비판을 순화시켰으니 정치적으로 성공이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부자정권에게 정책브랜드를 도용당했다”고 받을 동등 굴리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시의적절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된다.

**대기업 ‘정책효과’에 친서민 균형**

당초 MB의 친기업은 노무현 정부의 반기업에 불복한 국민여론의 수렴이었다. 반면에 최근의 친서민은 친재벌 부자정권이라는 정략적 비판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친기업을 버리고 친서민으로 반전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양자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정권이나 친서민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지가 부족했거나 역부족으로 서민에게 따뜻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도 즐기치게 친서민, 친노동을 지향했지만 ‘생산없는 분배’, ‘일자리 없는 성장’이란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MB정부는 반사적으로 친기업과 전봇대 뽑기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노력했다고 믿어진다.

그렇지만 초기 인사가 ‘강부자’, ‘고소영’이란 가혹한 비판을 받으면서 부자정권으로 낙인되고 개혁입법마다 ‘MB악법’이란 험담을 듣고 심지어 물관리를 위한 4대강 정비마저 70년대식 토목공사라는 혹평을 받고 있으니 속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따지고 보면 친기업과 친서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반기업 위에 친서민이 존립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절로 해답이 나온다. 다만 경제위기 수습과정에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바로 양극화 심화를 말해주고 친서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대기업 CEO 출신이기에 태생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친재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가령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SOC예산의 조기집행이나 감세 등 선제적 대응책을 동원한 ‘정책 효과’의 1차적 수혜자가 대기업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의한 ‘중국효과’나 엔고 등 ‘환율효과’ 등도 글로벌 대기업들의 수혜 몫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친서민을 강조한 것은 친기업의 포기가 아닌 균형회복을 위한 배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따지고 보면 친기업과 친서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경제위기 수습과정에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바로 양극화 심화를 말해주고 친서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

.....  
 친서민 중도 실용을  
 만사형통형이라  
 평가하지만 정책적  
 선심이 아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 회복의 정책설계와  
 집행이 요구된다.  
 .....

**공짜의식이 도덕적 해이 유발**

친서민 중도 실용을 만사형통형이라 평가하지만 정책적 선심이 아닌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 회복의 정책설계와 집행이 요구된다. 국가예산을 비롯하여 공익자금, 지원금, 보조금 등은 어느덧 임자없는 공짜 돈으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집행과정이나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이 정부와 민간부문 및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는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민에게 돌아갈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먹은 탐욕자 리스트에 공무원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자금일수록 겁없이 훔쳐내는 도덕적 해이가 기생한다. 경제위기 이후 개인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 보조금, 보상금 등은 감사만 하면 도용과 유출이 줄줄이 나온다. 과거 농어촌 발전기금을 공직자가 빼내어 단란주점 차리고 주유소까지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이럴때 친서민 정책으로 나온 각종 생활공감 방안에 공짜의식이 기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세수는 감소하고 재정수요는 팽창하고 국가부채는 한정없이 늘어가고 있을때 아무런 검토나 예측 없이 인기위주로 덜컥 친서민 정책을 내놨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면서 친서민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상품설계, 공급과정 사후측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미국의 인기 위주 주택정책으로부터 발단된 것으로 듣고 있다. 주택 모기지론이란 것이 무소득 무신용 서민에게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끝내 시장경제 원리를 극복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져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반값 아파트를 행여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포기 로 인식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부풀려 한국형 금융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저신용자들을 위한 '미소은행' 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여 공짜돈 인식을 심어준다면 금융질서를 다시 혼란시킬 수도 있다.

미소은행 기금 2조원은 전경련 1조원, 은행·증권사 3천억원, 휴면예금 7

천억원 등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벌써부터 2중3중의 준조세라는 불만이 들린다. 대기업들은 대·중소 상생 프로젝트, 불우이웃돕기, 장학·문화사업 등 사회적 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시 서민용 지원금까지 분담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런저런 대목을 짚어보면 친서민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지만 상품의 정책설계와 공급과정 및 사후 성과측정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가 한 점 침투하지 못하게 투명·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성공요인이라 믿는다. **Kipf**

.....  
 친서민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지만 상품의  
 정책설계와 공급과정  
 및 사후 성과측정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가  
 한 점 침투하지 못하게  
 투명·공정해야 한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byungj@kipf.re.kr)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관련  
기술개발과 평균수명 향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늘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I. 서론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간적인 삶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 및 수요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관련 기술개발과 평균수명 향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늘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전국민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기여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정부가 재원조달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는 2007년 기준 3.7조원 수준이다. 그 구성은 근로자와 달리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고용주가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1.0조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소득세의 의료비 공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규모는 2007년 기준 3.7조원<sup>1)</sup>이며 상위 10% 소득자의 공제규모는 1.2조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여준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증가해 왔는데 건강보험 지출의 경우 1990년 2.2조원에서 2007년 26.0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향후 의료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1) 소득공제액에 각 개인의 한계세율을 곱하면 세수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는 크게 소득과 가격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소득증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 증가는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가격요인에 기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가격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부담증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가격기능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의료수요가 의료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가격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득측면의 연구에 치우쳐 있고 소득세 공제제도와 관련 있는 가격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다. 과거의 잦고 부분적인 의료제도 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가격변수를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지출 측면에서 소득탄력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0.7~1.2 수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거나 지출추계를 위해 이용하였다(김종면·김우철(2007), 송준혁·이삼호(2006), 정우진(2005), 전영준(2004), 최준욱·전병목(2003)<sup>2)</sup>. 반면 가격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김춘배 외(1995)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김춘배 외(1995)에서도 가격변수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 구입시 가입자 본인부담률을 가격대리변수로 이용한 시계열분석에서 탄력성을 -0.1~-0.6으로 추정하였다.

본고는 현행 소득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의료서비스 구매가격을 낮추고 이러한 가격은 세율인하에 따라 변화함에 착안하여 소득세 세율인하가 있었던 2005년을 중심으로 의료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약제비 지출, 의료기기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의 세 종류로 구별하여 탄력성을 포함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탄력성 추정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 수요관리 방안 도출에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기능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의료수요가 의료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가격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II. 제도현황

### 1.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관장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모든

2) 소득탄력성은 2.3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별 차이는 접근방법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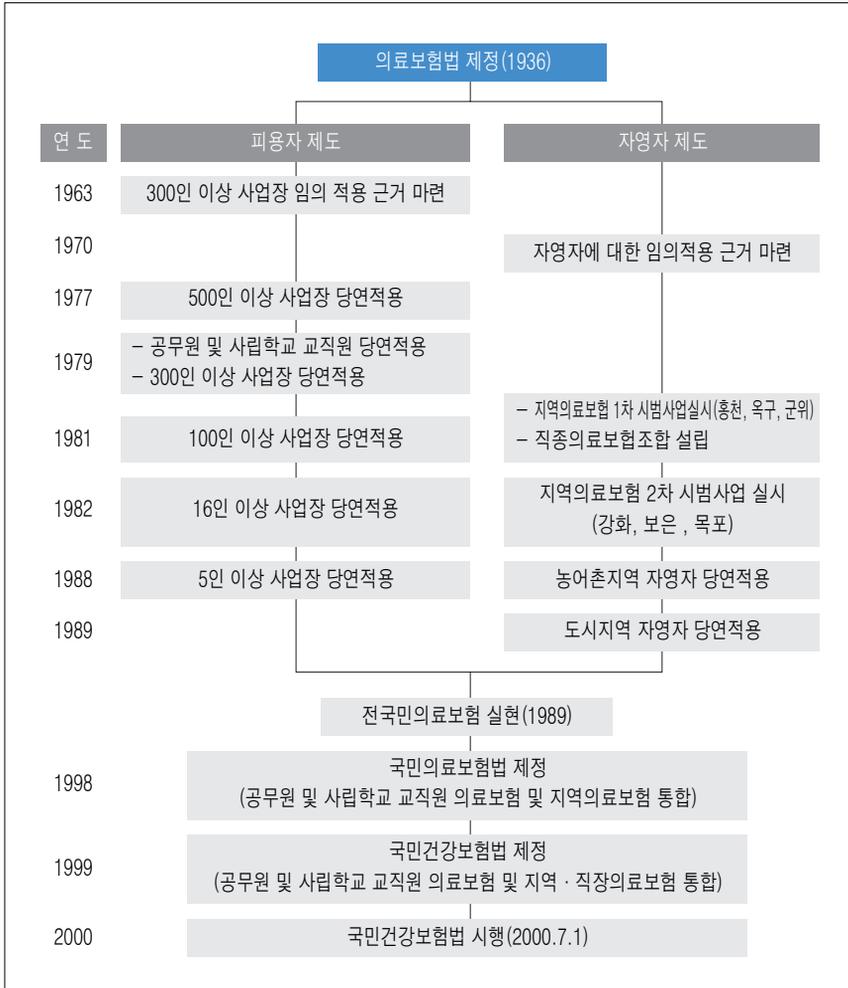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대 초반 적자를  
보이다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험요율 인상으로  
2003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국민에게 의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은 1989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체제 또한 과거 집단별 보험자 독립채산방식에서 1998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통합하여 단일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시스템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은 보수총액이며 고용주가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낮은 소득과악률을 반영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성·연령, 경제활동참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요율은 2008년 기준 직장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의 5.08%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반영한 부과요소별 점수당 148.9원을 적용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가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가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국고를 통해 40%를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와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7년 기준 47.7백만명으로 정부보조 의료급여 인구 약 1.8백만명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대 초반 적자를 보이다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험요율 인상으로 2003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2007년 총수입 26.0조원 중 보험료 수입이 21.7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부보조금은 3.7조원 수준이다.

〈표 1〉 건강보험제도 연혁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개요

보험료 부과요율은 2008년 기준 직장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의 5.08%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반영한 부과요소별 점수당 148.9원을 적용하고 있다.

〈표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추이

(단위: %)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장	3.19	3.03	3.75	2.8	3.4	3.63	3.94	4.21	4.31	4.48	4.77	5.08
공·교	4.6	3.8	5.6	3.4								
부과 기준	기본급				표준보수						보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개인 및 정부의 재정부담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가격탄력성을 포함한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표 3〉 지역보험료 산정 점수당 적용금액

(단위: 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수당 금액	115.8	123.6	126.5	131.4	139.9	148.9

〈표 4〉 건강보험 재정 및 적용현황

(단위: 백만명, 조원)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적용인구	40.0	45.9	46.1	46.5	47.0	47.3	47.4	47.4	47.7
총수입	2.4	9.8	11.9	14.3	17.5	19.4	21.1	23.3	26.0
총지출	2.2	10.7	14.1	14.8	16.0	17.3	20.0	22.8	26.0

주: 정부보조프로그램인 의료급여 적용인구 약 1,8백만명은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개인 및 정부의 재정부담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가격탄력성을 포함한 지출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며 향후 막대한 지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의료비 소득공제

소득세제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근로능력 유지라는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6종류의 특별공제중의 하나로 일괄적인 경비공제 형식인 표준공제제도와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귀속소득 기준 특별공제 선택자는 6.4백만명으로 표준공제 선택자 2.9백만명보다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특별공제의 선택비중이 높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며 그 범위도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특정한 의료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7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진찰·진료·질병예방의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안경·보청기 구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부분의 소득 파약을 제고를 위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진찰·진료·질병예방의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안경·보청기 구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1항 3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5.25, 2005.2.19, 2008.2.22>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2.22, 2009.2.4>

소득세 의료비공제제도의 운영 결과 그 규모는 2007년 기준 1.8백만명 3.7조원 수준으로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액의 4.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득세 의료비공제제도의 운영 결과 그 규모는 2007년 기준 1.8백만명 3.7조원 수준으로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액의 4.1%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5〉 근로소득자 의료비공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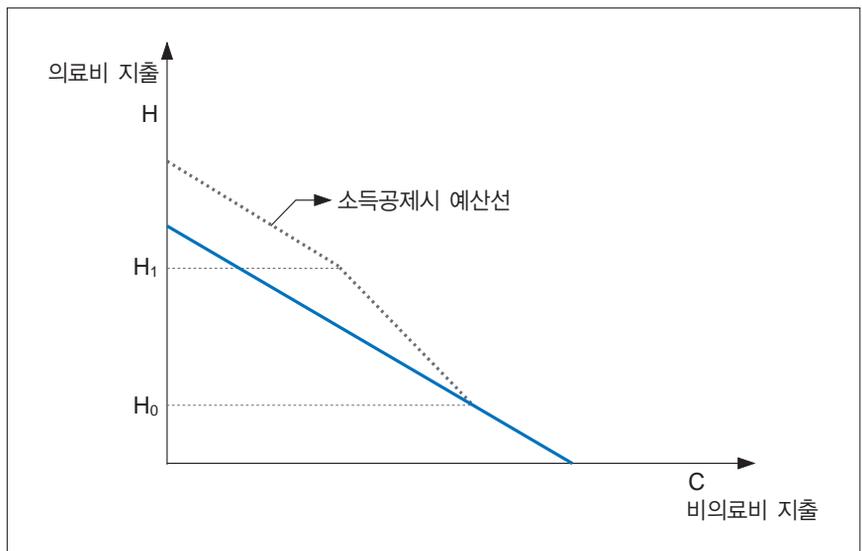
(단위: 백만명, 조원)

	2005		2006		200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급여 총계	11.9	279.4	12.6	317.9	13.4	336.5
소득공제 총계	-	183.9	-	198.2	-	212.8
- 근로공제	11.9	107.6	12.6	115.0	13.3	123.5
- 기타소득공제(A)	-	76.2	10.1	83.1	10.7	89.3
• 의료비공제(B)	1.5	2.8	1.5	2.8	1.8	3.7
(B/A, %)		3.7	14.6	3.3	16.9	4.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러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지출을 의료비 지출과 비의료비 지출로 나눌 때 대상 개인(혹은 가구)의 예산선을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보여 개인의 소비구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림 1]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효과



### Ⅲ. 실증분석

#### 1. 선행연구

의료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이의 변화를 모색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세제혜택이 의료서비스 구매시점 가격을 낮출 때 나타나는 수요의 반응과 세제혜택이 구매시점이 아닌 소득세 신고시점에 주어질 때 나타나는 수요의 반응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구매시점에 주어지는 가격보조(세제혜택 등)의 수요반응도는 Gruber(2001), Glied and Remler(2002), Gruber and Poterba(1996), Stabile(2001) 등에서 조사 혹은 분석하였으나 서비스 구매시점과 세제혜택이 실현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수요탄력성 연구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구매시점에 대한 세제혜택의 사례로는 비과세되는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구입시 소득공제 등으로서 Newhouse(1993), Gruber and Poterba(1996), Stabile(2001), Finkelstein (2001)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 \sim -0.7$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혜택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김춘배 외(1995)에서 의료비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연도별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유사한 탄력성을  $-0.1 \sim -0.6$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추정방법은 실제 서비스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의료서비스 구매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요탄력성 연구는 거의 없다. Long(2003)은 조세혜택의 시점과 의사결정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로 미국 대학교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HOPE and Lifetime Learning Tax Credit)이 대학진학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Smart and Stabile(2003)은 캐나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변화를 통해 세제혜택으로 야기된 수요탄력성을  $-0.27 \sim -0.9$ 로 추정하여 직접적인 지원제도에서 추정된 수요탄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세제혜택의 시점 차이가 있는 제도에 대한 수요탄력성 추정은 개인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검증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혜택과 의료수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혜택과 의료수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형에서 추정하는 의료수요의 가격 반응도는 기본적으로 단연도 내 소득 및 각종 공제구조 차이에 따른 횡단면적인 변화와 함께 2005년 서울인하로 인한 한계세율 차이에 기인하게 된다.

## 2. 자료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 가계조사 2004~2006년 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2005년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로 가계가 직면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변화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조사자료의 가구구성 및 지출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한계세율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공제에 따른 조세가격 변화가 야기하는 수요변화를 추정하게 된다.

개인단위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반면 소비지출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부 중 높은 근로소득을 갖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공제 중 고려 가능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공제의 합과 상호비교하여 공제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의료비의 지출은 다시 약제비, 의료기기 구입비, 의료서비스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출 항목별 수요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의료비 공제의 한도가 없는 소득자 본인 등과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지출을 구분할 수 없어 모든 지출이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3. 모형 및 실증분석

모형에서 추정하는 의료수요의 가격 반응도는 기본적으로 단연도 내 소득 및 각종 공제구조 차이에 따른 횡단면적인 변화와 함께 2005년 서울인하로 인한 한계세율 차이에 기인하게 된다. 만약 자료가 패널의 형태라면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가계조사자료의 한계상 두 가지 요인이 공존하는 한계가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도 변화 전후인 2004~2006년 기간 동안의 가계조사자료를 Pooling하여 Smart and Stabile(2003)에서 사용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ln(H_{i,t}) = \alpha + \beta(\text{tax price})_{i,t} + \delta X_{i,t} + \gamma P_t + \varepsilon_{i,t}$$

이러한 모형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 의료비지출이 전체소득과 의료

비 가격 등의 함수로 유도될 수 있음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 $\ln(H_{i,t})$ )는 의료비 지출의 대수값인데 이는 분포의 표준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이용되는 지출의 종류는 총의료비 지출과 함께 부분별로 약제비, 의료기기 구입비, 의료서비스 구입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연로그를 취함으로 인해 지출이 0인 경우에 관측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의료비 지출이 없는 가구는 전체 16,727가구 중 50가구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왜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비를 부분별로 구분할 때에는 관측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관측치 누락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의료용품 지출의 경우로 2,318개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수준변수 등을 이용하여 재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을 위해 모든 지출변수는 2000년 기준 가격으로 전환하였으며 조세가격은 개인별로 직면하는  $(1-\text{한계세율}) \times PM_i$  (의료물가지수)로 정의되며  $X_{i,t}$ 는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변수이다. 가구 및 개인의 특성은 의료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소득의 제곱, 연령, 연령의 제곱, 20세 미만 자녀 수, 60세 이상 고령자 수, 가구소비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가격에 포함되는 의료 소비자물가지수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바, 각 항목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전체 의료비에 대한 가격변수로는 소비비중이 높은 의료서비스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그 외 의료비 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인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분석에서는 자료상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상태가 연령과 소득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는 연령, 소득변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어 추정결과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격 탄력성의 추정에 있어 가구별로 계산된 조세가격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함수  $P_{i,t}(H_{i,t})$ 로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단순비교의 목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료비 공제대상 가구의 지출행위 변화에 대해 이해가 가능할 것이나 전반적인 지출행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가구의 의료비공제가 허용되는 최초 1원 소비에 대한 조세가격으로 소득자가 의료비공제 하한선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의료비를 1원 추가지출할 때 부

내생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단순비교의 목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분석하고 둘째, 가구의 의료비공제가 허용되는 최초 1원 소비에 대한 조세가격으로 소득자가 의료비공제 하한선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의료비를 1원 추가지출할 때 부담하는 조세가격을 이용한다.

가구별 총의료비는 104만원 수준이며 부분별로는 의료서비스비가 67만원, 약제비가 24만원, 의료기기 구입비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하는 조세가격을 이용한다. 조세가격은 가구의 지출수준과는 독립적이며 실제 조세가격과는 유사한 패턴을 갖는 도구변수로 기능하게 된다.

가계조사자료 2004~2006년 자료 중 소득, 지출 등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10개월 이상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16,727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004년 5,183개, 2005년 5,169개, 2006년 6,375개로 구성된다. 분석 대상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가구별 총의료비는 104만원 수준이며 부분별로는 의료서비스비가 67만원, 약제비가 24만원, 의료기기 구입비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에는 병원외래진료비, 입원치료비, 치과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용품에는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분석 자료의 특성

변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표준편차
총 의료비	1,035,086	0	84,193,450	637,233	1,575,023
약제비	238,036	0	47,421,715	142,060	466,136
의료용품비	102,198	0	5,298,308	44,603	200,310
의료서비스비	666,245	0	84,035,152	285,574	1,396,948
입원치료비	158,937	0	27,597,133	0	692,078
치과진료비	184,794	0	19,655,387	2,676	620,758
손해보험료	28,412	0	4,901,672	0	149,412
가구소득	29,234,046	0	308,328,278	26,262,007	18,246,080
가구주 연령	47	17	94	45	12
거주면적	20	3	92	19	7
가구소비지출	21,300,282	977,876	123,649,322	19,538,955	11,254,504
남성 여부	0.8117	0	1.0000	1.00	0.3909
배우자 유무	0.8829	0	1.0000	1.00	0.3216
자녀 수	1.1532	0	5.0000	1.00	1.0260
노인 수	0.3357	0	5.0000	0.00	0.6419
조세가격1(서비스)	68.3	0	102.7	76.7	34.9
조세가격1(의약품)	68.1	0	100.0	77.7	34.7
조세가격1(의료용품)	68.5	0	101.0	77.1	34.9
조세가격2(서비스)	51.3	0	102.7	52.3	35.4
조세가격2(의약품)	51.2	0	100.0	51.7	35.2
조세가격2(의료용품)	51.4	0	101.0	52.3	35.4
표준공제	0.3243	0	1.0000	0.00	0.4681
가구규모	3.2821	1	9	3.25	1.1091

우선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샘플을 이용한 일차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구 의료비 지출은 60세 이상 노인 수, 배우자의 존재, 가구 소비지출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기능을 하는 조세지출과는 음(-)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가구소득과 가구소득의 제곱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도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은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즉 연령제곱 항의 계수가 양(+)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가능기간(20~59세)의 의료지출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수의 경우 전체 의료비 지출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의약품 지출은 유의미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의료용품 지출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시력교정용 의료용품 수요가 자녀들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 수의 영향은 의료용품 지출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소비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인층의 의료수요는 안경 등 의료용품의 소비보다는 노화에 따른 질병치료 관련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비 지출은 조세가격에 유의미하게 반응하며 반응의 탄력성은 의료서비스가 가장 높고 의료용품 지출과 의약품 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한 의료비용 감소가 전반적인 의료지출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료용품의 반응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조세지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비로 구성된 의료용품 수요가 필수재에 가깝기 때문이다. 의약품 지출에 대한 가격의 영향도 유의미하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의료비 지출은 60세 이상 노인 수, 배우자의 존재, 가구 소비지출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기능을 하는 조세지출과는 음(-)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조세가격에 대한 의료비지출의 반응성은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낮아지나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7〉 모든 샘플을 이용한 OLS분석

	총 의료비지출	의약품 지출	의료용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조세가격(의료서비스)	-0.011 ( $<.0001$ )	-	-	-0.013 ( $<.0001$ )
조세가격(의약품)	-	-0.0082 ( $<.0001$ )	-	-
조세가격(의료용품)	-	-	-0.0040 ( $<.0001$ )	-
가구소득	1.28E-09 (0.2531)	2.60E-09 (0.0556)	4.66E-09 (0.0030)	-5.67E-10 (0.7095)
가구소득 <sup>2</sup>	-2.52E-17 (0.0058)	-3.04E-17 (0.0058)	-2.31E-17 (0.0637)	-3.03E-17 (0.0139)
가구주 연령	-0.0681 ( $<.0001$ )	-0.0047 (0.4299)	-0.1216 ( $<.0001$ )	-0.0842 ( $<.0001$ )
가구주 연령 <sup>2</sup>	0.0007 ( $<.0001$ )	0.0002 (0.0006)	0.0011 ( $<.0001$ )	0.0009 ( $<.0001$ )
남성 여부	-0.0378 (0.1021)	-0.0091 (0.7447)	0.0147 (0.6657)	0.0476 (0.1294)
배우자 유무	0.2350 ( $<.0001$ )	0.1855 ( $<.0001$ )	0.1457 (0.0015)	0.2089 ( $<.0001$ )
자녀수	-0.0048 (0.6027)	-0.0566 ( $<.0001$ )	0.1564 ( $<.0001$ )	-0.0146 (0.2377)
노인수	0.2428 ( $<.0001$ )	0.3555 ( $<.0001$ )	-0.0820 (0.0014)	0.2412 ( $<.0001$ )
가구소비	3.90E-08 ( $<.0001$ )	2.30E-08 ( $<.0001$ )	2.81E-08 ( $<.0001$ )	4.39E-08 ( $<.0001$ )
상수	14.411 ( $<.0001$ )	11.1547 ( $<.0001$ )	13.2802 ( $<.0001$ )	14.1448 ( $<.0001$ )
Adj. R-squared	0.2628	0.1623	0.1351	0.1972
샘플 수	16,677	16,522	14,409	16,279

주 1. 조세가격은 (1-한계세율)×의료물가지수  
 2. ( ) 안은 P-value

의료비 지출과 조세가격이 갖는 내생성이 추정치의 일치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의료비공제가 가능한(특별공제 선택) 샘플만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 방법은 전반적인 가구의 의료수요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의료비공제를 신청한 가구의 수요패턴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의료지출이 많은 계층에 대한 분석이 되며 Sample Selection의 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추정결과 조세가격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반응성은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낮아지나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의료용품 지출의 경우, 영향력의 수준이 매우 낮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다른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 중 가구소득 변수는 영향의 방향이 반대로 전환된다. 즉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순수한 소득효과는 음(-)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가구소비, 가구주 연령, 자녀 수 및 노인 수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이전의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순수한 소득효과는 음(-)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의료비공제 가능 샘플만을 이용한 OLS분석

	총 의료비지출	의약품 지출	의료용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조세가격(의료서비스)	-0.0051 (<.0001)			-0.0064 (<.0001)
조세가격(의약품)	-	-0.0021 (0.0009)	-	-
조세가격(의료용품)	-	-	-0.0003 (0.7178)	-
가구소득	-5.49E-09 (0.0007)	-5.24E-09 (0.0120)	-7.02E-10 (0.7330)	-8.64E-09 (0.0002)
가구소득 <sup>2</sup>	1.01E-17 (0.4251)	5.56E-18 (0.7320)	-2.05E-18 (0.9126)	1.72E-17 (0.3370)
가구주 연령	-0.0864 (<.0001)	0.0077 (0.4449)	-0.1402 (<.0001)	-0.1225 (<.0001)
가구주 연령 <sup>2</sup>	0.0009 (<.0001)	4.21E-05 (0.6988)	0.0012 (<.0001)	0.0013 (<.0001)
남성 여부	-0.0389 (0.2204)	0.0234 (0.5662)	0.0784 (0.1112)	-0.0207 (0.6457)
배우자 유무	0.1188 (0.0053)	0.1200 (0.0283)	0.1911 (0.0066)	0.1149 (0.0585)
자녀 수	-0.0310 (0.0047)	-0.0769 (<.0001)	0.1190 (<.0001)	-0.0147 (0.3451)
노인 수	0.1633 (<.0001)	0.3351 (<.0001)	-0.1124 (0.0006)	0.1317 (<.0001)
가구소비	3.12E-08 (<.0001)	2.21E-08 (<.0001)	2.52E-08 (<.0001)	3.57E-08 (<.0001)
상수	15.1931 (<.0001)	-11.1518 (<.0001)	13.8560 (<.0001)	15.3852 (<.0001)
Adj. R-squared	0.1103	0.0814	0.1072	0.0728
샘플 수	9,300	9,251	8,547	9,208

주: 1. 조세가격은 (1-한계세율)×의료물가지수

2. ( ) 안은 P-value

조세가격의 도구변수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지출은 조세가격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변화의 방향성도 양(+)으로 나타나 경제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았다.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의 자료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제가능 의료비 1원 지출시 적용되는 조세가격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공제가능 의료비 1원 지출시 조세가격은 가계의 의료비 지출행위와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이전 분석에서 존재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조세가격의 도구변수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지출은 조세가격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변화의 방향성도 양(+)으로 나타나 경제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개인이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서는 한계세를 변화 효과가 거의 없고 또한 의료비 지출의 상당부분이 건강상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가격탄력성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의료용품 지출의 경우, 양(+)의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게 나타난다. 가구소득의 영향도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차항의 경우 미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존재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성별은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의약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의료용품 지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소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녀 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의료용품 지출은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의료용품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수요층이 20세 미만 자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구 내 노인 수가 많아지면 고령으로 인한 병원 방문 등 의료서비스 지출과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나 자녀 중심의 의료용품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의약품 지출의 반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지출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표 9〉 의료비공제 개시 조세가격을 이용한 OLS분석

	총 의료비지출	의약품 지출	의료용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조세가격(의료서비스)	0.0001 (0.4755)	-	-	0.0003 (0.4253)
조세가격(의약품)	-	6.61E-05 (0.8202)	-	-
조세가격(의료용품)	-	-	0.0011 (0.0022)	-
가구소득	-1.67E-10 (0.8906)	1.57E-09 (0.2653)	3.12E-09 (0.0500)	-2.55E-09 (0.1152)
가구소득 <sup>2</sup>	-3.48E-17 (0.0004)	-3.74E-17 (0.0010)	-2.13E-17 (0.0888)	-3.99E-17 (0.0022)
가구주 연령	-0.0514 (<.0001)	0.0073 (0.2367)	-0.1130 (<.0001)	-0.0632 (<.0001)
가구주 연령 <sup>2</sup>	0.0005 (<.0001)	0.0001 (0.3268)	0.0009 (<.0001)	0.0006 (<.0001)
남성 여부	-0.0353 (0.1539)	-0.0081 (0.7775)	0.0107 (0.7552)	0.0519 (0.1174)
배우자 유무	0.3528 (<.0001)	0.2662 (<.0001)	0.1882 (<.0001)	0.3413 (<.0001)
자녀 수	-0.0184 (0.0589)	-0.0669 (<.0001)	0.1493 (<.0001)	-0.0334 (0.0104)
노인 수	0.2901 (<.0001)	0.3886 (<.0001)	-0.0636 (0.0136)	0.2951 (<.0001)
가구소비	4.21E-08 (<.0001)	3.02E-08 (<.0001)	2.87E-08 (<.0001)	4.74E-08 (<.0001)
상수	13.2070 (<.0001)	10.2865 (<.0001)	12.7838 (0.0001)	12.7247 (<.0001)
Adj. R-squared	0.1567	0.1170	0.1265	0.1073
샘플 수	16,677	16,522	14,409	16,279

주: 1. 조세가격은 (1-한계세율) × 의료물가지수  
 2. ( ) 안은 P-value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면 조세가격과 지출간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할 경우, 의료가격의 의료비 지출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면 조세가격과 지출간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할 경우, 의료가격의 의료비 지출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의료지출을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지출비중이 낮은 의료용품을 제외하고는 가격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약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등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이 질병 등 건강상태에 따라 주로 결정되어 가격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인해

분야별 탄력성의 크기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0.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외래 및 입원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가능 계층의 의료지출을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균일한 것도 가격에의 반응도가 낮은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의료용품 수요의 경우 양(+)의 탄력성(0.06)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적 직관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자로 한정하였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이 -0.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자의 경우, 조세가격의 변동에 의료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탄력성의 크기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0.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외래 및 입원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가능 계층의 의료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반응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수요부문이 커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용품의 경우에도 지출 항목인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에 대한 추가적 지출에 대한 필요성 혹은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한된 계층에 대해 추정된 가격탄력성 수준은 미국,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수요가 다른나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표 10〉 추정방법에 따른 의료비 조세가격 탄력성

	전체샘플	부분샘플법	도구변수법
총 의료비	-0.75 ***	-0.22 ***	0.01
• 의약품 지출	-0.56 ***	-0.09 ***	0.00
• 의료용품 지출	-0.27 ***	-0.01	0.06 ***
• 의료서비스 지출	-0.89 ***	-0.28 ***	0.02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IV. 결론

의료비 지출부담은 향후 국가재정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그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료 수요 증가의 원인은 크게 소득, 가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향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소득세 공제 제도와 같은 가격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어 추정의 필요성이 높다.

가계조사 2004~2006년 자료를 풀링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의 가격 탄력성은 전반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계층이 절반수준에 머물러 공제제도 변화로 인한 조세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기도 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도 자료의 제약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이 일정수준 이상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지출의 가격탄력성은  $-0.09 \sim -0.28$  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사례의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준다<sup>3)</sup>.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의료서비스 수요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에 대한 지출 결정 과정에서 조세혜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약품의 반응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수요부분이 커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용품의 경우 지출 항목인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에 대한 추가적 지출에 대한 필요성 혹은 시급성이 떨어져 추정결과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조정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기존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혹은 필요경비에 대한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 제도로 인한 의료수요의 추가적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 공제제도가 갖는 의료가격 인하를 통한 의료수요 증가를 소득공제 대신 일정액의 비과세 의료저축계좌 적립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소득자 자신에 대한 지출과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지출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과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 가구원에 대한 지출을 구분할 수 없어 개인이 직면하는 정확한 한계세율을 도출할 수 없는 한계는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정교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KIPF**

의료비 소득공제의 조정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 공제제도가 갖는 의료가격 인하를 통한 의료수요 증가를 소득공제 대신 일정액의 비과세 의료저축계좌 적립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미국과는 의료보험 방식에 제도적 차이가 있으므로 추정된 가격 탄력성 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김춘배 · 이도성 · 김한중 · 손명세, 「의료보험하에서의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분석」, 『예방의학회지』 제28권 제2호, 199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 건강보험공단, 『2008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
- Gruber, Jonathan, “Taxes and Health Insurance,” NBER Working Paper 8657, NBER 2001
- Long, Bridget, “The Impact of Federal Tax Credits For Higher Education Expenses,” NBER Working Paper 9553, NBER 2003
- Pauly M., Song D., Herring B., “Tax Credits, The Distribution of Subsidized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The Uninsured,” NBER Working Paper 8457, NBER 2001
- Smart and Stabile, “Tax Credits and The Use fo Medical Care,” NBER Working Paper 9855, NBER 2003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 I. 서론

본고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및 이와 관련이 깊은 몇 가지 지표에 대한 변화추이 고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를 요약하자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그 값이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를 곡선으로 표현하면 1990년대 중반을 지점으로 하여 완만한 U자형의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소득단계별로도 지니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지니계수 값의 변화로부터 공공부문의 조세·재정지출이 상대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다.

최근 상대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소득분배격차의 확대로 인한 문제가 소득계층간 상대소득비율의 단순한 확대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빈곤율 상승에 따라 생존에 위협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소득계층을 특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일정한 가구 구성비율로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경우가 많다. 10분위(deciles) 또는 5분위(quintiles) 구분에 의한 분석이

소득분배격차의 확대로 인한 문제가 소득계층간 상대소득비율의 단순한 확대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빈곤율 상승에 따라 생존에 위협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유경준(2009) 참조

본고에서 소득분배구조 관련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비교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가구비율 대신에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별 가구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 외(2009)에서 보듯이 일정한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서민층, 중상층, 고소득층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한 예이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 II. 소득분배구조의 현황

### 1.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1982~2008년의 통계청 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가계조사자료는 기간에 따라 자료의 모집단 포괄범위와 정보의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다. 1982~2002년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제공의 범위는 가구의 인적 특성과 자산변동 사항,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사항이다. 다만 소득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sup>2)</sup>. 2003~2005년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2인 이상 가구로 포괄범위를 확대하였고 소득 관련 정보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농어가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단위의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본고에서 소득분배구조 관련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별도의 언급을 부연하지 않는 한 가처분소득<sup>3)</sup>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비교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 2. 소득분포의 변화추이

#### 가. 소득분포

실질후생 수준의 비교를 위해 본절에서는 가처분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1 기준)로 할인하여 산출한 실질가처분소득의 분포 변화추이를

2)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로자외가구, 즉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소득을 역소비함수 추정법으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3)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을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순차적으로 민간이전소득을 합산하면 민간소득(private income),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라고 정의한다. 총소득에서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각종 사회보장기여금)를 차감하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그리고 소비세까지 차감하면 세후소득(post-tax income)이라고 정의한다.

살펴보았다.

1982~2008년 사이에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구당 평균 실질가처분소득은 1,039만원에서 3,782만원으로 26년 동안 3.6배로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가 3.0배(408만원 → 1,229만원), 6분위가 3.8배(951만원 → 3,641만원), 10분위가 3.5배(2,286만원 → 8,101만원) 증가하였다. 중위소득 계층(4~6분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그것보다 높다.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이 높아 상대 소득분배격차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지니계수 변화추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저소득층(1~2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3~8분위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9~10분위의 고소득층에서는, 1980년대보다는 소득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1990년대 말에 비해 2000년대 이후 그 비율이 소폭 상승한 후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점차 1~2분위 등의 저소득층에서 고령자의 구성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은 만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저소득층에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 소득 비중 감소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그 밖에 높아진 실업률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점유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점차 1~2분위 등의 저소득층에서 고령자의 구성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4)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소득이동성이 하락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이동성의 하락에 대해서는 성명재·강신욱·이철인(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각 요인별 기여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가처분소득계층별 실질가처분소득 분포(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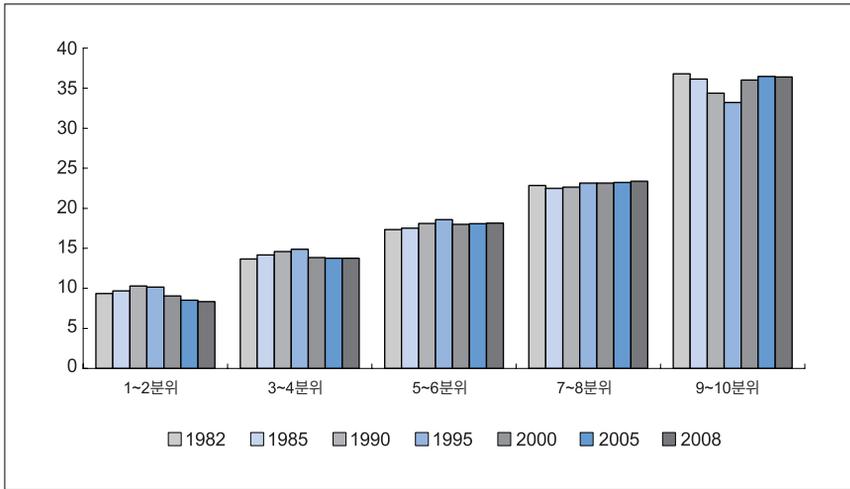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1982(A)	4083	5640	6593	7591	8485	9506	10946	12798	15407	22855	10389
1983	4302	5918	7043	8115	9221	10325	11660	13657	16234	23917	11040
1984	4610	6484	7808	8873	9979	11297	12626	14592	17720	25928	11992
1985	4929	6864	8071	9089	10059	11239	12708	14594	17667	26246	12146
1986	5317	7565	8893	10083	11317	12732	14262	16333	19802	28316	13463
1987	6160	8475	9826	11329	12691	14231	16134	18696	22447	33055	15303
1988	6888	9583	11335	12842	14332	15954	17990	20372	24491	35766	16953
1989	8075	11144	13112	14866	16521	18383	20617	23569	28264	41671	19622
1990	9290	12707	14750	16533	18343	20421	22699	25793	30469	43196	21417
1991	10406	14256	16562	18755	20874	23273	25798	29044	33690	45910	23856
1992	11249	15708	18322	20610	22727	25299	27945	31054	36549	49970	25944
1993	11576	16045	18755	21243	23683	26072	28865	32397	37136	52516	26830
1994	12226	17128	19977	22503	25081	28041	31112	35114	40764	54962	28694
1995	13080	18582	21795	24525	27414	30354	33818	38201	44226	59142	31112
1996	13696	19476	22800	26005	29325	32603	36474	40973	47110	64300	33279
1997	8657	16853	21551	25290	28708	32027	36052	40899	47647	66324	32402
1998	5834	11723	16098	19571	22924	25980	29604	33869	39996	57249	26285
1999	11092	15997	19223	21960	24849	27983	31510	36108	42211	59233	29017
2000	11734	17103	20504	23594	26997	30425	34442	39352	46367	68420	31897
2001	12388	17694	20877	23890	27013	30441	34457	39498	46574	66398	31923
2002	12173	17651	21351	25042	28285	32101	36188	41627	49333	70460	33422
2003	12586	19087	23347	27057	30928	34750	39258	44845	52406	75584	35986
2004	12815	19480	23881	27854	31948	36064	40654	46368	54971	79725	37377
2005	12717	19266	23909	27815	31890	36089	40734	46362	55680	81326	37584
2006	12494	19062	23343	27688	32032	36355	41220	47106	55425	79922	37462
2007	12387	19194	24073	28236	32491	36816	41667	47643	56520	81752	38081
2008(B)	12289	19316	23893	28129	32185	36411	41174	47101	56691	81009	37818
B/A	3.0	3.4	3.6	3.7	3.8	3.8	3.8	3.7	3.7	3.5	3.6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982	3.93	5.42	6.37	7.28	8.18	9.16	10.50	12.34	14.85	21.96	100
1983	3.89	5.35	6.39	7.35	8.36	9.36	10.53	12.43	14.67	21.67	100
1984	3.84	5.4	6.54	7.37	8.28	9.47	10.56	12.16	14.78	21.60	100
1985	4.06	5.63	6.68	7.48	8.28	9.23	10.47	12.02	14.54	21.60	100
1986	3.96	5.62	6.60	7.47	8.41	9.49	10.61	12.1	14.67	21.08	100
1987	4.03	5.53	6.41	7.44	8.27	9.32	10.51	12.23	14.69	21.57	100
1988	4.06	5.66	6.68	7.59	8.44	9.41	10.64	12.00	14.48	21.04	100
1989	4.12	5.68	6.67	7.57	8.44	9.36	10.5	12.01	14.42	21.22	100
1990	4.34	5.94	6.90	7.70	8.57	9.52	10.59	12.05	14.27	20.12	100
1991	4.37	5.97	6.95	7.85	8.76	9.79	10.77	12.19	14.12	19.24	100
1992	4.34	6.05	7.07	7.94	8.74	9.77	10.73	12.02	14.08	19.26	100
1993	4.31	5.99	6.99	7.89	8.88	9.70	10.74	12.09	13.83	19.59	100
1994	4.26	5.97	6.96	7.85	8.76	9.73	10.86	12.24	14.18	19.19	100
1995	4.20	5.97	7.01	7.87	8.83	9.74	10.89	12.26	14.23	18.99	100
1996	4.11	5.86	6.86	7.79	8.82	9.80	10.95	12.31	14.18	19.32	100
1997	2.67	5.20	6.64	7.81	8.88	9.86	11.14	12.63	14.68	20.49	100
1998	2.22	4.46	6.14	7.43	8.71	9.90	11.26	12.90	15.21	21.78	100
1999	3.83	5.50	6.64	7.55	8.56	9.65	10.84	12.45	14.55	20.42	100
2000	3.69	5.35	6.43	7.41	8.46	9.53	10.80	12.34	14.54	21.47	100
2001	3.87	5.56	6.52	7.49	8.47	9.52	10.79	12.38	14.61	20.78	100
2002	3.64	5.28	6.4	7.49	8.46	9.60	10.83	12.45	14.75	21.10	100
2003	3.5	5.31	6.49	7.52	8.58	9.65	10.90	12.47	14.60	20.99	100
2004	3.42	5.23	6.38	7.46	8.53	9.66	10.88	12.40	14.71	21.33	100
2005	3.38	5.13	6.36	7.40	8.47	9.60	10.87	12.34	14.81	21.65	100
2006	3.34	5.09	6.23	7.38	8.54	9.73	11.01	12.55	14.82	21.32	100
2007	3.25	5.05	6.33	7.41	8.53	9.68	10.94	12.54	14.80	21.49	100
2008	3.26	5.09	6.32	7.43	8.51	9.63	10.89	12.48	14.98	21.41	100

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재분류하였음. 가처분소득은 CPI(2005=1)로 할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질소득 기준임.

[그림 1] 소득계층별 가치분소득 점유비 비중 변화추이

(단위: %)



경제위기 기간(1998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하위 30%)의 개인세부담 비중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12% 초반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7.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나. 개인세부담 분포

본절에서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근로·종합소득세 및 이자·배당소득세), 재산세와 각종 소비세에 대한 세부담을 개인세부담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계층별 세부담 비중의 변화추이를 추정해보았다(그림 2 참조).

경제위기 기간(1998년)을 제외하면 저소득층(하위 30%)의 개인세부담 비중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12% 초반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7.0%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3~2008년 기간 동안 가치분소득 비중은 17.2%에서 14.7%로 14.5% 감소하였으며, 개인세부담 비중은 12.0%에서 7.0%로 41.7%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비중의 감소율에 비해 개인세부담 비중의 감소율이 상당히 컸음을 시사한다.

중간층(중위 40%)의 경우에는 개인세부담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초보다 소폭 부담비율이 높아진 상황(1993년 31.4%→2008년 32.0%, 1.9% 증가)이다. 같은 기간 동안 가치분소득 비중은 37.2%에서 36.5%로 소폭 감소(-2.0%)하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비록 절대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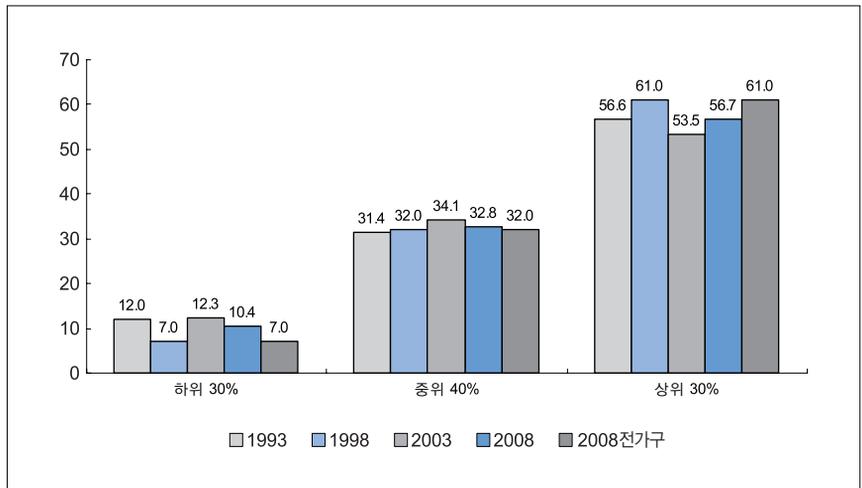
고소득층(상위 30%)의 경우에는 다소의 등락 끝에 개인세부담 비중이 50%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소득단계의 구별없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반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61.0%로 개인세부담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1993년의 56.6%에 비해 약 7.8% 증가한 수준이다. 상위 30% 계층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1993년 45.5%에서 2008년 48.9%로 7.1% 증가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개인세부담 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2] 소득계층별 개인세부담 분포 추이의 변화(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 3.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소득단계의 구별없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경제위기 기간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이 기간을 특이관측치(outliers)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찰해보면 그런 해석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지니계수 변화패턴을 살펴보면, 시장소득과 민간소득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문별 임금격차의 확대<sup>6)</sup> 등과 같은 시장여건, 즉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시장소득 및 민간소득의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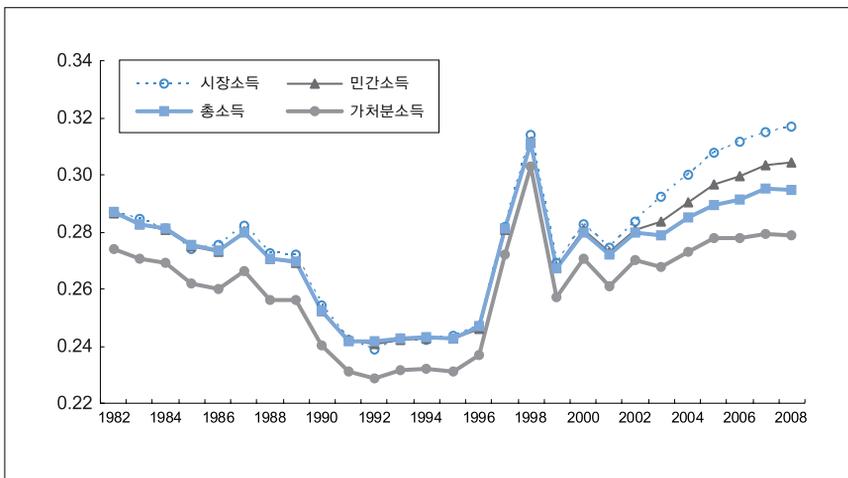
6) 원종학·성명재(2007) 참조

고령할 때 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핵심 구성원으로 두텁게 자리매김하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화에 따라서도 시장·민간소득 단계의 소득불평등도도 확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민간소득단계의 상대소득격차 역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거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던 공공부문의 복지재정지출과 소득·재산과세의 강화 등의 영향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한 가처분소득 분배구조의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민간소득단계의 상대소득격차 역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지니계수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빈곤율은 1982년 5.2%에서 1990년 3.8%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1년 5.3%로 낮아진 후 다시 완만한 상승추세를 이어가다가 2008년에는 8.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연도	시장소득	민간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최종소득
1982	0.28689	0.28651	0.28678	0.2738	0.27402	0.26866
1983	0.2844	0.28256	0.2827	0.27075	0.27131	0.26612
1984	0.28097	0.28081	0.28109	0.26909	0.2696	0.26513
1985	0.27375	0.27515	0.27563	0.26188	0.26259	0.2581
1986	0.2754	0.2731	0.2736	0.26	0.2607	0.2552
1987	0.28196	0.28006	0.27986	0.26629	0.26784	0.26267
1988	0.27242	0.27062	0.27082	0.25628	0.25661	0.24876
1989	0.27201	0.26928	0.26957	0.25631	0.25533	0.24821
1990	0.25433	0.25244	0.25236	0.24024	0.2375	0.22637
1991	0.24224	0.24209	0.24189	0.23098	0.22852	0.2219
1992	0.23897	0.24074	0.24147	0.22865	0.22664	0.22075
1993	0.2426	0.24232	0.24242	0.23153	0.22918	0.22341
1994	0.24205	0.24248	0.24293	0.23209	0.22999	0.22396
1995	0.24383	0.24255	0.2428	0.23111	0.23022	0.22376
1996	0.24711	0.24618	0.24685	0.23665	0.23582	0.22895
1997	0.28192	0.2807	0.28102	0.27225	0.27372	0.2657
1998	0.31374	0.31142	0.31121	0.30313	0.30699	0.28856
1999	0.26915	0.26771	0.26726	0.25732	0.25718	0.24633
2000	0.28281	0.28077	0.27988	0.27039	0.27146	0.25828
2001	0.27469	0.2732	0.27222	0.26075	0.2619	0.24887
2002	0.28352	0.2809	0.27997	0.26997	0.27115	0.25668
2003	0.2922	0.28359	0.27893	0.26767	0.26979	0.25391
2004	0.30014	0.2906	0.28529	0.27324	0.27579	0.26006
2005	0.30765	0.2965	0.28959	0.27781	0.2801	0.26401
2006	0.31143	0.29975	0.29126	0.27769	0.27919	0.26513
2007	0.31496	0.30316	0.29499	0.27934	0.28076	0.26409
2008	0.31693	0.3045	0.29466	0.27876	0.28081	

#### 4. 빈곤율의 변화추이

##### 가. 빈곤율 추이

빈곤은 크게 절대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부표 1〉 참조)보다 작은 경우, 후자는 동등화소득<sup>7)</sup>(equivalent income 또는 equivalized income) 기준의 중위수 소득의 50%를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고 가구의 동등화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가구로 정의한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빈곤율은 1982년 5.2%에서 1990년 3.8%로 하락하였다가 1996년 5.5%, 1998년 14.7%로 상승하였다. 이후 2001년 5.3%로 낮아진 후 다시 완만한 상승추세를 이어가다가 2008년에는 8.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노인가구 중 상당수가 단독가구이

7) 본고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동등화소득으로 한다.

면서 동시에 빈곤가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상대빈곤율은 11.0% (2008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빈곤율은 1982년 7.0%에서 2008년 2.2%(1인 가구 포함시에는 3.2%)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절대빈곤율이 상대빈곤율보다 낮은 이유는 대체로 최저생계비로 책정된 금액이 상대빈곤선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본절에서는 주로 상대빈곤율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절대빈곤율에 대한 추정 결과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절대빈곤율이  
상대빈곤율보다  
낮은 이유는 대체로  
최저생계비로 책정된  
금액이 상대빈곤선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표 3〉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만원)

	상대빈곤율	동등화중위소득	상대빈곤선	절대빈곤율
1982	5.25	159	80	6.95
1983	6.00	180	90	7.99
1984	6.62	202	101	8.81
1985	5.73	212	106	10.38
1986	5.71	242	121	9.32
1987	4.96	286	143	7.91
1988	4.87	342	171	6.19
1989	4.91	424	212	3.94
1990	3.79	506	253	2.47
1991	4.63	630	315	1.68
1992	4.20	730	365	2.12
1993	4.51	802	401	2.09
1994	4.70	920	460	1.56
1995	4.61	1052	526	2.09
1996	5.48	1187	594	1.23
1997	10.64	1212	606	5.95
1998	14.75	1056	528	12.62
1999	6.11	1155	578	3.78
2000	6.83	1276	638	2.71
2001	5.30	1344	672	1.74
2002	6.85	1456	728	1.87
2003	7.17	1649	825	1.71
2004	8.03	1780	890	1.40
2005	8.44	1831	916	2.00
2006	8.55	1907	954	2.01
2007	8.39	2003	1002	2.24
2008	8.54	2070	1035	2.20
2003(전국 2인 이상)	7.36	1607	804	2.03
2004(전국 2인 이상)	8.53	1738	869	1.89
2005(전국 2인 이상)	9.12	1810	905	2.38
2006(전국 전가구)	10.34	1799	900	2.61
2007(전국 전가구)	11.01	1885	943	3.17
2008(전국 전가구)	10.96	1909	955	3.16

주: 상대빈곤율과 동등화중위소득은 동등화소득(=명목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상대빈곤선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

가구주 연령별로 볼 때 상대빈곤율은 주로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고 중간 연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낮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 나. 연령별 빈곤율 추이

가구주 연령별로 볼 때 상대빈곤율은 주로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고 중간 연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낮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중년층, 즉 40대 후반~50대의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 연령층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미취업 상태의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빈곤율이 높는데, 이는 은퇴의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년층의 경우에 빈곤율이 낮은 것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이들 연령층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수준이 기대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빈곤율은 이와 반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가구주 연령별 상대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	평균
1982	17.5	4.62	4.29	3.54	3.65	3.64	8.84	9.05	1.98	15.68	5.25
1983	29.13	1.95	4.63	3.65	4.03	5.84	7.55	8.57	5.42	18.47	6.00
1984	19.19	5.73	3.96	5.30	4.09	9.45	7.18	5.75	7.64	23.89	6.62
1985	6.32	3.08	3.94	5.36	4.75	7.15	3.90	5.75	10.36	19.54	5.73
1986	2.94	7.65	2.57	4.58	5.77	4.30	6.04	7.14	5.47	25.01	5.71
1987	9.97	3.06	1.97	3.63	6.18	4.91	3.96	5.95	9.06	15.81	4.96
1988	12.82	5.31	2.82	3.85	4.37	4.25	6.33	1.27	9.58	20.11	4.87
1989	4.06	5.37	4.06	4.68	4.01	3.43	5.19	5.41	7.39	17.22	4.91
1990	23.55	2.78	2.08	4.18	2.37	4.46	3.97	1.23	8.48	6.90	3.79
1991	20.73	5.03	3.03	3.63	3.63	4.16	4.13	5.68	4.98	15.67	4.63
1992	14.36	4.12	3.93	4.24	2.94	4.46	4.11	3.78	2.11	12.34	4.20
1993	25.36	5.18	2.52	3.07	3.92	5.11	2.02	3.10	6.4	19.18	4.51
1994	9.92	3.78	3.92	2.77	4.50	4.07	4.19	4.27	3.88	15.48	4.70
1995	7.82	8.21	3.91	2.70	4.41	3.07	3.70	2.61	6.95	14.57	4.61
1996	14.11	8.06	5.78	3.99	4.47	3.93	4.92	4.53	5.57	14.56	5.48
1997	51.4	21.95	6.59	5.94	7.22	5.64	8.50	7.63	11.42	39.15	10.64
1998	62.79	25.42	10.43	7.88	13.46	9.50	9.79	13.03	14.56	51.63	14.75
1999	9.57	3.92	6.92	4.51	6.29	4.07	5.66	5.15	6.67	11.86	6.11
2000	17.44	10.57	3.57	6.76	5.75	6.27	3.01	3.99	8.45	16.19	6.83
2001	11.53	15.37	1.11	4.91	3.90	4.64	4.44	3.95	5.62	11.59	5.30
2002	n.a.	10.64	5.65	5.22	3.47	6.11	6.37	5.87	6.21	15.12	6.85
2003	8.48	7.31	4.32	5.37	7.37	5.21	4.63	4.44	5.24	19.09	7.17
2004	n.a.	3.05	6.19	6.40	7.31	6.16	5.84	6.07	8.00	18.83	8.03
2005	n.a.	0	4.70	5.75	7.15	6.75	5.97	8.42	6.11	19.50	8.44
2006	n.a.	13.83	3.22	6.03	8.42	6.72	5.61	4.10	8.62	19.56	8.55
2007	n.a.	19.64	7.19	5.17	5.17	5.10	6.88	4.87	9.29	19.44	8.39
2008	n.a.	20.57	4.42	5.41	5.72	7.67	5.23	3.98	7.79	20.26	8.54

	~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	평균
2003(전국 2인 이상)	8.48	3.59	5.95	5.78	6.21	4.83	4.59	4.28	5.44	20.32	7.36
2004(전국 2인 이상)	n.a.	2.81	5.99	6.04	7.72	6.48	5.71	6.03	6.74	21.53	8.53
2005(전국 2인 이상)	n.a.	0	5.45	4.87	6.88	6.78	6.58	7.76	6.62	22.66	9.12
2006(전국 전가구)	n.a.	5.14	3.11	4.42	6.96	4.73	6.13	5.36	8.70	26.72	10.34
2007(전국 전가구)	n.a.	11.35	5.00	2.68	4.93	4.41	7.63	6.67	12.34	26.79	11.01
2008(전국 전가구)	n.a.	8.65	3.73	3.56	4.44	6.32	5.44	5.08	9.89	26.82	10.96

주: 상대빈곤율과 동등화중위소득은 동등화소득(=명목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상대빈곤선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화로 인해 저학력층은 상당수가 고령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도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학력별 빈곤율 추이

지난 20여년간의 추이를 놓고 볼 때 고학력군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력과 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저학력, 특히 초등학교 학력 또는 무학력의 경우에 빈곤율이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직에 대한 임금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상승하였다는 점에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학력층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화한 데에도 또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고학력 추세도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지난 20~30년 사이에 고학력자 비율이 급상승한 반면 저학력자 비율이 빠르게 낮아졌다. 따라서 20여년 전에는 저학력자 가운데에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당히 높았으나,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고학력화로 인해 저학력층은 상당수가 고령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도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요인에 따라 저학력층의 빈곤율이 다른 학력층과 달리 지속적으로 급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성별 빈곤율 추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현재 남성가구주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6.6%인 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7.0%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것에 일부 요인이 있다. 그 밖에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더 높고 따라서

이혼이나 별거,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른 편모가정의 증가 현상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높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 중 고령여성의 단독가구 비율이 고령남성의 단독가구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도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이혼이나 별거,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른 편모가정의 증가 현상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높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가구주 학력별 상대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평균
1982	n.a.	n.a.	n.a.	n.a.	n.a.	n.a.	n.a.	5.25
1983	n.a.	n.a.	n.a.	n.a.	n.a.	n.a.	n.a.	6
1984	n.a.	n.a.	n.a.	n.a.	n.a.	n.a.	n.a.	6.62
1985	27.28	14.25	7.87	2.26	0.49	0	n.a.	5.73
1986	38.07	16.2	6.56	1.41	1.46	0.40	n.a.	5.71
1987	33.77	14.26	6.38	2.21	0	0	n.a.	4.96
1988	38.92	13	6.68	2.37	0.71	0.14	n.a.	4.87
1989	34.74	13.74	5.95	2.8	1.73	0.94	1.69	4.91
1990	18.01	11.98	4.97	2.33	0.00	0.69	2.97	3.79
1991	31.97	14.41	6.25	2.85	0.00	0.52	0.50	4.63
1992	24.04	11.12	6.6	3.17	2.67	0.56	0.00	4.2
1993	28.44	13.46	5.8	3.21	1.35	1.78	0.00	4.51
1994	32.8	11.25	5.84	2.99	3.22	1.67	2.08	4.7
1995	22.14	14.73	7.04	2.78	2.70	1.08	0.76	4.61
1996	38.35	12.85	7.27	4.18	1.08	1.81	0.79	5.48
1997	54.72	24.97	12.52	7.82	7.17	6.36	3.07	10.64
1998	68.5	32.61	24.9	12.34	5.63	6.57	3.98	14.75
1999	37.51	12.5	11.61	4.76	3.07	1.54	0.00	6.11
2000	27.62	18.53	10.91	5.67	4.64	1.44	0.61	6.83
2001	20.33	11.44	10.09	4.71	1.96	1.04	1.07	5.3
2002	37.39	17.41	10.02	5.88	4.05	1.23	0.50	6.85
2003	36.65	18.55	10.45	6.86	2.65	2.00	0.00	7.17
2004	34.93	21.3	13.42	6.8	4.69	2.16	0.91	8.03
2005	45.95	18.97	15.97	6.79	3.18	1.95	1.84	8.44
2006	39.72	24.29	14.25	7.35	4.77	1.74	0.70	8.55
2007	42.23	23.97	16.64	6.51	5.30	1.93	0.62	8.39
2008	47.57	23.73	11.04	7.53	5.83	2.93	1.40	8.54
2003(전국 2인 이상)	45.77	18.75	10.17	6.02	2.38	1.75	0.67	7.36
2004(전국 2인 이상)	40.18	22.16	13.87	6.32	3.8	2.36	1.41	8.53
2005(전국 2인 이상)	49.75	21.54	15.45	6.69	3.08	1.94	2.73	9.12
2006(전국 전가구)	50.55	23.76	13.41	6.35	3.4	1.24	0.59	10.34
2007(전국 전가구)	56.08	25.82	18.02	5.16	4.19	1.89	0.84	11.01
2008(전국 전가구)	53.58	24.93	13.21	6.32	3.25	2.48	1.17	10.96

주: 상대빈곤율과 동등화중위소득은 동등화소득(=명목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상대빈곤선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6〉 가구주 성별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1982	4.25	11.18	5.25	6.04	12.4	6.95
1983	4.89	11.67	6	7.04	12.83	7.99
1984	5.67	11.37	6.62	7.8	13.82	8.81
1985	4.57	13.53	5.73	8.88	20.36	10.38
1986	3.67	16.99	5.71	7.07	21.7	9.32
1987	3.26	15.33	4.96	6.12	18.78	7.91
1988	3.42	14.78	4.87	4.92	14.84	6.19
1989	3.67	12.68	4.91	3.22	8.42	3.94
1990	2.56	11.97	3.79	1.86	6.5	2.47
1991	3.61	11.15	4.63	1.23	4.53	1.68
1992	3.11	11.84	4.2	1.56	6.04	2.12
1993	3.55	11.68	4.51	1.67	5.18	2.09
1994	3.51	11.95	4.7	1.1	4.39	1.56
1995	3.37	11.92	4.61	1.59	5.05	2.09
1996	4.21	12.73	5.48	0.88	3.24	1.23
1997	8.03	25.07	10.64	4.63	13.21	5.95
1998	12.63	30.95	14.75	11.2	23.5	12.62
1999	5.24	10.98	6.11	3.23	6.86	3.78
2000	5.93	10.94	6.83	2.35	4.35	2.71
2001	4.25	10.31	5.30	1.40	3.35	1.74
2002	4.81	15.46	6.85	1.17	4.81	1.87
2003	5.80	15.50	7.17	1.25	4.54	1.71
2004	6.47	15.74	8.03	0.90	3.87	1.40
2005	6.75	16.16	8.44	1.55	4.06	2.00
2006	6.64	16.83	8.55	1.40	4.69	2.01
2007	6.53	15.95	8.39	1.82	3.94	2.24
2008	6.60	17.02	8.54	1.53	5.10	2.20
2003(전국 2인 이상)	5.87	16.53	7.36	1.41	5.79	2.03
2004(전국 2인 이상)	6.65	17.73	8.53	1.22	5.14	1.89
2005(전국 2인 이상)	7.32	17.5	9.12	1.69	5.56	2.38
2006(전국 전가구)	6.35	21.68	10.34	1.7	5.2	2.61
2007(전국 전가구)	6.65	22.12	11.01	2.3	5.39	3.17
2008(전국 전가구)	6.21	23.02	10.96	2.06	5.92	3.16

주: 상대빈곤율과 동등화중위소득은 동등화소득(=명목소득 ÷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상대빈곤선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

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적자가구는 대체로 상대빈곤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 마. 빈곤율과 적자가구율 추이

본고에서는 소비지출이 각 단계별 소득보다 큰 경우를 적자가구로 정의하도록 한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적자가구는 대체로 상대빈곤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시소득과 항상소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소비지출은 당해기간의 경상소득보다는 항상

적자가구의 빈도는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향상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음(-)의 일시소득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일부 가구에서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적자가구의 빈도는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향상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성명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빈곤율(또는 생애빈곤율)이 단기빈곤율보다 작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관찰된 (단기)빈곤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향상소득 수준은 당해연도의 실현된 소득에 비해 클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자가구의 비율이 대체로 단기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7〉 상대빈곤율과 적자가구비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상대빈곤율	적자가구				
		시장소득	민간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1982	5.2	16.4	13.6	13.3	15.8	21.3
1983	6.0	15.1	12.8	12.7	13.9	18.4
1984	6.6	13.6	11.4	11.2	12.5	15.8
1985	5.7	13.4	11.2	10.8	12.9	16.9
1986	5.7	12.9	10.5	10.4	12.3	16.3
1987	5.0	11.7	9.3	9.2	11.0	15.5
1988	4.9	9.4	7.5	7.3	9.1	12.8
1989	4.9	11.4	8.8	8.4	11.0	14.9
1990	3.8	9.5	7.4	7.1	9.3	12.0
1991	4.6	9.2	7.5	7.2	9.8	13.3
1992	4.2	9.4	7.6	7.2	9.6	12.8
1993	4.5	9.4	7.5	7.3	9.6	13.5
1994	4.7	8.2	6.7	6.6	8.9	12.8
1995	4.6	7.5	6.0	5.7	7.8	11.2
1996	5.5	8.1	6.7	6.5	8.8	12.5
1997	10.6	16.1	14.4	14	15.9	19.8
1998	14.7	18.5	17	16.7	19.2	24.2
1999	6.1	9.6	7.8	7.6	10.5	16.4
2000	6.8	9.2	7.6	7.2	10.3	16.0
2001	5.3	9.5	7.9	7.2	11.4	18.1
2002	6.9	9.4	7.9	7.1	11.2	16.9
2003	7.2	14.8	9.2	6.6	9.4	15.0
2004	8.0	15.2	8.5	5.7	8.0	12.6
2005	8.4	16.3	9.5	6.0	8.6	12.8
2006	8.5	15.4	8.9	5.3	8.1	12.9
2007	8.4	16.6	9.0	4.9	8.4	12.6
2008	8.5	17.6	10.4	6.2	8.5	13.2

주: 상대빈곤율과 동등화중위소득은 동등화소득(=명목소득÷가구원수의 제곱근)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상대빈곤선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음. 가처분소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후소득의 경우에는 이미 소비세 부담을 제외하고 있는데 소비세를 포함한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적자가구를 정의하는 것은 논리성으로는 다소 모순됨에 유의하기 바람.

### 5. 중산·서민층 비율의 변화추이

흔히 소득분배 또는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서민·중산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개념적으로 모호한 점이 있으면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본절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 등이 협력하여 작성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sup>8)</sup>」에서 사용한 정의를 원용하여 서민층·중산층의 가구구성비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교육과학기술부 외(2009)에 의하면 소득계층을 빈곤층(동등화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산층(50~150%), 고소득층(150% 이상)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한다. 다시 중산층을 중산하층(50~70%)과 중상층(70~150%)로 구분한다. 아울러 서민층은 빈곤층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빈곤층과 중산하층을 포괄하는 중위수소득의 70%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2인 이상의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각 소득계층의 가구구성 변화를 추정하였다.

서민층 비율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중의 절대수준은 1980년대 초에 비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상층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분배격차가 가장 낮았던 1990년대 중반에 가장 두터운 모습을 보이다가 상대소득격차가 확대추세로 전환된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는 중상층의 비율이 68.5%까지 이르렀다가 최근(2008년)에는 58.5%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982년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19.8%)을 시현하다가 하락추세를 보여 1993년 14.3%로 저점에 도달하였다. 이후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하여 2008년 현재 18.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중상층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분배격차가 가장 낮았던 1990년대 중반에 가장 두터운 모습을 보이다가 상대소득격차가 확대추세로 전환된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8) 교육과학기술부(2009) 참조

〈표 8〉 4단계 소득계층 구분시 계층별 가구구성비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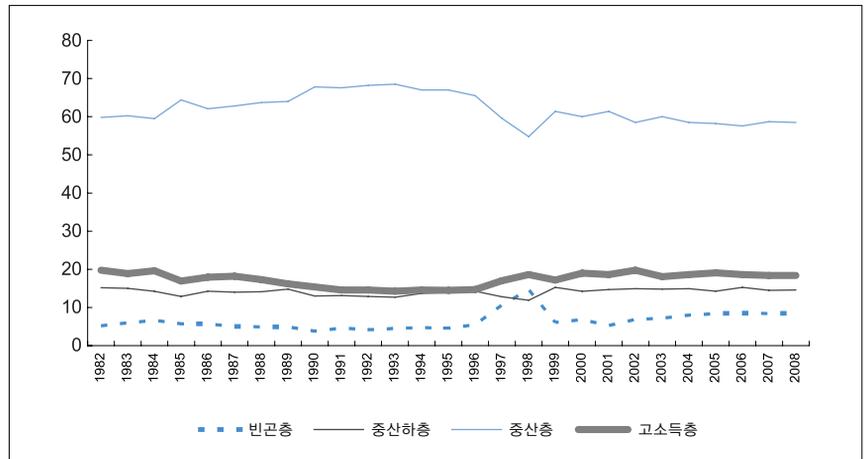
(단위: %)

	빈곤층(A)	중산하층(B)	중상층(C)	고소득층	서민층(A+B)	중산층(B+C)
1982	5.2	15.2	59.8	19.8	20.4	75.0
1983	6.0	15.0	60.2	18.9	21.0	75.2
1984	6.6	14.2	59.5	19.6	20.8	73.7
1985	5.7	12.9	64.4	16.9	18.6	77.3
1986	5.7	14.3	62.1	17.9	20.0	76.4
1987	5.0	14.0	62.8	18.2	19.0	76.8
1988	4.9	14.1	63.7	17.3	19.0	77.8
1989	4.9	14.8	64.0	16.2	19.7	78.8
1990	3.8	13.0	67.8	15.4	16.8	80.8
1991	4.6	13.1	67.6	14.6	17.7	80.7
1992	4.2	12.9	68.2	14.6	17.1	81.1
1993	4.5	12.7	68.5	14.3	17.2	81.2
1994	4.7	13.7	67.0	14.6	18.4	80.7
1995	4.6	13.9	67.0	14.5	18.5	80.9
1996	5.5	14.3	65.5	14.7	19.8	79.8
1997	10.6	12.8	59.6	17.0	23.4	72.4
1998	14.7	11.9	54.8	18.6	26.6	66.7
1999	6.1	15.3	61.4	17.2	21.4	76.7
2000	6.8	14.2	60.0	19.0	21.0	74.2
2001	5.3	14.7	61.4	18.6	20.0	76.1
2002	6.9	14.9	58.5	19.8	21.8	73.4
2003	7.2	14.8	60.0	18.1	22.0	74.8
2004	8.0	14.9	58.5	18.6	22.9	73.4
2005	8.4	14.3	58.2	19.1	22.7	72.5
2006	8.5	15.3	57.6	18.6	23.8	72.9
2007	8.4	14.5	58.7	18.4	22.9	73.2
2008	8.5	14.6	58.5	18.4	23.1	73.1

주: 빈곤층은 동등화중위소득의 50% 이하, 중산하층은 50~70%, 중상층은 70~150%, 고소득층은 150% 초과를 나타냄. 소득 계층의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외(2009)를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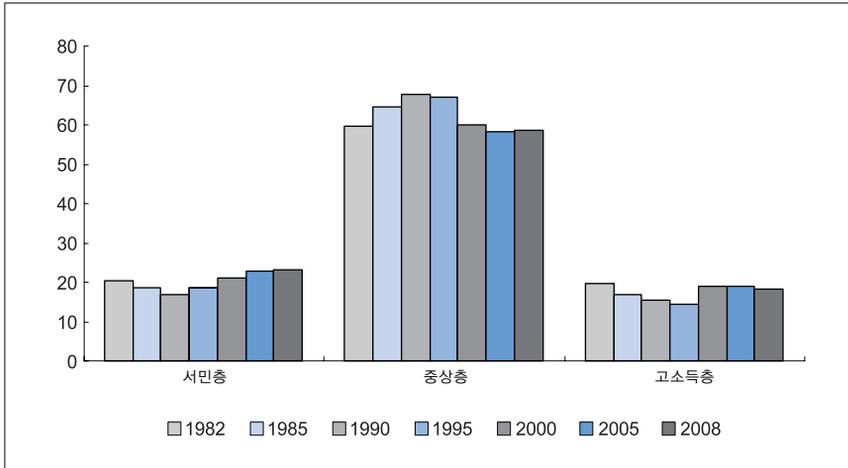
〈그림 4〉 4단계 소득계층 구분시 계층별 가구구성비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그림 5] 3단계 소득계층 구분시 계층별 가구구성비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빈곤가구를 판정하는 빈곤선은 물리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수준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가구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III. 실질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일고

제II장에서는 (상대)빈곤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빈곤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생활이 곤궁해진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빈곤가구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빈곤가구를 판정하는 빈곤선은 물리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수준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가구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빈곤율 상승속도로부터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빈곤가구를 포함하여 각 소득백분위수의 소득자별로 실질소득의 변화를 상호비교해주는 지표를 이용하여 잠재적 후생수준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1차·2차 통계적 우월(first or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과 평균표준화 2차 통계적 우월(mean-normalized stochastic dominance) 또는 로렌즈 우월(Lorenz dominance)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실질소득분배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상호비교해본다<sup>9)</sup>. 상기의 세 가지 지표 가운데 1차·2차 통계적 우월은 대체로 실질소득의 증감에 따른 절대수준 또는 이와 상응할만한 지수를 기준으로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는 반면 로렌즈 우월은 상대지수만을 토대로 판정한다. 상기의 세 가지

9) Litchfield(1999) 참조

4개 연도의  
실질가처분소득분포는  
1차 통계적 우월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상대소득격차는 예전에  
비해 악화되었지만  
실질소득 측면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계지표에 대한 정의는 [부록 1]에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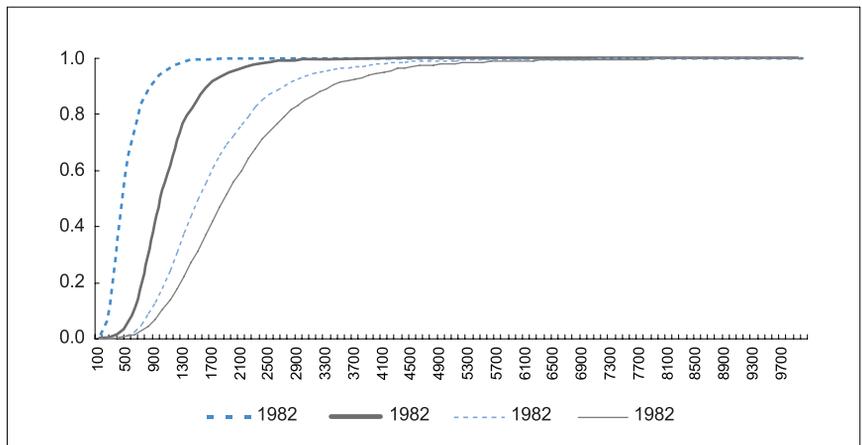
먼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할인한 실질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82년, 1990년, 2000년, 2008년의 소득분포에 대한 누적확률밀도함수(CDF: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추정하였다(그림 6 참조). 그 결과 상기 4개 연도의 CDF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차점 없이 항상 우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위계수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상기의 4개 연도의 실질가처분소득분포는 1차 통계적 우월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상대소득격차는 예전에 비해 악화되었지만 실질소득 측면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소득위계수별로 누적된 실질소득(보다 정확히는 누적실질소득의 상수배)곡선(즉, 일반화 로렌즈곡선; Generalized Lorenz Curve)의 궤적을 추정하여 상호비교하였다. 그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소득위계수에서 교차점 없이 일반화 로렌즈곡선이 상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기의 4개 연도 소득분포 사이에는 2차 통계적 우월도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7 참조).

마지막으로 로렌즈곡선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1990년도와 2000년도의 로렌즈 곡선이 다른 곡선들과 교차점 없이 항상 우월(로렌즈 우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 나머지 3개 연도(1982년, 2000년, 2008년)의 경우에는 군데군데 로렌즈 곡선이 여러 차례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연도 사이에서는 상대적 소득분포구조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어렵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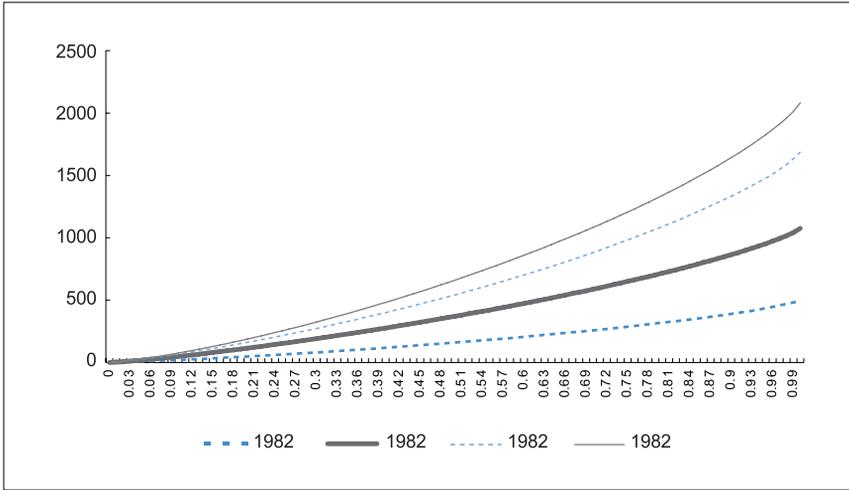
[그림 6] 실질소득의 누적확률밀도함수 변화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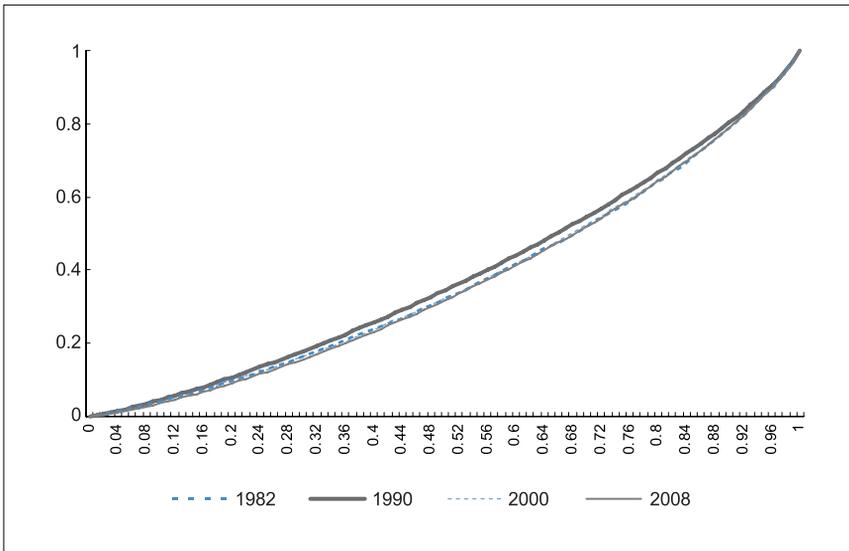
[그림 7] 실질소득의 일반화로렌즈곡선 변화추이

(단위: 만원)



[그림 8] 실질소득의 로렌즈곡선 변화추이

(단위: 만원)



향후에는 비록 시장소득 상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가처분소득 단계에서의 상대소득격차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 IV. 맺음말

상대소득격차는 1980~1990년대 초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하향안정추세를 지속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확대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최근의 소득분배격차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부분이 크지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화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인구구성을 볼 때 은퇴 후 연령기의 노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령화로 인한 상대소득격차의 확대추세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대소득격차의 확대추세는 시장소득 또는 민간소득단계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세·재정지출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 기준의 상대소득격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혜대상자의 확대 및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율 감소, 기타 각종 사회안전망의 급속한 확충이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록 시장소득 상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가처분소득단계에서의 상대소득격차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보다 확실한 전망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효과 및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상대소득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빈곤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소득격차의 확대문제는 빈곤율 상승을 동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 방지·축소 차원에서의 정책과제와 함께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직결된다. 본고에서 실질소득에 기반한 잠재적 후생을 기준으로 각 기간대별로 모든 소득위계수에 대해 실질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비록 최근 들어 상대빈곤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위계수(income percentiles)에서의 실질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가족부 · 노동부 · 중소기업청 · 미래기획위원회,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2009
-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 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성명재 · 강신욱 · 이철인, 『저소득층 소득보전 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08-01,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원종학 · 성명재, 『소득분배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연구보고서 07-10,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정책포럼 제215호, 2009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 1999

### [부록 I] 통계적 우월(Stochastic Dominance)

소득분배구조를 비교함에 있어 실질소득 기준으로 하나의 분배구조가 다른 분배구조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다 우월(stochastic dominance)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본절에서는 이 가운데 Litchfield(1999)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sup>10)</sup> 세 가지를 소개한다. 아래에서는 실질소득분포를 상호 비교한다. 명목소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후생이나 구매력과 관계없는 화폐적 환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 ① 1차 통계적 우월(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

2개의 소득분포( $y_1, y_2$ )에 대한 누적확률밀도함수(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를 비교하였을 때  $y_1$ 의 cdf가  $y_2$ 의 그것보다 좌측에 있는 경우가 전혀 없고, 최소한 일부에서만이라고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y_1$ 이  $y_2$ 에 대해 1차 통계적 우월 하다고 정의한다.

#### ② 2차 통계적 우월(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sup>10)</sup> 본절은 Litchfield(1999)의 원고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차 통계적 우월은 각 소득변수의 누적확률밀도함수를 적분하여 도출한 결손함수(deficit function)에 대한 것이다. 2개의 소득분포( $y_1, y_2$ )에 대한 결손함수를 비교하였을 때  $y_1$ 의 결손함수 곡선이  $y_2$ 의 그것보다 하방에 있는 경우가 전혀 없고, 최소한 일부에서만이라고 상방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y_1$ 이  $y_2$ 에 대해 '2차 통계적 우월' 하다고 정의한다. 이 때 결손함수 곡선의 비교는 일반화로 렌즈곡선(generalized Lorenz curve)의 비교와 동등하다.

③ 평균정규화 2차 통계적 우월(mean-normalized second order stochastic dominance)

평균정규화 2차 통계적 우월은 결손함수의 값을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 함수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즉,  $y_1$ 의 평균정규화 결손함수 곡선이  $y_2$ 의 그것보다 하방에 있는 경우가 전혀 없고, 최소한 일부에서만이라고 상방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y_1$ 이  $y_2$ 에 대해 '평균정규화 2차 통계적 우월' 하다고 정의한다. 이 때 평균소득으로 나눈 결손함수 곡선은 로렌즈곡선(Lorenz curve)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사람(가구)의 누적비에 대해 로렌즈 곡선이 항상 상방에 존재한다면 해당 소득분포가 비교대상 소득분포에 대해 '평균정규화 2차 통계적 우월,' 또는 '로렌즈 우월' 하다고 한다.

[부록 II] 참고표

〈부표 1〉 가구주 연령별 절대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95	259870	434304	577008	765414	872380	978730
1996	270426	451457	602297	793904	904594	1015564
1997	281411	469289	628695	823456	937999	1053784
1998	292842	487824	656250	854107	972637	1093442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2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표 2〉 가구주 학력별 절대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	평균
1982	10	9.9	4.99	4.17	5.58	5.76	11.83	11.19	1.98	18.64	6.95
1983	29.13	3.29	5.47	4.89	7.73	7.44	10.35	13.21	9.18	15.64	7.99
1984	19.19	10.72	5.49	7.21	5.85	13.34	9.26	6.52	7.64	28.29	8.81
1985	12.32	5.66	6.3	11.12	10.33	14.22	8.32	8.65	12.46	24.54	10.38
1986	17.68	11.91	4.6	6.81	8.35	10.05	12.36	7.6	12.51	27.89	9.32
1987	9.97	11.66	3.22	6.32	10.08	7.86	6.67	9.09	9.06	20.98	7.91
1988	16.29	11.25	3.68	4.68	5.96	6.03	8.37	2.28	7.53	20.11	6.19
1989	4.06	3.54	3.72	3.5	3	3	3.96	5.17	6.13	12.9	3.94
1990	13.34	1.93	1.28	2.4	1.8	3.44	2.45	0.62	4.3	5.85	2.47
1991	0	2.92	0	1.4	1.48	1.82	1.1	2.21	1.18	7.57	1.68
1992	7.54	1.37	1.7	1.67	2.19	1.55	3	2.33	1.97	4.13	2.12
1993	7.97	2.41	1.25	1.34	2.04	2.12	0.81	1.59	1.86	10.33	2.09
1994	7.22	0.68	1.57	0.81	1.73	1.3	1.01	1.73	0.56	5.41	1.56
1995	0	4.92	1.1	0.7	2.87	0.94	2.33	1.32	2.44	6.46	2.09
1996	2.3	5.17	1.04	0.71	1.31	0.89	1.58	1.12	0.71	2.07	1.23
1997	17.79	7.13	2.5	1.99	4.25	2.79	3.98	3.65	6.59	28.23	5.95
1998	50.23	13.97	7.11	6.27	11.15	8.96	7.53	12.29	12.39	47.59	12.62
1999	9.57	0.71	3.59	2.5	4.06	2.01	4.13	4.04	3.84	7.48	3.78
2000	0	1.17	0.77	2.69	3.27	2.79	1.49	1.01	3.36	5.35	2.71
2001	0	3.86	0.6	3.06	1.24	1.4	0.76	1.66	1.11	3.57	1.74
2002	0	0	2.75	2.05	0.51	1.98	1.44	1.11	1.24	4.41	1.87
2003	n.a.	0	0.72	1.81	1.89	1.54	1.11	0.39	1.67	3.99	1.71
2004	n.a.	0	1.11	0.88	1.18	1.11	0.89	0.83	0.95	4.29	1.40
2005	n.a.	0	0.00	1.30	1.85	1.25	2.12	2.65	1.00	4.14	2.00
2006	n.a.	5.78	0.36	0.65	1.52	0.88	2.17	0.75	3.19	4.77	2.01
2007	n.a.	5.35	0.57	0.53	1.49	1.13	1.53	1.25	2.27	6.41	2.24
2008	n.a.	8.09	0.29	1.15	1.64	1.98	1.52	1.27	2.30	4.76	2.20
2003(전국 2인 이상)	0	0	1.03	1.55	2.11	1.88	1.21	0.34	2.28	4.92	2.03
2004(전국 2인 이상)	0	0	1.31	1.16	1.68	1.46	0.79	0.71	1.67	5.83	1.89
2005(전국 2인 이상)	0	0	0	1.23	1.88	1.59	1.92	2.31	1.01	6.3	2.38
2006(전국 전가구)	0	2.98	0.21	0.49	2.17	1.01	1.9	1.26	2.71	6.45	2.61
2007(전국 전가구)	0	5.75	0.82	0.91	1.6	1.37	2.35	1.58	3.34	7.61	3.17
2008(전국 전가구)	0	3.41	0.18	0.82	1.59	2.44	1.55	1.21	2.88	7.45	3.16

〈부표 3〉 가구주 학력별 절대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단위: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평균
1982	n.a.	n.a.	n.a.	n.a.	n.a.	n.a.	n.a.	5.25
1983	n.a.	n.a.	n.a.	n.a.	n.a.	n.a.	n.a.	6
1984	n.a.	n.a.	n.a.	n.a.	n.a.	n.a.	n.a.	6.62
1985	32.59	24.33	13.85	5.62	1.25	0.46	7.16	10.38
1986	40.68	25.07	11.62	3.87	1.46	0.4	0	9.32
1987	42.61	19.79	12.17	3.92	0	0.3	0	7.91
1988	44.58	14.49	9.44	3.21	2.31	0.14	0	6.19
1989	26.33	11.63	5.64	1.91	0.99	0.59	1.69	3.94
1990	10.84	8.89	3.18	1.43	0	0	2.97	2.47
1991	17.54	5.94	1.7	0.94	0	0	0	1.68
1992	14.27	6.81	2.88	1.59	1.06	0.04	0	2.12
1993	19.59	6.99	2.09	1.18	0	1.25	0	2.09
1994	10.86	4.02	2.3	0.68	1.54	0.8	0	1.56
1995	10.57	7.21	2.92	1.35	0.36	0.37	0.76	2.09
1996	7.31	3.03	1.04	0.99	0.66	0.71	0	1.23
1997	50.82	15.03	5.26	4.53	3.68	2.63	1.45	5.95
1998	61.19	29.63	20.94	10.46	4.4	5.24	3.98	12.62
1999	26.85	8.85	7.66	2.74	1.11	0.52	0.00	3.78
2000	10.97	7.59	3.76	2.45	2.46	0.3.00	0.00	2.71
2001	7.17	2.95	3.17	1.68	1.03	0.25	1.07	1.74
2002	10.89	3.71	2.51	1.93	1.15	0.18	0.50	1.87
2003	15.83	3.96	2.23	1.56	0.91	0.45	0.00	1.71
2004	9.51	4.14	2.59	1.01	0.39	0.33	0.00	1.40
2005	9.34	5.64	3.48	1.67	1.40	0.00	0.00	2.00
2006	11.39	6.02	4.29	1.53	0.81	0.10	0.00	2.01
2007	13.12	7.32	4.66	1.47	0.37	0.70	0.62	2.24
2008	16.55	6.46	3.28	1.51	2.25	0.37	1.10	2.20
2003(전국 2인 이상)	15.92	4.36	2.71	1.78	0.77	0.4	0	2.03
2004(전국 2인 이상)	11.64	5.45	3.25	1.13	1.08	0.38	0	1.89
2005(전국 2인 이상)	17.21	6.33	3.06	1.77	1.55	0	0.77	2.38
2006(전국 전가구)	11.71	6.36	3.88	1.56	0.62	0.21	0	2.61
2007(전국 전가구)	13.25	7.89	5.29	1.69	1.06	0.56	0.53	3.17
2008(전국 전가구)	16	7.03	3.78	1.74	1.7	0.41	0.92	3.16

# 2010년 예산안

■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

안일환 /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 **2010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ilwhan@most.go.kr)

2010년 예산안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초래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지난해 말 11조 4천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에 이어, 금년 4월에는 17조 2천억원의 세출을 증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재정의 60% 이상을 집행하였다.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의 연장선에서 경제활력과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2010년중 4% 내외 성장이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의 이러한 경제회복 추이를 감안하여 지난 10월 1일 세계경제전망을 수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6월 전망치(2.5%)에서 0.6%포인트 상승한 3.1%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같은 정책방향과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 각국 정상간 인식을 같이 하였다.

## I. 2010년도 재정 모습

### 1. 경제 여건

내년도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경제 또한 이러한 세계경제의 점진적

### 2. 재정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그 폭은 축소하였다.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2010년 총수입은 2009 본예산 대비  $\Delta 1.1\%$  감소한 287조 8천억원 수준이 나,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2.5%, 위기 이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6.6% 확대된 291조 8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단위: 조원, %)

	'09		'10안 (B)	증감률 (B/A)
	본예산(A)	추경		
총수입 <sup>1)</sup>	291.0	279.8	287.8	$\Delta 1.1$
총지출	284.5	301.8	291.8	2.5

주: 1) 국제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제, 세외수입, 기금 자체수입의 합계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내년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Delta 2.9\%$ 로 2009년도 추경( $\Delta 5.0\%$ ) 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 되도록 하였다. 이는 2010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2009~2013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지속에 따라 2009년 추경(35.6%) 대비 다소 증가하나,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 2013년에 30%대 중반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단위: 조원)

	2009		2010안
	본예산	추경	
■ 관리대상수지 <sup>1)</sup> (GDP 대비, %)	$\Delta 24.8$ ( $\Delta 2.4$ )	$\Delta 51.0$ ( $\Delta 5.0$ )	$\Delta 32.0$ ( $\Delta 2.9$ )
■ 국가채무 (GDP 대비, %)	349.7 (34.1)	366.0 (35.6)	407.1 (36.9)

주: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 수지를 제외한 수치

## II. 재정운영 중점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이라는 2010년 예산안의 모토에 맞게 내년도 예산안은 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하고, ②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도 적극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이와같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③ 국민세금을 아껴쓰고 잘쓰는 데도 중점을 두고, ④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데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2010년 재정운영 중점

#### 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

- 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② 2010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 ③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
- ④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⑤ 건강·안전사회 기반 구축
- ⑥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②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⑦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D 투자
- ⑧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
- 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⑩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
- ⑪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국가이미지 제고

#### ③ 꼭 필요한 곳에,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

- ⑫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⑬ 기관운영 경비 절감 및 공무원 보수 동결
- ⑭ 기금여유재원,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자원활용

#### ④ 2013~20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

- ⑮ 2010년 재정수지 개선 : 2009추경( $\Delta 5.0\%$ ) → 2010안( $\Delta 2.9\%$ )

## 1.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민생안정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의 자활능력 확충 등 脫빈곤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둘째야 이상 무상보육 확대 등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내년도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높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올해 추경의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시행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재학중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를 신규 도입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07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14만호보다 4만호 확대된 18만호를 공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도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 2.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미래한국을 이끌 R&D투자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정부 R&D투자를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0.5%가 증가한 13조 6천억원을 반영하여,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와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 등에 중점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형 녹색뉴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가뭄·홍수예방, 물 부족 등 시급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하천을 여가·문화·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5.4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재정에서 7.4조원, 수자원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도로 등의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2009년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20.6조원)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광역기반시설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까지 도시소재 점포 12,000개(2010년 2,000개)를 스마트숍으로 전환하기 위해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다.

중앙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개편하고, 매년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천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간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이와 연계된 지방 거점대학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국가이미지 제고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분담금을 대폭 확충하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엑스포 등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도 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 3. 국민세금, 더 아껴쓰고 더 잘쓰기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에 중점 투자하는 등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사업들은 지원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점검하여 조정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 기관운영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다.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민간선투자와 토지은행(Land bank), 그리고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4.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설정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 목표를 수정·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 (당초) '12년 균형 → (수정) '13년 GDP 대비 △3% 적자
- 프랑스 : (당초) '12년 균형 → (수정) '12년 GDP 대비 △1.2% 적자
- 일본 : (당초) '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 (수정) '19년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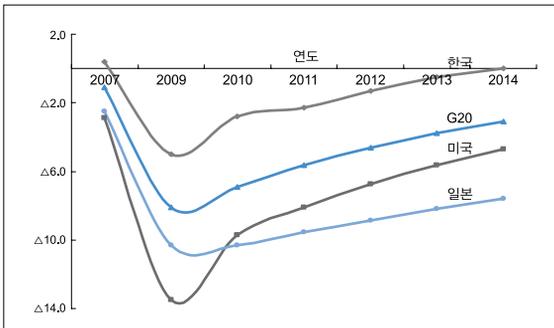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당초 20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 G20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함으로써 2013~2014년에 균형이 달성되도록 하

며, 국가채무는 2013년에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국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G20 국가 전망자료 : The State of Public Finance (IMF, '09. 8)  
 2. 한국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대상수지 전망치

이러한 자원배분 중점에 따라 편성된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안 (예산+기금)

(단위: 조원, %)

구 분	'09 <sup>1)</sup>	'10안	증가율
1. R&D	12.3	13.6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4.4	△10.9 <sup>2)</sup>
3. SOC	24.7	24.8	0.3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2.1
5. 보건·복지	74.6	81.0	8.6
6. 교육	38.2	37.8	△1.2 <sup>3)</sup>
7. 문화·체육·관광	3.5	3.7	7.8
8. 환경	5.1	5.4	5.1
9. 국방(일반회계)	28.5	29.6	3.8
10. 외교통일	3.0	3.4	14.7
11. 공공질서·안전	12.3	12.9	4.3
12. 일반공공행정	48.6	49.5	1.8
◆ 총지출	284.5	291.8	2.5

주. 1) 본예산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5% 증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4% 증가

### III. 맺음말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경제학자인 슈페터(Schumpeter)가 말했다. 예산은 단순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국가미래의 설계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세대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관리와 녹색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미래도약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KIPF

# 2010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hhong@kipf.re.kr)

## I. 서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들어선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2010년도 예산·기금안과,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에는, 이번 금융위기로 큰 변화를 겪은 국제적 환경 속에서, 현 정부의 목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계획을 담아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뒤흔들어 놓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안겨주었고,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제시한 중·장기 계획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대공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공조로 이루어진 유례 없는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은, 최근에 들어 그 효과를 점차 나타내며 우리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는 벌써 출구 전략의 논의를 재촉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여준 반

면에, 각국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짐을 또한 남겨주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작금의 사태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정성을 다시금 강화해 나가면서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2010년 재정 운용의 목표를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하는 것과 ‘재정건정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하는 것으로 잡고, 적극적인 재정을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안에서 발견되는 몇몇 이슈들을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재정총량

예산안에 따르면, 2010년도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1% 하락한 287.8조원으로 추계된다.

〈표 1〉 재정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산)	(결산)	(결산)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중기계획)		
재정수지(단위: 조원, %)										
일반회계 적자국채	9.0	8.0	6.7	7.4	19.7	35.5	30.9	29.4	18.8	9.7
통합재정수지	3.5	3.6	33.8	11.9	6.4	-22.0	-4.0[23.8]	2.9[30.5]	15.6[40.2]	26.4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공적자금 상황	11.6	14.4	30.2	27.5	31.2	29.0	28.0	30.4	31.7	32.6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3.6	26.4	30.2	27.5	31.2	29.0	28.0	30.4	31.7	32.6
공적자금 상황	12.0	12.0	-	-	-	-	-	-	-	-
관리대상수지	-8.1	-10.8	3.6	-15.6	-24.8	-51.0	-32.0[-9.7]	-27.5[-6.6]	-16.1[0.0]	-6.2
(GDP 대비,%)	(-1.0)	(-1.3)	(0.4)	(-1.5)	(-2.4)	(-5.0)	(-2.9)	(-2.3)	(-1.3)	(-0.5)
기초 관리대상수지	2.0	1.4	17.0	-1.2	-13.5	-39.3	-	-	-	-
총수입 <sup>1)</sup>	213.5	227.6	271.8	269.1	290.9	279.8	287.8[314.7]	309.5[339.2]	337.6[367.0]	361.7
(증가율)	(5.6)	(6.6)	(19.4)	(-1.0)	(8.1)	(4.0)	(-1.1)	(7.5)	(9.1)	(7.1)
지출규모(단위: 조원, %)										
총지출 <sup>2)</sup> (예산)	210.0	224.0	238.0	257.2	284.5	301.8	291.8[290.9]	306.6[308.7]	322.0[326.7]	335.3
(증가율)	(6.6)	(6.7)	(6.3)	(8.1)	(10.6)	(17.3)	(2.6)	(5.1)	(5.0)	(4.1)
일반회계	134.2	144.8	154.3	175.5	196.9	203.5	200.8	-	-	-
(증가율)	(13.5)	(7.9)	(6.6)	(13.7)	(12.2)	(16.0)	(2.0)	-	-	-
통합재정	187.9	205.9	209.8	238.8	257.5	275.9	-	-	-	-
(GDP 대비,%)	(23.2)	(24.3)	(23.3)	(23.0)	(24.9)	(27.0)	-	-	-	-
순융자제외	184.9	200.2	202.7	233.4	248.7	256.5	-	-	-	-
(증가율)	(7.4)	(8.3)	(1.3)	(15.1)	(6.6)	(9.9)	-	-	-	-
이자지급	10.1	12.2	13.4	14.4	11.3	11.7	-	-	-	-
재정총격지수(명목GDP 대비, %)										
FI(관리대상수지)	0.5	0.4	-1.6	1.7	2.2	1.7	-0.3			
국가채무비율(명목GDP 대비, %)										
국가채무비율	28.7	31.1	30.7	30.2	34.1	35.6	36.9[31.9]	37.6[31.5]	37.2[30.9]	35.9
적자성채무비중	40.7	42.4	42.5	42.9	42.8	46.1	48.6	51.0	52.1	52.1
금융성채무비중	59.3	57.6	57.5	57.1	57.2	53.9	51.4	49.0	47.9	47.9

주: 1) 국제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제, 세외수입, 기금자체수입의 합계, 2) 예산+기금 규모에서 예산-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연구원 계산

총수입의 하락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세수입의 하락(3.9% 하락)이 주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부분 2.5조원이 빠져 있어서, 이 지방소비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총수입의 하락 예상치는 0.24%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 이는 2009년 추경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것이고, 추경 대비 2.9% 증가한 총수입보다 약 4조원 가량 많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2009년 추정상 51조원(본예산 24.8조원)에서 37.3% 감소(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32조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지난 추경의 22조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51조원에 이르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볼 때, 내년 한 해는 적어도 다른 해에 비해 숫자상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표 1>에 나타나듯이, 2011년 이후에는 2010년에 비해 개선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G20 국가들<sup>1)</sup>의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국가들과 개선 속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에 대한 충격이 작았기에,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정책의 기초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FI)는 -0.3%로, 금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초(본예산 2.2%, 추경 1.7%)에 비하여 내년도 재정정책은 미미하게 긴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총량들을 함께 살펴보면 여전히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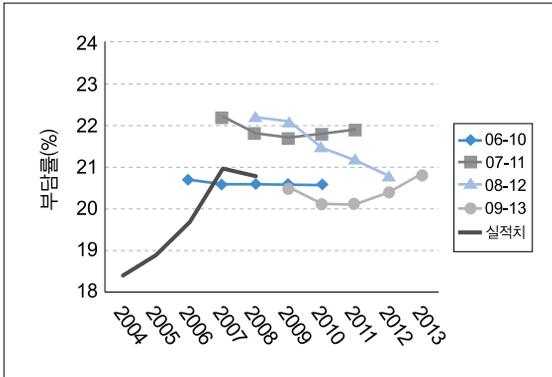
<표 1>을 좀더 살펴보면, 이미 추경으로 22조원 가량의 적자가 금년에 발생한 상태에서, 총지출은

당장 2011년에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sup>2)</sup>으로 복귀하고 있는 반면, 총수입 추계는 기존의 수준에서 약 30조원 가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우선 2010년에는 세계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의 경제성장 전망과 관세, 부가세, 법인세 및 양도세 세수증가로 금년 추경보다 4.6조원 증가한 168.6조원(지방소비세 포함시 7.1조원 증가한 171.1조원)의 국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전망치인 188조원에서 10.3% 감소한 것으로, 2011년 이후의 국세수입 예측치들도 금융위기 이후 약 7.4% 가량 전망치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는 '10~'13년 평균 9.2%(8.0%~9.9% 증가세, '09~'13년 평균은 7.5%)에 달해,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 평균 증가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이러한 증가율은, 7.6%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0.4%p~2.3%p 높은 것으로, 국세탄성치가 1.2%가 넘는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국세탄성치 평균 1.52% 보다는 낮으나, 1980년 이후 탄성치가 1.2%를 넘는 경우는 적극적 증세 노력이 있었던 외환위기 극복 이후와 금번 위기 발생 이전인 참여정부 후반기의 2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낙관적인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런 탄성치 전망은 자연세수의 증가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워, 안정적 탄성치 전망('11~'13년, 1.05%~1.30%)을 바탕으로 한 국세수입 예상치를 위해서는, 2010년 이후에도 세원확보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1) Horton, M., M. Kumar, & P. Mauro(2009),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A Cross-Country Fiscal Monitor," IMF Staff Position Note, SPN/09/21  
2) <표 1>에서, 금년 발표수치 옆 [ ] 안에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표되었던 '10~'12년 총수입, 총지출 및 여러 예측치들이 비교 제시되었다.

[그림 1] GDP 대비 조세부담률



한편 조세부담률은, 지난 '08~'12의 꾸준한 하락세와는 달리, 2010년 잠시 주춤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국세수입 전망으로, 조세부담률 역시 잠시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결국 2013년에는 '07~'08년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기금·특별회계의 여유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개편 및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의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위기 이전부터 표방해온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이러한 세수증대의 노력과 함께 재정건전화의 큰 목표 속에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다시 한 번 앞으로 정부의 여러 방면에 걸친 힘든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총지출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의 일시적 재정증가분인 28조원 중 57.8%인 10조원 정도를 차감하여 18조원 가량이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출감소의 대부분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나 교육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R&D분야나 보건·복지분야를 비롯한 몇몇 부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 지출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 추경이 비교적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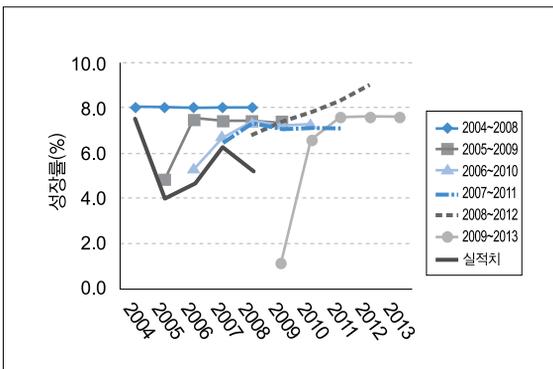
든 분야에 있어서 증가한 것에 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금년의 대단위 확대재정으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재정건전성 관련 목표들을 완화하는 추세로, 우리 정부도 위기 이전의 GDP 대비 국가채무 30%의 목표를 4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음을 이번 중기재정목표에서 밝히고 있다. 2010년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36.9%로 예상되는데, 다른 G20국가들 ((Horton et al., 2009))의 평균인 82.1%에 비하면 아직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부채비율을 적극적으로 채무관리를 통해 2011년을 정점으로 차차 낮추어서 2013년에는 35.9%까지 하락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G20국가들 평균보다는 크게 낮지만, G20국가들 중 개도국 평균(2014년 36.4%)에 비하면 그리 작은 수치로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의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G20국가들 간에 채무비율 수준 및 변화의 차이도 커서, 국가간 상대적 비교는 크게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 다만, 조세부담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표 1>의 하단에서 보여지듯,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나타나는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향후 국가채무의 구성 변화의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재정지출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 전망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수추계 및 조세부담률, 재정수지의 GDP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볼 때 주로 사용되는 경상GDP의 전망치를 보면,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장률 예측치는, 현실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성장률 예측치는 조세부담률 및 국가부채 비율 등에

있어 중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국제탄성치를 이용한 총국세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5차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보통 1.5%p~1.9%p의 예측오차를 보여 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큰 부분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일반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와 달리 교역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GDP디플레이터의 경우, 금년은 환율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금년 예상치인 2.6%를 상회하는 2.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망(삼성연 -11.8%, 현대연 -10.2%, LG연 -9.5%)이 지배적인 가운데 설정된 2.5%의 상승률 예상치는, 금년 수준에 비하면 낮지만, 기존의 실적치<sup>3)</sup>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2] 명목 GDP 성장률 : 국가운용계획상의 예측치와 실적치



## 2. 분야별 자원 배분

2010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라는 세 가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고,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법질서 확립 및 국가위상 제고에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분야별 재정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R&D, 보건·복지, 그리고 교육 등 세 개 분야의 지출비중이 꾸준히 높아져서 '09~'13년에 걸친 평균 지출 증가율이 각각 10.6%, 6.8%, 6.0%로 동기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 4.2%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에 금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분야는 2010년에는 지출 비중이 감소하나, 2011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11~'13년 평균 증가율은 각각 6.1%와 2.7%에 달한다<sup>4)</sup>. 특히나, 금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28조원 중에서 57.8%인 10조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감소하는데, 이는 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감축<sup>5)</sup>된 반면, R&D 분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의 추가적 지출 축소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총지출의 구성비로 살펴보면, 2010년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교육, 일반공공행정 분야들이고,

3) 지난 5년('05~'09)평균 1.88%, 외환위기 이후('98-'09) 평균 2.36%,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시기 들만의 평균 1.64%, 외환위기 이후 국제유가 증가율의 하락기 평균 1.97%.

4) 2010년 예산상의 감소를 포함한 '09~'13년 평균 증가율은 각각 1.2%와 2.0%로 축소된다.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 6.4조원 감소(추경: 4.6조원 증가), 일반공공행정에서 2.2조원 감소(추경: 3.1조원 증가), 교육에서 1.4조원 감소(추경: 1조원 증가)

이들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추경에서 뿐만 아니라, 2008~2013년의 기간 동안에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각각 0.5%p, 1.2%p 감소하는 반면 SOC와 교육에의 지출은 각각 연평균 5.4%, 6.0%의 증가율을 보이며 그 비중

이 2008년 대비 0.2%p, 0.7%p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난 6차례의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분야별 자원배분의 추이와 비교해 보아도, 최근 들어 R&D, SOC와 교육분야의 지출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가속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재원

〈표 2〉 분야별 재정배분

분야	'08년	'09년		'10년	본예산대비 증감	추경대비 증감	'11년	'12년	'13년	'09~'13 평균증가율
		본예산	추경	예산안			중기계획			'09~'13 평균비중
■ 총지출	262.8	284.5	301.8	291.8	7.3	-10	306.6	322	335.3	4.2[4.6] <sup>1)</sup>
1. R&D	11.1	12.3	12.7	13.6	1.3	0.9	14.9	16.6	18.4	10.6[11.1]
(총지출 비중, %)	4.2	4.3	4.2	4.7	0.3	0.5	4.9	5.2	5.5	4.9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7	16.2	20.8	14.4	-1.8	<b>-6.4</b>	15.1	15.9	17	<b>1.2[6.1]</b>
(총지출 비중, %)	5.6	5.7	6.9	4.9	-0.8	-2.0	4.9	4.9	5.1	5.1
3. SOC	20.5	24.7	25.4	24.8	0.1	-0.6	25.3	25.9	26.7	<b>2.0[2.7]</b>
(총지출 비중, %)	7.8	8.7	8.4	8.5	-0.2	0.1	8.3	8.0	8.0	8.3
4. 농림수산식품	16.8	16.9	17.3	17.2	0.3	-0.1	17.4	19.2	17.6	1.0[0.6]
(총지출 비중, %)	6.4	5.9	5.7	5.9	0.0	0.2	5.7	6.0	5.2	5.7
5. 보건·복지	68.8	74.6	80.5	81	6.4	0.5	85.3	90.7	96.9	6.8[6.6]
(총지출 비중, %)	26.2	26.2	26.7	27.8	1.5	1.1	27.8	28.2	28.9	27.8
6. 교육	36.1	38.2	39.2	37.8	-0.4	<b>-1.4</b>	40.7	44.3	48.3	<b>6.0[8.9]</b>
(총지출 비중, %)	13.7	13.4	13.0	13.0	-0.5	0.0	13.3	13.8	14.4	13.6
7. 문화·체육·관광	3.3	3.5	3.6	3.7	0.2	0.1	3.8	3.9	4	3.4[2.6]
(총지출 비중, %)	1.3	1.2	1.2	1.3	0.0	0.1	1.2	1.2	1.2	1.2
8. 환경	4.5	5.1	5.7	5.4	0.3	-0.3	5.5	5.7	5.8	3.3[2.7]
(총지출 비중, %)	1.7	1.8	1.9	1.9	0.1	0.0	1.8	1.8	1.7	1.8
9. 국방(일반회계)	26.6	28.5	29	29.6	1.1	0.6	30.9	32.3	33.7	4.3[4.4]
(총지출 비중, %)	10.1	10.0	9.6	10.1	0.1	0.5	10.1	10.0	10.1	10.1
10. 통일·외교	2.8	3	3	3.4	0.4	0.4	3.4	3.4	3.4	<b>3.2[0]</b>
(총지출 비중, %)	1.1	1.1	1.0	1.2	0.1	0.2	1.1	1.1	1.0	1.1
11. 공공질서·안전	11.7	12.3	12.4	12.9	0.6	0.5	13.2	13.7	14	3.3[3.0]
(총지출 비중, %)	4.5	4.3	4.1	4.4	0.1	0.3	4.3	4.3	4.2	4.3
12. 일반공공행정	45.9	48.6	51.7	49.5	0.9	<b>-2.2</b>	52.7	54	54.8	<b>3.0[2.0]</b>
(총지출 비중, %)	17.5	17.1	17.1	17.0	-0.1	-0.2	17.2	16.8	16.3	16.9

주: 1) [ ] 안의 평균 증가율은 2009년의 추경효과를 제외한 '11~'13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연구원 계산

배분 중점사항들과 관련되어 이런 방향에서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지출의 경직성 위험과 재정건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매년 세심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논란이 많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15.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하고, 재정에서 나머지 7.4조원을 부담하여, 이 사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4대강을 제외한 SOC예산의 축소 문제는, 2009년 추경시 한시적으로 증가한 많은 부분을 줄여서 일단 20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보다는 많이 지원(21.3조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본예산(24.2조원)이나 추경(24.7조원)보다는 낮은 액수가 배정되고 있다. 또한, 투자비용의 87.7%가 2010 ~ 2011년도에 집중(2010년 43.5%, 2011년 44.2%)된 상황에서, 추경항목의 조정이 없는 2011년의 계획에서는 더욱 재원배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III. 결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들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집행해왔고,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위기에의 대응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빠르게 시작되었던 각국의 경기부양책들이, 2009년 후반기에 들어서야 서서히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경제는 이미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벌써 4%에 이르는 성장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물론, 더블딥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현재 보이는 긍정적 현상들이 주로 정부부문이 적극적으로

로 대처해 온 결과로서, 앞으로 정부의 여력이 다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민간부문이 기존의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경제회복을 이끌어나가 줄 수 있을런지는 확실치 않다. 아직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 적어도 현재까지 이런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판단과 과단성 있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충분한 활력을 불어넣기까지 더 더욱 세심하고 냉철한 판단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KIPF**



# 정책토론투리포트

## ■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 본 원고는 2009년 10월 14일 은행회관 2층 국회의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를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초청토론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 일 시            2009년 10월 14일(수) 15:0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5:10~16:4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 표 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 ▶ 토 론 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와카이 슈지    한국넛켄(주) 대표이사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가나다 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주제 발표 요약**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김유찬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조세경쟁력에 대한 기관별 평가순위

- 한국의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관마다 매우 상이
  - IMD(국가경쟁개발원)의 경우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세제부문 경쟁력 순위가 전년도 18위에서 14위로 상승
  - WEF(세계경제포럼)의 경우는 2009년 두 가지 세부 분야에서 133개국 중 72위/35위로 평균 53위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
  - World Bank 지수는 조세분야 국제경쟁력이 세금 납부횟수 178개국 중 141위, 납부시간은 114위, 실효세율수준은 48위로 평가함

2. 평가 내용에 대한 분석

-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초래
  -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표성이 약하고, 응답 경로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개별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객관성에 대하여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
  - 그러나 개별 국제기관들이 지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이유는 그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국가들이 노력함으로써 전체 세계경제가 동반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분야의 국제경쟁력이 특정한 연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순위를 차지하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음
  - 조세분야 국제경쟁력 지수를 참고하되 단년도 지수보다는 수년간에 걸친 중기적인 지수로서 파악하고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

- 다만,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는 단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

3. 향후의 조세경쟁력 강화 방안

-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조세제도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부단히 개선되고 있지만 그 변화되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스러움
    - IMD 등의 평가에서 개인과 법인의 실질 세부담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음
    - 따라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실적 위주의 일방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납세자들을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함
      - 국세청 지휘부에서 홍보를 강조하면 국세청 집행부서에서는 홍보 건수를 실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홍보 건수만 채우고자 하므로 결국 홍보효과는 미미

-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방안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행정이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됨
  - 자유형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가벼우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무거움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과세행정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기본적인 시각(탈세, 세무조사의 공정성, 국고주의적 태도 등)을 교정해 나가야 함
  - 납세자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려우므로 과세당국은 매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무행정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또한 납세자의 권리·의무, 불복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기법 등을 변경한 경우 그에 관한 안내, 서식 설명 및 교육 등을 통해 납세자와 의사소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준조세부담의 완화
  -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인세보다 오히려 준조세의 부담이 더 높다는 의견
  - 이와 같이 준조세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조세에 비해서 그 징수절차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
  - 준조세에 대한 사전 및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함
  - 또한 준조세의 모금과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업들에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

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서식 건수는 366건으로 일본의 320건과 미국의 144건 및 영국의 47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고서식이 많은 이유는 하나의 서식에 담겨 있는 정보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조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따라서 신고서식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내용을 단순화하며 중복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납부횟수는 지나치게 많게 규정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세수는 많지 않은데도 불필요하게 세금 납부횟수를 많이 규정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세목이 있는데 증여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
  -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전자방법에 의한 납세신고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오류 감소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주고 인력비용을 감소
  - 따라서 전자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토론 요약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되어야

배상근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조세분야 경쟁력은 전경련과 같이 기업 하는 사람 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MB 정부 출범 후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하 기 좋은 환경 조성”, “Business friendly tax” 등 많 은 노력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년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발제자의 진단과 같이 평가기관의 평 가가 객관적 지표보다는 설문조사 등 주관적 요소에 많이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평가기관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년은 전·현직 국세청장 3명이 연속적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등 조세행정에 대한 국 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었고,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위 축 및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시기였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 온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경쟁력 결정에는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조세행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조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곤란하다.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무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 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국세행정 개혁작업은 선진국의 국세행정 개 혁사례를 더욱 면밀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비록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가능하나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 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제도 개선과정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싶다.

국제조세 관련규정에 불명확한 점 많아

Jay Shim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공평하고 적정 한 과세라는 세무조사 본래 목적 외의 외생적(外生的) 변수, 예컨대 정치적 논리, 반외자(反外資) 정서에 의 하여 영향을 받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다소 불 투명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과세논리에 있어 일관 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국제조세 관련규정에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다. 특히, 조세조약의 혜택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이 다소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

셋째, 시행세칙(Regulatory guidance)의 미비들 들 수 있는데 국내세법과 관련된 시행세칙의 미비로 인하여 세무공무원과의 논의 및 재논의에 시간과 비 용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불필 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Grandfathering rule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법 시행 또는 새로운 예규 시행 이전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구법 또는 구예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Grandfathering rule)이 한국 세법에는 없어, 현행법상 신법 시행 또는 새로운 예규 시행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신법 또는 새로운 예규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과세당국의 예규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예규가 예규신청자의 질문에 충실히 답을 못하고 있다. 과세당국에 유리한 예규의 경우에는 “과세된다”는 식으로 명확히 답변하고 있는 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규의 경우에는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질의서에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등이다.

## 납세협력비용 억제방안 모색 필요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본 논문은 국제경영개발원(IMD)과 WEF(World Economic Forum), 그리고 세계은행(WB)에서 매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조세부문의 경쟁력 순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국가 전체 경쟁력에 비해 조세부문의 경쟁력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수치로 파악한 조세부담을 보면 경쟁력이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다.

둘째,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담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를 파악해 보면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EF는 조세의 효율성과 세부담률의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는데,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납세협력비용, 특히 납부횟수가 많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탈세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수치로 평가한 경쟁력은 현 상태에서 그다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2008년 이후의 감세정책이 통계에 반영되면 앞으로 경쟁력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이전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 대상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즉, 우리나라에 투자한 국제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인근 동남아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세부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들(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세부담이 높은 편이다. 2008년 이후의 감세정책이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다른 납세자들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아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여 세금을 적게 낼 때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세부담이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탈세가 많다는 평가 및 조세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와 연계된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투명성 제고, 탈세 방지방안의 모색을 통해 좀 더 조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공정성(fairness)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서는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각도로 협력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7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추정치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높거나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없다.

현재 호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EU에서 2007년에 제시한 행동지침(action plan)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고빈도를 법령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상호 관련 있는 법령 등의 신고빈도를 조율함(align)
- ② 동일한 정보제공 의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 요구되는 것을 금지함
- ③ 현재의 서면신고 대신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전자 및 인터넷 신고를 유도함
- ④ 정보수집 목적의 경우 일전 기준 이하의 기업은 의무 이행을 면제함
- ⑤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위험관리기법(risk based approach)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정보·자료의 요구를 집중함
- ⑥ 실질적 내용이 폐기 또는 수정된 경우 정보제공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함
- ⑦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법적 전문성의 획득을 요구하는 복잡한 법령의 경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및 안내서를 제공함

## 효과적인 납세홍보 방법 연구해야

와카이 슈지 / 한국닛켄(주) 대표이사

국제화가 되고 있는 나라로서 향후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사업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의 시스템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체가 대부분이었던 한국 기업은 그 후에 많은 개인사업체가 법인체로 전환하고 양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WEF(World Economic Forum)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평가할 때의 기준과의 견해 차이가 큰 것은 현실이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경제와 산업발전 과정에 특성이 있으므로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납세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무감보다 피해의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원천납세하게 되어 있는 월급생활자의 투명성과 자진신고하는 자영업체의 불투명성, 또는 인정과세당하는 자영업체의 피해의식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납세홍보의 중요성은 세무당국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역주민들이 납세한 지방세 덕분에 동네에 소방도로가 완성되었다거나 하수도가 확장되어 앞으로 침수 우려가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주민들과 직결된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즉,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아닌 세금의 효과적인 사용 용도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세금납부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있으나, 세금은 원래 발생시 징수가 원칙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납부하고 있는 것은 매입부가세 환급처리도 하여야 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세실적에 따라서 중간예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 입장으로서는 미리 당해연도의 영업실적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신고서식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하여 약 20종류가 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다양한 감면혜택을 위한 것이며 또한 되도록 신고서류를 더욱 더 신빙성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 또한 현재의 한국 실정에서는 감수하여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Seoul Japan Club(SJC)에서는 2009년 12월 31일차로 만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세제백서』 발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이 영/한양대 교수

본 논문은 IMD, WEF, WB 등에 포함된 조세 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조세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조세 관련 경쟁력 지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발표된 여러 지표들의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지표의 적합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분석하고 있어

엄밀한 경제적 유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효율성만을 분석하고 있어, 조세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형평성 개선 부분이 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발표문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가를 포함한 국민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객관적인 조세부담 정도를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백서』를 발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표 산정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표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지표 작성에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평균세율이 아닌 한계세율을 보아야 하고,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야 하고, 설문조사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발제문에 제시된 조세 발전방안 중에서는 세제 단순화와 전자납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기조 결정 필요

이중현(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쟁력의 의미는 세계 속의 우리 위치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목표를 가질 때 국가경쟁력 순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 산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세관련 지수는 그 자체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조세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조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문과정에서 단기적인 인식 전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조세지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 실질적으로 private sector에서 느끼고 있는 조세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발제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설문에 의존한 조세경쟁력 평가의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설문 결과에서 언어야 하는 lesson에 대해서도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통계자료상의 향상도 중장기적으로 결과를 성취할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세당국에 대하여 갖는 private sector의 오래된 불신은 강력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 없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기초를 결정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그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 개발국가 중 누구를 bench mark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빈번한 법 개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국가 홍보전략이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반감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법의 집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과세당국 조직내 빈번한 보직 변경으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를 지도/자문이 필요한 대상이나 잠정적 탈세자로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은 그 원인이 명확한 탈세가 아닌 경우 private information으로서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끝으로 EUCCK Survey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Tax incentives

- 한국의 조세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높음
- 한국의 조세혜택의 장점: 조세감면기간과 감면율의 적절성
- 한국의 조세혜택의 단점: 감면대상의 모호성과 협소한 적용범위, 세법규정과 세관청의 일관성 부족, 과세관청/정부의 조세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잦은 일몰규정과 감면율 변동
- 세무상 이월결손금 적용기간의 연장이 갖는 긍정적 효과/소급제도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
- 금융기관에 부여되는 조세혜택의 상대적인 취약성(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가?)

### 2. Complexity

-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
- 세목의 복잡성
- 복잡한 세무조정 항목
- 과도한 세무관련 신고서/부속서류 제출 의무
- 세법의 일몰 규정에 따른 일관성 부재
- 세법 조항의 빈번한 개정 및 변동 (예측가능성 저해)
- 20개의 세목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가 복잡하다는 인식의 단초 제공: 유세 세목의 통합 필요성

### 3. Reasonableness

- 한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환경이 합리적이라는 긍정적 답변
-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에 기인
- 접대비 범위의 불명확 등 일부 제도에 대한 불만 피력

- 세무조사 관행 및 세법에 대한 제언

#### 4. Uncertainties

- 세법해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직면
- 예규제도(사전답변제도 포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제언

###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해야

이현석 /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국가경쟁력 관련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IMD의 경우 조세부문 경쟁력을 통계 6개 항목과 설문 3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WEF의 경우 통계 1개 항목과 설문 1개 항목으로 측정하는데 설문결과는 당시 경제상황이나 응답자의 지식 수준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순위를 왜곡할 여지가 많다.

일례로 IMD와 WEF에서는 조세부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금이 투자이익과 근로이익을 저해하는 정도'를 설문조사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IMD의 경우 기업 부문은 작년 45위에서 올해 33위로 개선되었고 개인 부문은 작년 29위에서 올해 30위로 비슷하였지만 WEF의 경우 작년 31위에서 올해 7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WEF의 경우 '조세의 효율성' 기업·개인 구분없이 단일 항목으로 평가).

전체적인 조세부문 경쟁력 순위도 IMD의 경우 작년 18위에서 올해 14위로 상승한 반면 WEF의 경우 작년 32위(조세의 효율성 31위, 총조세율 33위)에서 올해 53위(조세의 효율성 72위, 총조세율 35위)로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국제기관들의 조세부문 경쟁력 평가결과가

실제 우리나라 조세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제조세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작년부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사용된 통계수치들은 대부분 감세정책이 반영되기 전 수치들이기 때문에 통계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부문이 실제로 다 좋지 않게 나온 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설문조사 분야의 경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납세당사자인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이익이 떨어진다고 답한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세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로 오도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정책만 해도 작년 말 국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라



는 정치적 구호에 묻혀 오도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 감세'는 부자를 봐주고 대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KIPF**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동향 09-18

### 요약

- 美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향후 10년(2010~2019)간 연방정부의 누적 예산적자는 \$9.05조(10년간 평균 GDP의 약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약 \$1.6조(GDP의 약 11.2%)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 업종의 광고 선전비 세전 공제한도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일반적인 경우, 광고선전비는 당년도 매출액의 15%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나 이번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음료 제조업(주류 제외)의 경우에는 당년도 매출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짐
- 네덜란드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낮은 세율(10%)로 과세하는 제도인 「Patent Box」를 확대하는 법령을 발표함
  - Patent Box 관련 손실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25.5%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소득

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

### 1.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

- 美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과 美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예산을 발표함
  - OMB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누적 예산적자가 \$9.05조(10년간 평균 GDP의 5.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CBO는 이보다 적은 \$7.14조(10년간 평균 GDP의 4%)로 예측함
  - 한편 OMB와 CBO, 모두 2009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약 \$1.6조(GDP의 약 11.2%)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함
- OMB의 재정적자 추정치는 5월에 발표한 재정적자 추정치보다 \$2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CBO의 동일 기간 재정적자 추정치 \$7.14조보다 많음
  - Peter Orszag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이전의 추정치에 비해 특정 프로그램(예: 실업보험, 푸드 스탬프)의 예산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자동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한편 OMB와 CBO 간에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OMB는 현재의 정책에 기초하여 예산을 추정한 반면 CBO는 현재의 법률에 기초하여 예산을 추정했기 때문임
- 즉, CBO는 현재 법률규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주요 감세조치가 2011년에 예정대로 모두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정한 반면 OMB는 이 중 일부만이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OMB의 재정적자 추정치가 CBO의 재정적자 추정치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 OMB의 예산전망(FY2010-FY2019)

(단위: \$십억,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Receipts)	2,524	2,100	2,264	2,717	3,010	3,221	3,403	
총지출(Outlays)	2,983	3,688	3,644	3,638	3,600	3,759	3,961	
재정적자(Deficit)	459	1,587	1,381	921	590	538	558	
연도 말 국가채무	5,803	7,612	8,868	9,782	10,382	10,870	11,439	
GDP 대비	총수입	17.7	14.9	15.7	18.1	19.1	19.4	19.6
	총지출	21	26.1	25.2	24.3	22.8	22.6	22.9
	재정적자	3.2	11.2	9.6	6.1	3.7	3.2	3.2
	연도 말 국가채무	40.8	53.8	61.4	65.2	65.9	65.5	66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 ~ 2014	2010 ~ 2019	
총수입(Receipts)	3,577	3,737	3,908	4,081	4,260	14,614	34,177	
총지출(Outlays)	4,135	4,358	4,534	4,703	4,982	18,602	41,314	
재정적자(Deficit)	558	620	626	622	722	3,988	7,137	
연도 말 국가채무	11,986	12,581	13,174	13,611	14,324	n.a.	n.a.	
GDP 대비	총수입	19.9	19.9	20	20.1	20.2	18.5	19.3
	총지출	22.9	23.2	23.2	23.2	23.6	23.5	23.4
	재정적자	3.1	3.3	3.2	3.1	3.4	5	4
	연도 말 국가채무	66.5	67.1	67.5	67	67.8	n.a.	n.a.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09, 8.

〈표 2〉 CBO의 예산전망(FY2010-FY2019)

(단위: \$십억,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Receipts)	2,524	2,100	2,264	2,717	3,010	3,221	3,403	
총지출(Outlays)	2,983	3,688	3,644	3,638	3,600	3,759	3,961	
재정적자(Deficit)	459	1,587	1,381	921	590	538	558	
연도 말 국가채무	5,803	7,612	8,868	9,782	10,382	10,870	11,439	
GDP 대비	총수입	17.7	14.9	15.7	18.1	19.1	19.4	19.6
	총지출	21	26.1	25.2	24.3	22.8	22.6	22.9
	재정적자	3.2	11.2	9.6	6.1	3.7	3.2	3.2
	연도 말 국가채무	40.8	53.8	61.4	65.2	65.9	65.5	66

	2015	2016	2017	2018	2019	2010 ~ 2014	2010 ~ 2019	
총수입(Receipts)	3,577	3,737	3,908	4,081	4,260	14,614	34,177	
총지출(Outlays)	4,135	4,358	4,534	4,703	4,982	18,602	41,314	
재정적자(Deficit)	558	620	626	622	722	3,988	7,137	
연도 말 국가채무	11,986	12,581	13,174	13,611	14,324	n.a.	n.a.	
GDP 대비	총수입	19.9	19.9	20	20.1	20.2	18.5	19.3
	총지출	22.9	23.2	23.2	23.2	23.6	23.5	23.4
	재정적자	3.1	3.3	3.2	3.1	3.4	5	4
	연도 말 국가채무	66.5	67.1	67.5	67	67.8	n.a.	n.a.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An Update, 2009, 8.

- 의회예산국장 Douglas Elmendorf는 지나치게 이른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자들이 재정적자 규모의 축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 원내대표인 Mitch McConnell은 막대한 국가채무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국가안보, 고령자·퇴역군인 및 근로가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 능력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반면, 미 상원 예산위원 의장 Kent Conard는 CBO가 6월에 대통령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이미 예측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언급함

- 그러나 이번 보고서로 인해 개인의 의료보험 비용과 정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밝히면서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세입시스템을 비롯하여 균형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초당파적 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주장함

- 소득 수준이 \$250,000 이하인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재정적자 규모의 증가로 인해 광범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음
  - Elmendorf는 세금의 증가가 경제활동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GDP 대비 조세부담이 미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세변동의 잠재적 효과에 관한 CBO의 가장 최근 보고서<sup>1)</sup>에서는 2001년과 2003년에 시행한 조세감면이 2011년에 종료될 경우, 약 \$2천억(또는 1.3%) 규모의 GDP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CBO는 세금감면이 종료될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해 GDP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이것이 연방정부의 부채감소 효과와 상쇄되면서 GDP가 평균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옴

## 2. 중국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일부 업종의 광고선전비 공제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업종 광고선전비 세전공제 정책》(재세 [2009] 72호) 통지를 지난 7월 31일 발표함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광고선전비는 당년도 매출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국무원령 제 512호 44조), 이번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당년도 매출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짐
  - 본 개정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동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음료 제조업(주류 제외)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해 당년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전 공제를 허가함
    - 단, 30%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 특허경영모델(프랜차이즈)을 채택한 음료제조 기업의 경우,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부담한 가맹점의 광고선전비를 해당 가맹점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음료기업 특허경영모델이란, 음료 브랜드 소지측이나 관리측(이하 가맹본사)이 가맹자에게 지정된 지역에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브랜드 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통일적으로 가

1)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an update, p. 40, 2009. 8.



맹본사에 부담시키는 영업모델임

- 가맹자는 당년도 매출액 수치 자료 및 광고선전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보관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함

### 3. 네덜란드 「Patent Box」 확대 방안 발표

- 8월 21일 네덜란드 재무장관 Jan Kees de Jager는 「Patent Box」를 확대·실시하는 법령을 발표함
  - Patent Box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10%의 특혜세율로 과세하는 특별 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음
  - Patent Box의 확대 시행은 R&D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 성과가 미비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돕기 위한 정책임
  - 지금까지 Patent Box와 관련된 손실은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25.5%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였음
  - 일반적으로 감면대상 소득은 기타의 소득과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감면대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법령은 Patent Box 관련 손실을 25.5%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Patent Box 관련 손실에 한하여 적용됨
  - 손실은 1년간 소급공제되고, 9년간 이월공제됨
  - 본 법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

- Patent Box는 법안 「Working on Profit」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던 제도임
  - 도입 목적은 기술혁신과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2006년 12월 31일 이후 자체 개발되어 특허를 취득한 무형자산 사용료 소득에는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됨
    - 2008년 1월 1일부터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적격 R&D 결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음
      - ☞ 여기서 소득이란 무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특허 사용료임
      - ☞ 10%의 세율을 적용하려면 특허권이나 R&D 활동이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어도 30% 이상 기여해야 함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최대 무형자산 생산비용의 4배(상한액)까지로 제한함
      - ☞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5%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적용됨
    - 본 정책은 로고와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음

동향 09-19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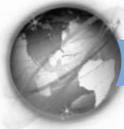
- 프랑스에서는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이 곧 내각(the Cabinet)의 승인을 받아 공개될 예정임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개정, 화석연료 소비자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 도입, 탈세(tax evasion)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임
- 네덜란드 재무부는 9월 15일, 2010 Tax Plan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Patent Box 정책 및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의 개정,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의 확대,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임
- 호주는 2009년 7월 1일부터 해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그동안 과세 면제하던 것을 국내에서 과세하고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대만 재정부는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과세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1.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이 곧 내각(the Cabinet)의 승인을 얻어 공개될 예정임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개정, 화석연료 소비자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 도입, 탈세(tax evasion)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등임
-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개정
  - 현행 규정
    - 사업소세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전 전년도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형고정자산(tangible fixed assets)의 임대가치에 대해 부과<sup>1)</sup>하는 지방세임
    - 이는 지방세수의 50%를 차지해 지방의 재정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투자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개정 및 폐지 논의가 있었음
  - 개정 내용
    - 명칭을 지역경제세(territorial economic tax, TET)로 변경하고 이에 사업소세(local business tax, LBT)뿐만 아니라 부가세(additional tax, AT)를 추가함
    - 사업소세(LBT) 부분에서 과세대상을 건물 및 토지에 한정하고 기계설비 등 동산 부분을 제외하며, 산업자산의 임대가치를 현행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치보다 15%만큼 경감함
    - 부가세(AT) 부분에서 세율을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0%부터 1.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함<sup>2)</sup>

1) 이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의 3.5% 범위 내에서 부과됨

2) 매출액이 50만유로 미만인 경우 부가세(AT) 부분을 면제하며,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함



- 탄소세(carbon tax) 도입
  - 2010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임
  - 단,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세율인 탄소배출량 톤당 32유로에서 대폭 낮춰 톤당 17유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탈세(tax evasion)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 내각은 탈세 및 조세피난처 대응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중에 있음
  - 조세피난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 0~35%에서 50%로 인상함
  - 조세피난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수료 및 유사 비용 중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부분<sup>3)</sup>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는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sup>4)</sup>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 2. 네덜란드 2010 Tax Plan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9월 15일 2010년 Tax Plan을 발표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대부분의 건의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본 Tax plan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세무행정을 간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010 Tax Pla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tent Box 정책
    - Patent Box란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10%의 특혜세율로 과세하는 특별규정임
    - Patent Box에 적용되던 10%의 특혜세율은 5%로 인하됨
    - Patent Box는 Innovation Box로 그 명칭이 변경됨
    -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무형자산 생산비용의 4배)은 폐지함
  -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의 개정
    -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 2009~2010년에 발생한 손실 중 연간 천만유로의 손실에 한해 적용됨
    -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은 9년에서 6년으로 단축됨
  - 부가급여 공제요건의 개정
    - 기존에는 모든 부가급여 항목에 대해 실비정산이 원칙이었으나,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급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류별로 공제요건을 달리함
      - ☞ 첫째, 크리스마스 선물, 자전거, 작업복 등과 같은 29개 부가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없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 총급여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제를 허용함
        - \*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 ☞ 둘째, 기타의 부가급여 항목(예: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용, 교육비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3)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현재 과세관청에 있음

4) 프랑스 세법에 의하면, 참가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수취 배당금 중 95%가 과세 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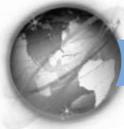
- 2011년에 도입될 예정임
- 자영업소득에 대한 표준공제 요건 중 투입시간 요건을 폐지함
-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과세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액의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이전에는 1,225시간 이상을 사업 활동에 투입해야 이러한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개정으로 투입시간 요건은 폐지됨
-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의 확대
- 부가가치 일반 세율은 19%이며 음식, 주류를 제외한 음료, 신문·잡지 등 생필품과 교통, 이발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 등에는 6%의 감면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 15년 이상 된 주택의 도색과 미장공사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던 6%의 감면세율은 2년 이상 된 주택의 도색과 미장공사에 대한 영구적 감면세율로 개정됨
  - \* 본 규정은 2009년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 6%의 감면세율 적용대상을 하드커버 서적에서 학습용 CD-ROM, DVD, 오디오 북과 같은 전자 교육자료로 확대함
  - ☞ 주거 청소 서비스(residential cleaning service)에도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
-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연비 효율이 매우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음
  - ☞ 연비가 매우 높은 자동차란 디젤 승용차의 경우 CO<sub>2</sub>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5g 이하인 경우, LPG 승용차의 경우 CO<sub>2</sub>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10g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에서 700유로(과거 500유로)가 공제됨

### 3.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 과세

-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예산안에서 호주 내국인의 해외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6월 24일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과거에는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호주의 소득세에서 과세가 면제되었음
  - 개정 법안에 의하면,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호주에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해외구호활동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과세면제하고 있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호주에서의 과세면제가 적용됨
  - 동 제도는 2009. 7.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추가적인 6억 7,500만호주달러의 세수가 향후 3년에 걸쳐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4. 대만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 실시

- 대만 재정부가 9월 18일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과세는 2006년 1월 1일 처음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속하여 시행이 연기되어 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만 국경 내에 거주하고(대만 내 주소는 없지만, 과세연도 내에 대만 내에서 183일을 거주한 자 포함),



연간 해외소득이 100만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됨

- 개인의 해외소득 항목은 10개의 카테고리(해외의 영리소득, 업무집행소득, 임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및 권리금 소득, 자력 경작·어업·목축업·산림업·광업소득, 양도소득, 경기·경쟁 및 기회 당첨상금 또는 급여, 퇴직소득, 기타소득)로 분류됨
- 최저한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해외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12% 과세
  - 해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20% 과세
  - 그 외는 소득의 20% 과세
-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해외소득이 100만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 최저한세 과세표준<sup>5)</sup>이 600만대만달러를 초과해야 함
  - 최저한세<sup>6)</sup> 계산금액이 일반소득세<sup>7)</sup>보다 커야 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최저한세와 일반소득세액의 차액보다 작아야 함
- 한편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최저한세-일반소득세액)×해외 소득/최저한세 과세표준

〈참고〉 대만의 최저한세 과세제도

- 대만의 경우 속지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대만 국내원천소득과 대만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Personal Income Tax)<sup>8)</sup>를 과세하고 있음
  - 즉, 해외원천소득이나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
    - 특히, 해외 펀드를 통해 대만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지급금은 해외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가 면제되는 고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 또는 각종 소득세 공제·감면 규정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해외소득(단, 100만대만달러까지 면제)
    - 사망시 받는 생명보험 지급금(단, 3,000만대만달러까지 면제)
    -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 종업원이 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
    - 소득세 계산시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현물 기부금 공제금액

5) 소득세법에 따른 순수소득금액+해외소득+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의 보험금+주식거래에서 얻은 소득+비현금기부금+비상장 주식 및 개인이 기금을 모아 얻은 수익이 증명되는 거래소득

6) 대만의 경우 최저한세 대신 기본소득세액(basic income tax amou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7) 통산적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산출세액 - 투자세액공제

8) 모든 법정 소득(statutory income)에 대해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상기의 소득을 모두 합친 후 600만대만달러를 공제(표준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계산
- 최저한세 금액이 계산되면 이 금액과 소득세 중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면 됨
- $\max(\text{개인소득} \times \text{누진세율}(\text{개인소득} + \text{최저한세공제}) \times \text{단일세율}$

동향 09-20

요약

- 스페인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26일 2010 예산안이 정부의 승인을 얻음
  - 이는 급증하는 재정결손을 축소하기 위한 긴축 예산으로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16% → 18%), 저축소득에 누진과세체계 도입 및 세율 인상(18% → 19%, 21%),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400) 폐지 등임
- 핀란드 정부는 9월 15일 201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소득세 세율 인하, 일반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상,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및 사탕에 대한 소비세 도입 등임
- 뉴질랜드 의회는 9월 18일 세법개정에 관한 법안(Taxation Bill)을 승인함
  - 주요 내용은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active income)에 대한 과세면제, 이전수당 및 야근식비의 과세처리 명확화, payroll giving scheme의 도입 등임



### 1. 스페인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 지난 2009년 9월 26일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이 정부의 승인을 얻음
  - 이는 급증하는 재정결손(budget deficit)<sup>1)</sup>을 축소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세법개정 관련 €110억 규모의 증세가 기대되고 있음
  -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개인소득세 분야
  - 저축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progressive taxation)를 도입함
  - 현재 저축소득은 18%의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과세소득 중 첫 €6,000에 대해서는 19%,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적용되던 €400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공제금액은 관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세 분야
  - 소기업(small enterprises)에 대한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5%p만큼 인하함
  - 현재 법인세 일반세율은 30%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중 첫 €120,202.41에 대해서는 25%,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매출액이 €5백만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25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20%로 인하함

- 부가가치세 분야
  -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general tax rate)을 16%에서 18%로 인상함
  - 경감세율(reduced tax rate) 역시 7%에서 8%로 인상하되, 최저세율(lowest tax rate)은 4%로 유지함<sup>2)</sup>
- 한편, 야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증세안에 대해 심각한 재정결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카탈로니아당(Catalan Party)은 증세안이 일자리 창출과 양립할 수 없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정당(Popular Party) 역시 증세안으로 더 많은 실업이 양산되어 결국 재정결손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음
  -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는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좌파(left-wing parties) 의원 역시 예산안에 고소득자를 위한 증세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음

1) 2010 예산안에 의하면 증세에도 불구하고 GDP 5.4%의 재정결손이 예상되고 있음. EU의 재정결손 요구 한도는 GDP 3%로 EU에서는 스페인이 2012년까지 그 재정결손 수준을 EU 한도만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참고로, 경감세율의 경우 음식(food), 거주주택(dwelling), 교통(transport), 여행(tourism) 등에 적용되며, 최저세율은 기본 생필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 2. 핀란드 2010 예산안

- 핀란드 정부는 2009년 9월 15일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본 예산안의 주요 세제정책 방향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및 세율 0.5%p 인하 등을 통해 가계 구매력·고용·내수를 촉진하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201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고, 소득세 세율이 0.5%p씩 낮아짐

(단위: €, %)

소득세			
과세표준(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3,100~21,700	15,000~22,600	7	6.5
21,700~35,300	22,600~36,800	18	17.5
35,300~64,500	36,800~66,400	22	21.5
64,500이상	66,400이상	30.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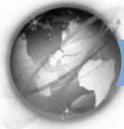
-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중교통 티켓(public transport tickets)은 1년에 1인당 €200까지 면세됨
- 대중교통 티켓의 가격이 €600에서 €3,400 사이인 경우, 이에 대한 피고용자의 과세금액은 €400임
- 집과 작업장 사이를 오가는 교통경비는 모든 고용자에게 공제 가능함
-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1,480에서 €2,200로 인상함
-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위해 납부하는 국가노령연금

은 폐지됨

- 부가가치세 세율 개정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을 22%에서 23%로 인상함
  - 기본음식과 동물사료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12%에서 13%로 인상함
  - 음식배달(Catering) 서비스 및 완전 조리되어 제공되는 음식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22%에서 13%로 인하함
  - 의약품, 서적, 문화행사에 적용되던 감면세율을 8%에서 9%로 인상됨
  - 개정된 세율은 2010년 7월 1일부터 통용될 것임
-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및 사탕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은 10%에서 15%로 인상됨
  - 사탕에 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임
- 휘발유 밴(van)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엔진 크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함
- 본 규정에서 과세는 2011년 3월부터 시행될 것임

## 3. 뉴질랜드 의회 세법개정안 승인

-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9월 18일 세법개정에 관한 법안(Taxation Bill)을 승인하였음
- 주요 내용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해외소득 과세면제
  -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active income)에 대하여 과세면제함
  - 동 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함

- 이전수당(relocation payment), 야근식비(overtime meal allowance)에 대한 과세처리를 명확히 함
  - 그동안 이전수당 및 야근식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에서 과세면제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 급여기부제도(payroll giving scheme) 도입
  - 종업원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인 'payroll giving scheme'을 도입함
  - 이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모두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것임
  - 종업원이 급여를 통해 납부한 기부금(payroll donation)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없이도 기부 금액의 33.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세액공제 금액은 종업원의 원천징수세액(Pay as you earn)에서 상계함

# 정책 흐름



-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에서 발표한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10년 재정 모습

### 1. 경제 여건

- (세계경제)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09. 7월) : ('09)△1.4 → ('10)2.5%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10년중 4% 내외 성장 전망

### 2. 세입 전망

-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10년 총수입은 '09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
- 국제 등 예산수입은 '09년 負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2.6% 감소한 191.9조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9조원 수준

(단위: 조원 %)

	'09		'10안(B)	증감률 <sup>1)</sup> (B/A)
	본예산(A)	추경		
■ 총수입 <sup>2)</sup>	291.0	279.8	287.8	△1.1
• 예산	196.9	185.7	191.9	△2.6
- 국세	175.4	164.0	168.6 <sup>3)</sup>	△3.9
- 세외수입	21.5	21.7	23.3	8.2
• 기금	94.1	94.1	95.9	1.9
* 조세부담률	21.6	20.5	20.1	

1) 증감률은 '09년 본예산 대비  
2) 국제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국세, 세외수입, 기금 자체수입의 합계  
3)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전 기준으로는 171.1조원

## 3. 지출규모

-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09 추정보다 축소
- '10년 총지출은 '09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
-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

(단위: 조원 %)

	'09		'10안 (B)	증감률(B/A)
	본예산(A)	추경		
■ 총지출 <sup>1)</sup>	284.5	301.8	291.8	2.5
• 예산	204.1	210.3	202.8	△0.6
• 기금	80.4	91.5	89.0	10.6

1) 예산+기금 규모에서 예산-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연차 별로 축소
- '10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09 추정(△5.0%)보다 개선된 △2.9%
- 일반회계 국채는 '09 추정(35.5조원)보다 감소한 30.9조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9년 추정(35.6%) 대비 다소 증가하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

(단위: 조원)

	'09		증감
	본예산	추경	
■ 관리대상수지 <sup>1)</sup>	△24.8	△51.0	△32.0
(GDP 대비, %)	(△2.4)	(△5.0)	(△2.9)
■ 국가채무	349.7	366.0	407.1
(GDP 대비, %)	(34.1)	(35.6)	(36.9)
■ 일반회계 국채	19.7	35.5	30.9
* 실질성장률	4.0%	△2.0%	4.0%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을 제외한 수치

## II '10년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용 목표

- ◆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
- ◆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

### 1. 자원배분 방향

- 1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책과제 중점 지원
  - 4대강 살리기,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될 광역기반시설 확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

### 2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

-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되,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
- 복지투자를 내실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지원의 체감도를 제고
- 신종플루, 사이버 안전 등 안전사회 구현을 지원

### 3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제고

- 준법질서 확립 · 민생치안 강화 등 기본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
- FTA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지원
- G-20 의장국 등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뒷받침

## 2. '10년 재정운용 전략

###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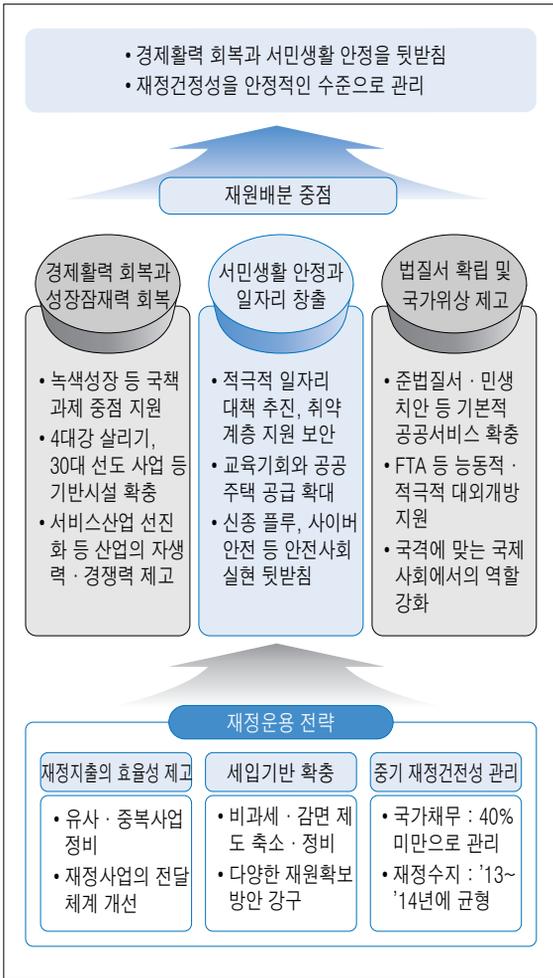
- 유사 ·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조정
- 복지 · 농업 · R&D 등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 사업들은 지원효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종료
- 인건비 및 기관운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

### 2 세입기반 확충

-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축소 ·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 기금 ·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활용, 민자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 민간先투자 및 민자사업 활성화, 토지은행(Land bank) 등 적극 활용

### 3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13~'14년 균형 달성  
⇒ '10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Delta 2.9\%$ )를 '09 추경( $\Delta 5.0\%$ )보다 개선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  
\* 국가채무 : ('10)36.9% → ('11)37.6% → ('12) 37.2% → ('13) 35.9%



### III 재정운용 중점

#### 1.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

- 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② 2010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 ③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
- ④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⑤ 건강·안전사회 기반 구축
- ⑥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2.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⑦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D 투자
- ⑧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
- 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⑩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
- ⑪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

#### 3. 꼭 필요한 곳에,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

- ⑫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⑬ 기관운영 경비 절감 및 공무원 보수 동결
- ⑭ 기금여유재원,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활용

#### 4. '13~'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정성 관리

- ⑮ '10년 재정수지 개선 : '09추경( $\Delta 5.0\%$ ) → '10( $\Delta 2.9\%$ )

## I.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1.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 및 탈수급 촉진
  - 기초수급자·차상위층의 자활근로기회 확대  
: ('09) 4.8만명, 2,899억원 → ('10안) 6.5만명, 3,984억원
  - 탈수급이 가능한(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에게 2~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자립자금 적립 지원

#### 【희망키움통장】

-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만 가구
- ◆ 지원규모 : 월 30만원 수준 (2~3년간 총 1,000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09년 본예산(158.6만명)보다 4.6만명 늘어난 163.2만명(추경수준) 반영  
: ('09) 158.6만명, 6.9조원 → ('10안) 163.2만명, 7.0조원

- 장애인의 소득안정 및 자활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10. 7월)

-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 33만명
- ◆ 지원규모 : 1,474억원, 개인당 월 15/14/9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 \* 장애수당 : 1,090억원 ('10. 1~6월)

	지급 대상	지급 단가
• 장애수당	차상위* (23만명) * 최저생계비 120%	월 13/12/0만원
• 장애인연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33만명)	월 15/14/9만원

-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 : ('09) 25천명, 1,124억원 → ('10안) 30천명, 1,348억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 ('09) 1.8만명, 305억원 → ('10안) 3.7만명, 508억원

-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아부터 무상보육 실시

-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5만명
- ◆ 지원규모 : 신규 156억원(1인당 최대 월 27만원 추가혜택)

-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 ◆ 지원대상 :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까지 지원(1.8만 가구 추가 수혜)
- ◆ 지원규모 : 신규 96억원(1인당 최대 월 17만원 추가혜택)

-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신규 도입

- ◆ 지원대상 :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 1천 가구
- ◆ 지원규모 : 신규 44억원(가구당 월 58만~69만원)

- 방과후 학교·종일돌봄교실·대폭 확대 (전국 2,000개교 추가)

- ◆ 지원대상 :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밤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 ◆ 지원규모(지방비 포함) : ('09) 109억원 → ('10안) 800억원

※ 저출산 관련 지원 예산 : ('09)2.4조원 → ('10안)2.8조원 (17.3% 증)

- 노인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60세 이상 치매노인 6.7만명  
 ◆ 지원규모 : 신규 67억원(월 3만원, 9개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등)  
 ◆ 지원규모 : ('09) 17.6만명, 2,035억원 → ('10안) 26.6만명, 3,303억원

**중증장애인연금 및 둘째아 무상보육**

- 중증장애인 연금('10. 7월 시행)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수당(현행)	장애인연금
• 지급대상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지급인원	23만명	33만명
• 지급월액 (기초/차상위/신규)	13/12/0만원	15/14/9만원

☞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10만명에게 월 9만원 신규 지원

☞ 기존 차상위 이하(23만명) 지급액도 월 2만원 씩 인상

• 예산소요 : 1,474억원(6개월분, '10. 7~12월)

\* 장애수당 : 1,090억원(6개월분, '10. 1~6월)

- 둘째아 무상보육
  -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 달

성하기 위해 둘째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 까지 확대

\* 현재 소득하위 50~60% 부모의 둘째아는 무상보육 실시 중(5만명)

• 수혜내용 : 소득하위 60~70%(소득상위 30~40%)부모의 둘째아 5만명에게 보육료 추가 지원 (최대 월 27만원)

\* 전체 무상보육대상자 : ('09) 6만명 → ('10안) 76만명

• 예산소요 : 156억원

**2. 2010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고려, '10년에는 '09년 본예산(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구 분	'08	'09		'10안
		본예산	추경	
일자리 예산(조원)	2.1	2.7	4.7	3.5
공공 일자리(만명)	29	40	80	55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는 지속 지원
  - 청년 :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예년 수준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제공
  - 노인 : 희망근로 규모 축소를 고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여성 :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단위: 천명)

	'09본예산	'09추경	'10안
• 청년	67	133	82
• 노인 · 장애인	167	203	180
• 사회서비스 일자리	129	166	140

-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
- 소득수준과 실직 · 휴폐업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

◆ 사업기간 : 4개월('10년 상반기중 지자체 자율 결정)

◆ 상품권 : 급여의 3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문의 : 02-2100-8592)

### 3.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

- '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일정소득 초과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하여 학생 ·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
  - ☞ 수혜인원 : ('09) 40만명(6,330억원) → ('10안) 107만명(8,878억원)
  - \* 현재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의무 발생
- 대상 · 지원규모
  - (대상)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
    - ☞ 고소득계층인 8~10분위는 취업 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
  - (지원규모)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대출
    - ☞ 생활비의 경우 기초생보자는 연 200만원 무상 보조, 그 외 분위는 대출
- 대출
  -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09. 2학기 5.8%)

- (거치기간) 대출시점~일정소득 발생시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음)
- (대출시행) '10년 1학기부터 시행
  - ☞ 재학생 : 현행제도와 신제도 중 선택, 신입생 : 신제도만 선택 가능

- 상환 및 대출관리
  - 연간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률을 매월 상환
    - ☞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대출연령 제한, 국제청을 통한 소득과약 · 강제징수 등 철저한 대출관리시스템 마련

### 4.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도심 가까운 곳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09. 8. 27 대책)
- 최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GB 등)에 '12년까지 20만호 추가 공급
  - ☞ 공급계획(~12년) : (당초) 40만호 → (수정) 60만호(분양 26만, 임대 34만)
- '10년에는 당초 계획 14만호보다 4만호 확대된 18만호 공급
-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정지원 확대
  - ☞ ('09년) 13만호, 61,799억원 → ('10년) 18만호, 88,348억원
  - ☞ '10년 유형별 계획(총 18만호) : 분양주택 8.5만호, 공공임대 3.3만호, 국민임대 5만호, 영구임대 1.2만호

♣ 보금자리 주택은 맞춤형 주택 및 그린홈으로 건설

-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여 입주예약자의 선호도를 설계 등에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 일반청약은 착공 이후 실시하나 사전예약제는 착공 이전 예약을 통해 설계에 입주자의 선호도 반영이 가능

-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홈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하고, 관리비를 15% 수준 절약 가능

- 그린홈(GreenHome) : 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공법 적용

5. 건강·안전사회 기반구축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국가격리시설 건립(617억원)

◆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 추가 확보로 비축물량을 전 국민의 20% 수준(1천만명분)으로 제고 : 550억원

◆ 국내 입국하는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 조치하기 위한 국가격리시설 건립(인천공항 주변) : 67억원 신규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 ('09) 354억원 → ('10안) 417억원

\* 중증외상·심뇌혈관 응급환자를 지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 확충·운영지원

◆ 응급이송체계 보강 : ('09) 264억원 → ('10안) 395억원

\* 도서·산간·농어촌 지역 등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경비정·헬기 내 응급장비 확충, 농어촌 150개 읍면동에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 ('09) 209억원 → ('0안)1,091억원

\* 농어촌·산간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설치 등

■ 망분리 확대,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09)61억원 → ('10안)808억원

■ 재해위험지구, 소화천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화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예방투자 확대 : ('09)4,655억원 → ('10안)5,019억원

☞ 재해위험지구(203개소), 소화천(314km), 우수저류시설(14개소) 등

• 기상관측시설 확충, 방재관련 R&D 투자 등 재난대비능력 제고 : ('09)1,246억원 → ('10안)1,437억원

6.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급수취약지역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기반 확충

• 가뭄시 식수 부족이 극심하나 재투자 여력이 없는 일부 지자체의 상수도 개선사업 신규지원

◆ 지원대상 :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 중 생산원가 수준, 요금현실화율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30%)

\* 생산원가, 수도요금 수준을 고려, 차등보조율(± 20%) 적용

◆ 사업비(국고) : '10~'14년(5년간 한시) 7,290억원, '10년 24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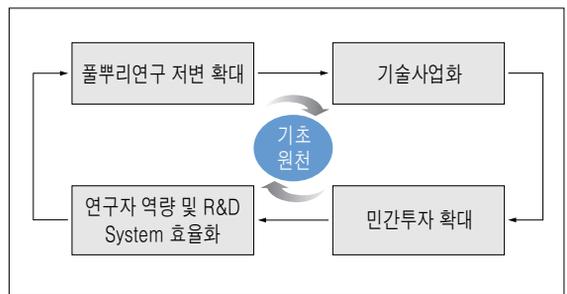
- 농어촌 · 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관정 등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지원
  -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09) 2,716억원 → ('10안) 2,875억원
-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4대강을 중심으로 녹조(綠藻)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을 처리하는 시설을 본격 확충
  - ☞ '10~'11년간 투자규모 : 5,000억원(372개소), '10년 2,476억원(209개소)
  - \* 총인(Total-Phosphorus) : 물속에 포함된 인(磷)의 총량, 하천 부영양화 지표
-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하 · 폐수처리시설 투자 확대
  - ☞ 상하수도 · 수질부문 : ('09) 3.3 → ('10안) 3.6조원
  - 전국 “좋은물(Ⅱ 급수)” 비율 : ('09)75% → ('10안)78% → ('13)82%
- 해양투기 금지('12 발효,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확대
  - ☞ 가축분뇨처리시설 : ('09) 648억원 → ('10안) 801 억원

## II.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

### 7.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R&D 투자

- 기초연구 및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국가 R&D 사이클의 선순환 효과를 강화

#### 국가 R&D Cycle의 선순환 과정



- 개인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R&D 연구 저변을 확충하고 연구자 역량 강화와 국가 R&D 시스템을 효율화
  - ☞ 개인 기초연구 규모(억원) : 기초연구자 (2,548 → 3,550), 중견연구자 (2,100 → 2,450), 리더연구자 (352 → 500)
  - ☞ 전체 이공대교수 정부과제수탁자 비율 : ('09) 20.3 → ('10) 25.4 → ('12) 35.0%
-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술개발 및 조기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녹색기술 및 IT · BT · NT 융합형기술의 원천기술 투자 확대
    - ☞ 그린카, 로봇, 산업소재, IT 융합 등 원천기술개발 (5,308억원 → 6,421억원)
  - OLED 조명 상용화 기술(신규 50억원), 신성장동력 생산장비 기술개발(신규 150억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 수입의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
  - ☞ 신재생·에너지자원기술(3,932억원 → 4,501억원), 부품소재(3,187억원 → 3,587억원)

### 8. 4대강 살리기로 녹색성장을 뒷받침

- 한국형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 가뭄·홍수예방, 물부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원적 해소, 하천을 여가·문화·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 주요 사업내용 : 댐·조절지 5개소, 보 16개소, 준설 5.7억m<sup>3</sup>, 생태하천 929km, 제방보강 620km 등

####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수변공간 정비로 국토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용수확보량 13.0억m<sup>3</sup> 증대, 홍수조절능력 9.2억m<sup>3</sup> 증대 및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 34만개 일자리 창출과 40조원 생산유발효과 창출
- 수변공간 중심의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21세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강 중심의 뉴패러다임 창조

- '10년 6.7조원(총 15.4조원의 43.5%) 투입, '12년까지 완료
  - 4대강 생태하천, 준설, 제방보강 등을 위한 재정 3.5조원 투입
  - 재정 부담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
    - ☞ 수공은 3.2조원을('10년 사업비 중 47.8%) 투자할 계획

### ①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물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

- 우리나라는 '16년 10억m<sup>3</sup>의 물 부족 예상
-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

\* 연평균('02~'06) 4대강 유역 수해복구비 2.4조원, 전국 재해예방투자비 1.4조원

-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기대

- (사업내용) 4대강 분류 및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

- 준설(5.7억m<sup>3</sup>), 보(16개), 생태하천(929km), 제방보강(620km), 댐·조절지 등 정비 추진

#### ※ 핵심추진과제

- ① 물확보 방안 : 용수확보량 13.0억m<sup>3</sup> 증대
- ② 홍수방어대책 : 홍수조절능력 9.2억m<sup>3</sup> 증대
- ③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 '12년까지 2급수로 개선
- ④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 (투자계획) '12년까지 총 15.4조원 투자(재정 7.4조원, 수공 8.0조원)

- 수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수자원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공공부문으로 환수

(단위: 조원)

구분	계	'09	'10	'11	'12
• 국토해양부	15.4	0.8	6.7	6.8	1.1
- 본사업	13.7	0.8	6.2	6.1	0.6
- 직접연계	1.7	-	0.5	0.7	0.5

② '10년 SOC 예산과 복지예산

-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 규모
  - '09수정예산, 추경 등을 통해 도로, 항만 등 4대강을 제외한 SOC에 5.1조원을 추가 지원  
⇒ '10년 예산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된 도로 등 SOC 사업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 이상 지원

(단위 조원)

	'08		'09		'10안	
	본예산	추경	당초 정부안	본예산		추경
• 4대강 제외 SOC 예산	19.5	20.4	20.6	24.2	24.7	21.3

- '10년 복지예산 규모
  - '10년 복지지출 증가율(8.6%)을 전체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  
\* (09본예산) 74.6조원 → (09추경) 80.4조원 → ('10안) 81.0조원(증8.6%)
  - '10년 복지지출 규모(81.0조원)는 '08~'12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80.3조원) 및 '09 추경규모(80.4조원)를 상회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27.8%  
\* 복지지출/총지출(%) : ('07)25.8 → ('08)26.2 → ('09본예산)26.2 → ('09추경)26.6

9.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13년까지 도시소재 점포 12,000개('10년 2,000개) 스마트숍화 전환을 위해 컨설팅 · 자금 연계 지원 (신규 1,110억원)
    - (컨설팅) 영세점포에 대한 입지분석, 점포개선 등 종합경영컨설팅 : 110억원(점포당 평균 5백만원)
    - (정책자금) 점포확장,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 : 1,000억원(점포당 평균 50백만원)
  - 소규모 점포를 체인화하여 공동마케팅, 소매점 정보화, 매장 관리 컨설팅 제공 : ('09) 38 → ('10안) 91억원
  -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및 공동마케팅 · 홍보 지원 : ('09) 287 → ('10안) 365억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등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 ('09) 250 → ('10안) 300억원
  - 신성장 · 녹색 및 M&A 분야의 중소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모태펀드 출자 확대 : ('09) 850 → ('10안) 1,000억원
  -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sup>1)</sup> 및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 ('09) 37 → ('10안) 99억원

1)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총프로젝트 비용의 10%(300만원 한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10.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제고

-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안정을 지원
  - ☞ 중앙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지원을 위해 1.5조원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
  - 부가가치세 5%(2.4조원)를 지방소비세로 개편
    - \*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므로 국민부담은 현행과 동일
  -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매년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3,000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간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9.4조원 → 9.6조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이와 연계된 지방 거점 대학 등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09년 3,017억원 · '10년 4,255억원)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 신규지원(500억원)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200여개 세부사업을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중복적 사전검토 절차 폐지 등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 "5+2 광역경제권"의 특화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
  - \* 30대 선도 프로젝트 : (09당초) 28조원 → (09본예산) 36조원 → ('10안) 34조원

### 11.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

- 國格에 상응하여 국제기여 규모를 대폭 확대 ('09년 대비+3,594억원, 26.7% 증액)
  - 공적개발원조 : '10년 ODA규모를 GNI 대비 0.13%까지 확대하여 개도국 지원 강화

- 국제기구분담금 :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기여('09년 대비+1,15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6	'07	'08	'09 (A)	'10 (B)	증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A)	1,847	2,965	2,258	2,504	3,655	1,151	46.0
• ODA 규모(B)	4,902	6,820	9,288	10,941	13,384	2,443	22.3
(ODA/GNI 비율)	0.05	0.07	0.09	0.11	0.13	0.02p	-
• 국제기여 (A+B)	6,749	9,785	11,546	13,445	17,039	3,594	26.7
							증가율
							'06~'10
							18.6
							28.5
							-
							26.1

-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 ☞ 주경기장 진출입로 완공소요(104억원) 등 시설비 : ('09) 336억원 → ('10안) 146억원
    - ☞ 시범경기, 대회홍보, 조직위 운영 등 운영비 : ('09) 42억원 → ('10안) 131억원
  -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주요 시설 건설 등
    - ☞ 박람회장 조성, 엑스포 타운, 아쿠아리움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 소요 국고부담분 지원 : ('09) 1,915억원 → ('10안) 3,855억원(102.9% 증)
  -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 ☞ '10년 12개 경기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신규 678억원) 및 조직위 운영비('09년 20 → '10안 98억원) 등 지원
  -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착수
    - ☞ 대회 홍보 및 조직위원회 운영경비 지원(10억원)

### III. 꼭 필요한 곳에, 더 알뜰하게 국민세금을 사용

#### 12. 적극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성과 중심의 자원배분
  -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

- 반복적 집행부진 · 불용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 신규사업은 재원 마련 후 추진
- \* 국도사업의 경우 48개 완공소요 반영(총 302개 사업의 15.9%), 신규사업은 (’09) 56 → (’10인) 10개로 축소

■ 유사 · 중복사업 정비

- 8개 관계부처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 중복성을 검토하여 정비

\* ①사회복지 ②직업교육 ③해외공관 ④재외동포 ⑤다문화 ⑥정보화 ⑦R&D ⑧지역발전

• 정비방안

i) 중복수혜 또는 중복적 사업수행 · 통폐합

(예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중인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수요 변화<sup>2)</sup>에 탄력적으로 대응

ii) 부처 전문성 활용과 업무협의 필요 · 사업간 연계 강화

(예시)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사업(문화부)」은 관광노하우 개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사업(복지부)」은 의료콘텐츠프 개발에 중점을 두되 해외 IR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연계 강화

iii) 경계가 모호하고 일부영역 중첩 · 사업영역 명확화

(예시) 고품질 쌀관련 품질관리는 농업진흥청, 유통 인프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구분

■ 재정전달체계 개선

- 복지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조기 구축\*(’10. 1월) 등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 · 중복 지급 방지
- \* 실시간 소득 · 재산 조사 및 개인별 수급이력 종합관리
- 농업 : 농업보조금은 졸업제\* 도입으로 예산의 고착화 방지, 융자사업은 민간자금을 활용

\* 농업경영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

- R&D : R&D 관리기관 통폐합(14 → 4개),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과제의 중복 방지

- 정보화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전산장비의 통합구매 · 운영 확대 · 기존 장비 활용도 제고, 운영비 절감

\* (개별구매) 1,665억원 → (통합구매) 806억원 (△859억원)

■ ’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사업의 원칙적 종료

☞ ’09년 수정 ·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액된 35개 사업 감액조정(’09본예산 11.1조원 → ’09추경 27.6조원 → ’10안 7.7조원)

\* 종료사업(15개) : △8.9조원, 감액사업(20개) : △11.0조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은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감안, 필수소요만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5조원 → 0.3조원), 신용보증기관 출연(2.7조원 순감) 등

-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 ’10년 상반기까지 운영

\* 지원규모 : (’09) 6개월 25만명 1.3조원 → (’10안) 4개월 10만명 0.4조원 실적 · 휴폐업자 우선, 생산적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

- 긴급생계지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반영

※ 긴급복지(0.2조원 → 0.1조원), 한시생계구호(0.4조원 순감) 등

※ ’09년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10년 편성 현황 : 7개 사업 4.9조원 → 5개 사업 종료, 2개 사업\* 감액 1.2조원

\* 희망근로사업 : 13,280억원 → 4,456억원, 지역신용보증 지원 : 3,700억원 → 500억원

2) 경기회복시 주택구입 증가, 전세수요 감소 ; 경기침체시 주택구입 감소, 전세수요 증가

### 13. 기관운영 경비 절감 및 공무원 보수 동결

- 기관운영 경비는 전년 수준 이하로 편성(△1.2%)
  - 물가상승 등 경비증가요인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안
• 기관운영 경비:	21,454	23,056	23,372	23,084억원
(증가율, %)	(0.8)	(7.5)	(1.4)	(△1.2)

-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5.2%)하여 낭비 요인을 최소화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안
• 업무추진비:	1,826	2,116	2,053	1,946억원
(증가율, %)	(△0.2)	(16.0)	(△3.0)	(△5.2)

- 공무원 보수는 '98~'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동결
  -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솔선수범

	'98	'99	'00	'08	'09	'10안
• 처우개선율(%)	△4.1	△0.9	9.7	2.5	동결	동결

### 14. 기금여유재원,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 활용

- 재정의 통합적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적극 활용
  - \* 기금 여유재원 활용  
: '08년 0.6조원 → '09년 1.2조원 → '10안 1.4조원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 3,846억원

- 토지은행(Land Bank),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공기업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

\* 도로·철도·수자원 관련 공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SOC 적기 완공 뒷받침 (1.4조원 → 5.1조원)  
\* 토지은행의 공공용지 비축('09년 0.7조원 → '10안 1.0조원)을 통해 절감되는 용지비를 SOC 건설사업에 활용

-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 확대 기초를 지속 유지하되, 내실 있게 추진

\*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민자사업 제도개선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 - 민자 집행규모 : ('09) 7.8조원 → ('10안) 7.9조원  
\* 민간시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先투자하고 後보전하는 민간先투자 적극 활용 - 민자先투자 규모 : ('09) 1.0조원 → ('10안) 2.0조원

## IV. '13~'14년 균형재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

### 15. '10년 재정수지 개선 : '09추경(△5.0%) → '10안(△2.9%)

- 美·日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적자 증가로 재정건전성 목표를 수정·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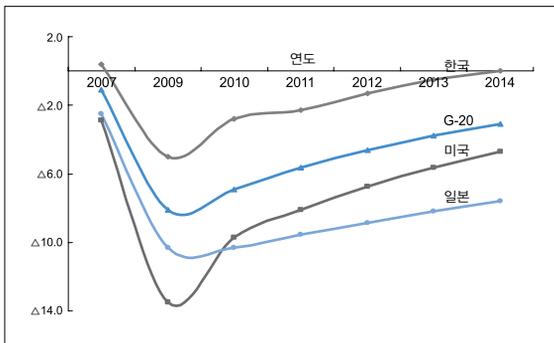
- 미 국 : (당초) '12년 균형 → (수정) '13년 GDP 대비 △3% 적자
- 프랑스 : (당초) '12년 균형 → (수정) '12년 GDP 대비 △1.2% 적자
- 일 본 : (당초) '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 (수정) '19년 흑자

-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 G-20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관리

- (재정지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
  -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연차별로 축소, '13~'14년 균형 달성
  - (국가채무) '13년에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 이를 위해 '1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09추경(△5.0%) → '10안(△2.9%)로 축소

### 주요국 중기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 G-20 국가 전망자료 : The State of Public Finance (IMF, '09. 8)

\* 한국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대상수지 전망치

### IV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예산+기금)

(단위: 조원, %)

구 분	'09 <sup>1)</sup>	'10안	증가율
1. R&D	12.3	13.6	10.5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6.2	14.4	△10.9 <sup>2)</sup>
3. SOC	24.7	24.8	0.3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2.1
5. 보건 · 복지	74.6	81.0	8.6
6. 교육	38.2	37.8	△1.2 <sup>3)</sup>
7. 문화 · 체육 · 관광	3.5	3.7	7.8
8. 환경	5.1	5.4	5.1
9. 국방(일반회계)	28.5	29.6	3.8
10. 통일 · 외교	3.0	3.4	14.7
11. 공공질서 · 안전	12.3	12.9	4.3
12. 일반공공행정	48.6	49.5	1.8
• 총지출	284.5	291.8	2.5

주: 1) 본예산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4% 증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4% 증가

### ① R&D

#### 정책방향

- ◇ 창의적 기초연구,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 국민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우주 등 거대기술 분야 지원 확대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 증가율 (10.5%)은 여타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정부 R&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10년에도 R&D 투자를 지속 확대

\* ('08) 11.1조원 → ('09) 12.3조원 → ('10안) 13.6조원 → ('12) 16.6조원

-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sup>3)</sup>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도 적극 유도
- 창조형 R&D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분야 투자 확대
  -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09년 29.3% → '10년 31.3% → '12년 35.0% 수준으로 확대
  -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 확대(5,000억원 → 6,500억원)
-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로 조기 성장동력화 지원(1.5조원 → 1.9조원)
  - 그린카, IT 융합, 부품소재 등 유망기술 분야 투자 확대
    - \* 그린카, IT 융합, 로봇, 산업소재 등 산업원천기술개발(5,308억원 → 6,421억원)
  - 문화컨텐츠(300억원 → 435억원)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895억원 → 5,607억원) 지원 확대
- 고유가·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1.9조원 → 2.2조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적극 지원 (2,256억원 → 2,401억원)
  - 에너지 다소비기기(보일러,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등) 효율향상 등 에너지 기술개발 지속 확대 (1,676억원 → 2,100억원)

- 국민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투자도 확대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면역백신 개발(40억원 → 150억원) 지원 확대
  -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신규 90억원) 및 공공복지안전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신규 50억원) 지원
  - 한국형 우주 발사체(신규 200억원), 위성체 개발 등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 강화(748억원 → 1,044억원)
- R&D 투자 확대와 병행하여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
  -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비중을 '09년 50% → '10년 6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관리기관 통폐합(14 → 4개)을 계기로 R&D 과제관리 강화 및 유사·중복 투자 방지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기초·나노·환경 등	35,376	40,850	• 일반연구자 지원 (2,748 → 3,550) 등
■ 우주항공 등	30,596	31,412	•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200) 등
■ 기계·제조공정 등	12,554	14,957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631 → 885) 등
■ 정보·전자	19,676	20,838	• 산업융합기술개발 (1,003 → 1,219) 등
■ 인력·장비구축 등	25,235	28,346	• 산업전문인력양성(742) 등
합	123,437	136,403	10.5% 증

## 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정책방향

-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
- ◇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3)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각각 20%, 25%(중소기업은 30%, 35%)로 확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 그린카수송시스템 등 녹색기술,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
    - \* 그린카수송시스템 개발(631억원 → 885억원), 부품소재(3,187억원 → 3,587억원)
  -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지원 (400억원 → 672억원)
-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 견인
  - 그린홈 100만호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4,535억원 → 5,658억원)
  - 태양광·지열·수소전지 등 녹색기술개발 지원 확대(2,256억원 → 2,401억원)
-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보조 (27억원 → 90억원) 및 스마트계량기 보급 확대(10억원 → 80억원)
  - 에너지 고효율제품 및 에너지 절약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6,061억원 → 6,513억원),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 확대(2,960억원 → 3,236억원)
-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 석유·가스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 확대(6,201억원 → 6,907억원)
    -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 7.4% → '10) 9.1%
    - \* 광물자원 자주개발률 : '09) 25.0% → '10) 27.0%
-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37억원 → 99억원) 및 아이

- 디어 상업화(250억원 → 300억원) 지원 확대
- 체계적인 창업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확충(286억원 → 324억원)
  - \* 창업보육센터 3개 신축, 15개 확장 (현재 282개)
-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응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등을 통해 소규모 점포 체인화 촉진(38억원 → 91억원)
  -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정책자금 연계 지원
    - \* 스마트숍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110억원, 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1,000억원 등 총 1,110억원 추가지원
  -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지역상권형, 근린생활형 시장으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287억원 → 36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예산	'10안	비 고
■ 산업진흥·고도화	48,546	51,261	• 그린카수송시스템 (631 → 885) •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3,187 → 3,587)
■ 무역 및 투자유치	6,765	4,563	• 수출보험기금 출연 (3,100 → 1,000)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400 → 672)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5,847	46,034	• 신재생에너지 (6,791 → 8,059)
■ 산업금융	49,556	31,267	• 신용보증기관 출연 (11,600 → 500)
■ 기술지원 등	11,350	11,254	•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 (2,620 → 2,797)
합	162,065	144,379	10.9% 감

③ SOC

정책방향

- ◇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SOC 사업 적기 확충
- ◇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
- ◇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도로 등 SOC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 이상 지원

\* 非 4대강 예산 : (09당초) 20.6조원 → (09본예산) 24.2조원 → (10안) 21.3조원

- 또한 공기업·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

\* 공기업 투자 : 도공(0.85조원 → 1.0조원), 철도시설공단(0.5조원 → 0.9조원), 수공(3.2조원) 등

■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 중점 투자

- 확장 일변도의 도로건설을 지양하고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

\* 4~6차로 단선 확장을 지양하고, 2+1차로와 2차로 용량보강 등 우선 추진

- 녹색교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및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 강화

\* 광역철도 건설 : (09당초) 6,747 → (09본예산) 8,288 → (10안) 8,496억원

\* 광역간선급행버스(BRT) 구축 179억원, 대중교통환승시설 구축 72억원 등

■ 미래 대비 핵심투자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부문을 중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

- 4대강 살리기 재정지원 규모 확대 : (09)0.8조원 → (10안)3.5조원

\* 수자원공사는 '10년에 3.2조원 투자

■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필수요소를 '10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

\* 30대 선도프로젝트 : (09당초) 2.8조원 → (09본예산) 3.6조원 → (10안) 3.4조원

-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망,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 산업단지 진입도로 : (09당초) 5,900억원 → (09본예산) 8,021억원 → (10안) 6,69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당초	'09본예산	'10안	비 고
■ 도로	81,456	94,731	78,065	• 고속도로 건설 (10,667 → 14,544 → 11,055)
■ 철도	36,949	47,454	40,672	• 철도건설 (26,987 → 37,145 → 30,240)
■ 도시철도	14,562	15,898	11,382	• 도시철도 건설 (7,793 → 8,729 → 6,329)
■ 해운·항만	20,042	21,298	18,350	• 신항만 개발 (9,274 → 9,677 → 6,934)
■ 항공·공항	442	592	656	• 공항소음대책 (37 → 187 → 187)
■ 물류 등 기타	20,821	21,952	22,228	• 여수 EXPO 개최지원 (1,915 → 1,915 → 3,885)
■ 수자원	18,364	22,657	52,615	• 국가하천정비 (5,410 → 7,910 → 37,350)
■ 지역개발	12,602	14,047	15,891	• 제주영어교육도시(신규 60)
■ 산업단지	6,180	8,808	8,216	• 산업단지 진입도로 (5,900 → 8,021 → 6,695)
합 계	211,418	247,436	248,074	전년 대비 0.3% 증

④ 농림수산물

정책방향

- ◇ 농어업의 고품질화, 녹색산업화로 '강소(強小) 농어업' 육성
- ◇ 시장개방에 대응한 체질 강화 지원과 함께 농어촌 복지 개선

- 고품질 · 친환경을 기반으로 '작지만 강한 농어업' 육성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신규 35억원), 친환경 비료 구입비 지원(1,852억원 → 2,314억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강한 농업 육성
  - 참다랑어 외해양식(신규 44억원), 해수온천 양식 단지 개발(신규 9억원) 지원 등으로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식품산업 육성
  - 한식세계화 본격 추진(100억원 → 240억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식품산업 발전 모델 모색
  - 고품질 시설원에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 물류와의 연계를 위해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원(신규 106억원)
-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 · 녹색자원화 지원
  - 지열 · 펠릿난방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신규 1,320억원)
  - 백두대간 고산수목원(68억원 → 211억원) 및 테라피단지(20억원 → 105억원) 조성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웰빙 기반 확충
  - 바다숲 · 바다목장사업 지원(290억원 → 414억원),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18억원 → 22억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 시장개방 · 고령화에 대응한 구조조정 · 체질강화 지원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체질강화 지속 지원
    - \* FTA 대책사업 지원 : (09) 1,4조원 → (10안) 1,6조원
  - 고령농, 이 · 탈농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신규 750억원)
  - 부실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733억원 → 605억원)

- 농어촌의 복지 · 생활 · 주거여건 개선
  - 농지연금제도\* 도입(11)을 위한 기반 구축(신규 22억원)
    - \* 고령농(65세 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원
  - 취약농가 영농도우미\*(47억원 → 55억원), 노후 주택개량자금\*\* 이차보전 지원(37억원 → 58억원) 등으로 농어촌 생활 · 주거여건 개선
    - \* 지원인원 : (09)13천명 → (10)15천명
    - \*\* 지원물량 : (09)7,000동 → (10)8,000동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농업 · 농촌부문	134,940	136,701	• 친환경비료지원 (1,852 → 2,314) • 농지매입 · 비축(신규 750)
■ 수산 · 어촌부문	13,507	13,805	• 바다숲 조성(100 → 150) • 참다랑어 외해양식(신규 44)
■ 임업 · 산촌부문	15,348	16,232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14 → 145)
■ 식품업부문	4,719	5,376	•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 (신규 106) • 한식세계화(100 → 240)
합	168,513	172,114	2.1% 증

⑤ 보건·복지보건·복지

정책방향

- ◇ 복지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생계·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보육부담 경감, 노인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투자를 확대

- 복지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인 27.8%로 제고

	'07	'08	'09본예산	'09추경	'10안
■ 복지지출(조원)	61.4	68.8	74.6	80.4	81.0
■ 복지지출/총지출(%)	25.8	26.2	26.2	26.6	27.8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등을 통해 예산누수를 방지

-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 기초생보자·차상위층의 탈빈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활능력 확충(4.8만명, 2,899억원 → 6.5만명, 3,984억원)
  -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13만호, 62,111억원 → 18만호, 88,348억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 도입(33만명, 1,474억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25천명, 1,124억원 → 30천명, 1,348억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18천명, 305억원 → 37천명, 508억원) 지원 강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아동언어발달 지원 등 원활한 사회적응 유도(299억원 → 423억원)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5만명, 156억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소득기준 완화, 18천명, 96억원), 불임부부 출산 지원 확대(121억원 → 25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176천명, 2,035억원(급여비 1.1조원) → 266천명, 3,303억원(1.9조원))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치매 약제비 신규 지원, 67천명, 67억원)
-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
  -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조성(63억원 → 872억원) 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2,774억원 → 3,077억원)
  -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추가 500만명분, 550억원),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설치 등 응급의료기반 확충(391억원 → 1,74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71,427	73,001	• 생계·의료급여 (58,639 → 59,487) 등
■ 공적연금	238,197	260,884	• 국민연금 급여 (76,745 → 90,780) 등
■ 보육·가족·여성	19,297	22,976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21 → 16,322) 등
■ 노동	117,547	123,190	• 실업급여(33,265 → 35,222) 등
■ 보훈	33,597	35,773	• 보훈보상금 (18,072 → 18,926) 등
■ 주택	150,171	166,542	• 보금자리 주택 (62,111 → 88,348) 등
■ 취약계층·노인·청소년 등	46,994	55,461	• 기초노령연금 (24,697 → 27,236) 등
■ 보건	68,663	72,571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46,828 → 48,615)
합	745,893	810,398	8.6% 증

**참고 '10년 일자리 대책**

**정책방향**

- ◇ '09 추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되, 경제 및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일자리 대책 추진
- ◇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확대

-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하여, '10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마련
  - \* 성장률(%) : (08) 2.2 → (09전망) △1.5 → (10전망) 4.0 내외
  - \* 실업률(%) : (08) 3.2 → (09전망) 3.6~3.7 → (10전망) 3.6 내외
- '08~'09년 일자리 규모, '10년 고용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09분예산(40만명)보다 높은 55만명 수준 지원

구 분	'08	'09		'10안
		분예산	추경	
■ 일자리 예산 (조원)	2.1	2.7	4.7	3.5
■ 공공부문 일자리 (만명)	29	40	80	55

- '09년 추경에 반영된 한시적 사업은 축소하되, 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지속 추진
  -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
    - ☞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축소(25만명 → 10만명, 13,280억원 → 4,456억원)하고, 시행과정상의 미비점은 보완
  - \* 선정기준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 대상사업 : 생산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재료비 비중 : 현행 25% → 40%)

- \* 상반기에 시행하되, 구체적 시기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
- \* 상품권 지급은 현행방식(급여의 30%) 유지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교육 등 수요가 있는 부문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내실화 추진
- \* 사회서비스 일자리 : (09분예산)129천명 → (09추경)166천명 → (10)140천명

-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2.9조원 → 3.4조원), 고용유지지원금 (583억원 → 998억원)등은 확대정책 기조를 '10년 상반기까지 유지
  - '09년 추경 신규 반영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중단
  - \*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대부(7월말 3.1% 집행), 무급휴업근로자 지원(0%)
-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실업자(168천명 → 170천명) 및 비정규직(344천명 → 395천명) 대상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상담-훈련-취업'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 활성화
  -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104억원 → 197억원), 고령자 뉴스타트(11억원 → 57억원), 청년층 뉴스타트(84억원 → 92억원)

(단위: 억원, 만명)

구 분	'09분예산	'09추경	'10안	비 고
■ 고용창출	27,354 (40)*	47,073 (80)	35,166 (55)	• 청년 : 67천명 → 133 → 82 • 중장년 : 169천명 → 465 → 292 • 노인등 : 167천명 → 203 → 180
■ 고용유지	672	5,938	1,142	• 고용유지지원금 : 583 → 3,653 → 998 • 임금피크제 : 37 → 37 → 95
■ 고용촉진	37,450	53,129	39,181	• 구직급여 : 29,272 → 37,927 → 33,660 • 고령자뉴스타트 : 11 → 11 → 57
■ 교육 및 훈련	13,490	15,059	12,918	•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 3,911 → 3,911 → 4,106 • 저소득층취업패키지 : 104 → 124 → 197

\* ( )는 직접 일자리 지원 수

⑥ 교육

정책방향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초·중·고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인재육성 지원

- 대학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중점 지원
  -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107만명 대상)
    - \*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 : (09) 6,330억원 → (10안) 8,878억원
-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중점
  -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고교 다양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
    - \* 교과교실제 : (09) 647 → (10) 707개
    - \* 마이스터고 : (09) 21 → (10) 35개
    - \* 자율형사립고 : (09) 25 → (10) 60개
  - 선진형 대입전형 정착 지원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 \* 입학사정관제 지원 : (09) 236억원 (40개교) → (10안) 350억원 (60개교)
  -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본격화 등을 통한 영어공교육 강화
    - \*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 : (09) 20억원 → (10안) 45억원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비 인재 육성 지원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대학교육 역량 강화,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투자

-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수도권) : (09) 1,210억원 → (10안) 1,250억원
-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09) 699억원 → (10안) 800억원
-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 (09) 1,284억원 → (10안) 1,549억원
-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 \*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 (09) 727억원 → (10안) 740억원
-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09) 2,310억원 → (10안) 2,550억원

-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육 지원 확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확대
    -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09) 304억원 (2,1천명) → (10안) 526억원(3,6천명)
  -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외동포 교육여건을 개선
    - \* 재외동포 교육지원 : (09) 395억원 → (10안) 69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유아·초중등교육	329,681	320,54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6,511 → 318,263) • 방과 후 종일돌봄교실 (신규 한시, 400)
■ 고등교육	46,371	50,70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6,330 → 8,878)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1,284 → 1,549)
■ 평생·직업교육	5,101	5,258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2,310 → 2,550) • 고교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1 → 148)
■ 교육일반	1,295	1,255	• 교육과학정보 보호사업 (34 → 45)
합 (교부금 제외시)	382,448 (55,937)	377,757 (59,493)	1.2% 감 (6.4% 증)

⑦ 문화·체육·관광

정책방향

- ◇ 문화콘텐츠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 국제경기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 확충

- 콘텐츠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콘텐츠 R&D(371억원 → 521억원) 확대, 저작권 보호(295억원 → 317억원)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 콘텐츠산업 매출액 : ('09) 65조원 → ('10) 72조원 전망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확대
  - 의료관광 활성화(신규 42억원), 컨벤션산업(MICE) 육성(85억원 → 124억원) 등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개척에 재정투자 확대
  - ☞ 외래관광객 수 : ('09) 750만명 → ('10) 825만명
- 국제경기 지원 및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 확충
  - 국제대회 개최지원(598억원 → 1,063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167억원 → 207억원) 등 국민건강복지 기반 확충
  - 국립대한민국관(신규 97억원), 국립현대미술관(200억원 → 350억원) 등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유산 보호 · 관리 강화(문화재보호기금신설 1,00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문화예술	12,908	14,922	• 콘텐츠R&D육성 · 저작권 보호강화(666 → 839)
■ 관광	8,948	8,711	• 의료 · 컨벤션산업육성(85 → 166)
■ 체육	6,175	6,492	• 국제경기지원(598 → 1,063)
■ 문화재	4,625	5,053	• 문화재보호기금(신규 1,003)
■ 문화및관광일반	2,096	2,282	
計	34,756	37,460	7.8% 증

⑧ 환경

정책방향

- ◇ 수질개선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

-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 투자 확대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관련 환경기초 시설 확충
  - 농어촌 및 재정이 열악한 취약지역의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 개선 지원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09) 49.9% → ('10) 54.5%
-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
  - 가연성 및 유기성폐기물 연료화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 \* 폐기물 에너지화율 : ('09) 1.7% → ('10) 3.2%
  -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 \* 환경기술 실용화 : ('09) 550건 → ('10) 662건

- 기후변화 및 환경성 질환 등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국민 실천 능력 강화
  - 석면 등 유해 화학물질,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상하수도·수질	32,786	35,597	• 하수처리장 (5,642 → 6,638) • 상수관망최적관리(신규 243)
■ 대기	3,180	2,861	• 기후변화대응국민실천지원 (187 → 281)
■ 폐기물	3,189	3,219	• 폐기물 자원화(359 → 762)
■ 자연	3,591	4,098	• 국립생태원 건립 (742 → 989)
■ 환경일반	5,922	5,730	• 환경보건기반구축(56 → 87)
■ 해양	2,257	2,034	• 갯벌복원 사업(신규 15)
計	50,923	53,539	5.1% 증

## ⑨ 국방

### 정책방향

- ◇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전력 증강 추진
- ◇ 장병 사기진작 및 호국·안보의식 고취

- 북핵 등 안보환경 변화 및 미래전 대비 전력증강 뒷받침
  - 감시정찰·정밀타격 등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중점 지원
  -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도모

\* 국방비 대비 R&D 투자비율 : ('09) 5.6% → ('10) 6.1%

- 군 주거시설 현대화 등 장병 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 개선

-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 군관사 및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현대화 추진
  - \* 병영생활관 개선율(침상형 → 침대형) : ('09) 75% → ('10) 82%
- 쌀떡 간식(신규, 47억원), 신형 방한복 보급 확대(9억원 → 33억원) 등 장병 사기진작 강화

- 호국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호국·안보의식 고취
  - 서울현충원 시설 보강 및 전쟁기념관 이용 활성화 지원(133억원 → 242억원)
  -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29억원 → 79억 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방위력개선	86,092	92,437	• 차기전투기(5,238 → 6,800) • K-21보병전투차량 (2,583 → 3,962) 등
■ 전력유지	87,866	93,432	• 군주거시설(8,101 → 8,422) • 장비유지비 (18,921 → 21,185) 등
■ 병력운영	101,162	101,696	• 급식·피복비 (15,097 → 15,641)
計 (일반회계 기준)	277,182 (285,326)	289,262 (296,039)	4.4% 증 (3.8% 증)

## ⑩ 외교·통일

### 정책방향

- ◇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을 위한 외교역량 확충
- ◇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뒷받침

- 국가 위상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추진
  - 對 개도국 지원(ODA) 확대(ODA/GNI 비율 : 0.11% → 0.13%)
  - PKO분담금(1,015억원 → 1,978억원) 등 國格에

걸맞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2,504억원 → 3,655억원)

■ 세계를 향한 실용외교 추진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 FTA 체결 확대, 新아시아외교 추진,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 FTA 체결 확대: 23억원 → 46억원(발효 국가 수 44 → 55 개국)

\* 에너지·녹색성장 외교 강화: 80억원 → 100억원(에너지 보좌관 21 → 40개 공관)

- 현지 전문인력 확충(신규 100억원, 226명)을 통한 재외공관 역량 강화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지원

-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 (588억원 → 835억원)

\* 통일미래비전 수립, 북한정세 분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통일교육

- 남북 경제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노력 지속

\* 남북협력기금은 '09년 규모로 운용('10안 11,218억원)

\* 개성공단 기반시설 확충(656억원 → 817억원) 및 식량·의료 지원(7,182억원 → 6,160억원) 지속

(단위: 억원)

구분	'09예산	'10안	비고
■ 외교부문	17,000	21,006	• KOICA 출연(3,172 → 3,860)
■ 통일부문	12,611	12,958	• 남북경제협력(3,046 → 3,982)
합	29,611	33,964	14.7% 증

⑩ 공공질서 및 안전

정책방향

- ◇ 범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
- ◇ 재해예방 사업의 투자 확대

■ 불법·폭력시위 및 강력범죄 대처 등 민생치안을 뒷받침

-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찰관서를 확충하고, 과학수사 장비·수사차량 등 수사 인프라 보강(2,252억원 → 2,662억원)

- 시위문화 개선, 집회관리의 선진화 등을 위해 전의경 지원 확대

\* 숙영시설 개선(42억원 → 271억원), 장비관리 선진화(27억원 → 87억원) 등

- 상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 실시(신규 150억원)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교정·교화활동 강화

-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구조금 등 지원 확대(43억원 → 83억원)

\* 유족구조금: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설립(신규 30억원)

- 교정시설 현대화, 급량비 인상 등 수용환경 개선(855억원 → 929억원)

■ 사전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원(4,655억원 → 5,019억원)

\* 재해위험지구 203개소, 소하천 314km 정비, 우수저류시설 14개소 설치

- 방재관련 R&D 투자 확대(190억원 → 22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민생치안 확립	13,613	14,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서 확충 (1,736 → 2,125)</li> <li>수사인프라(516 → 537)</li> <li>전의경 운영·지원 (721 → 878) 등</li> </ul>
■ 범죄피해자지원 및 교정·교화 활동	898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자구조금(22 → 33)</li> <li>교정시설현대화(21 → 37)</li> <li>수용관리(834 → 892) 등</li> </ul>
■ 재해예방 투자	4,845	5,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위험지구정비 등 (4,845 → 4,877)</li> <li>우수저류시설 설치(0 → 364) 등</li> </ul>
합 계	123,224	128,521	4.3% 증

### 12 일반공공행정

-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
  - 현행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0.3조원)를 「지역상생발전기금(가칭)」에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지원
- '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지원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200여개 세부사업 → 24개 포괄보조 사업) 및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제고
- '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12년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 기반을 조성
- 5년 주기 전국단위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82억 원 → 1,809억 원), 농림어업총조사(13억 원 → 196억 원) 실시 경비 지원

- DDoS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 망분리 확대, 사이버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사이버 대응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9본예산	'10안	비 고
■ 지방교부금	287,673	265,800	• 지자체 기본재정수요 보전 등
■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2	145	• 공명한 선거관리 지원
■ 인구주택총조사	82	1,809	• 인구 및 주택관련 전수조사 실시
■ 정보보호	1,742	2,699	• 망분리, 사이버관제센터 구축 등
합 계	486,377	494,926	1.8% 증

### VI '10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 1. '10년 BTL사업 규모

- (총한도액) '10년 BTL 사업은 3.6조원(안) 수준으로 편성

(단위: 억원)

구 분	'09	'10(안)	증가율
BTL규모 (지자체 자체사업)	65,465* (12,625)	35,788 (11,070)	△45.3% 수준

\* 부전-마산, 대곡-소사 등 철도사업 한도액(33,569억 원) 포함

- '09년과 달리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한도액이 감소되었으나 타 부문은 예년보다 다소 증가

\* 철도사업 제외시 한도액 : (09) 3.2조원 → (10안) 3.6조원

#### 2. '10년 BTL사업 선정

- '10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대상 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 심의·의결('08. 12 민투법 개정)

\* '09년까지는 BTL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보고만 하였으나 국회의 사전 심의강화를 위해 심의·의결로 변경

-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조기공급이 긴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추진

### 3. '10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

- 서민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대학시설 건립
  - 노후 초·중등학교 신·개축(1,1조원) 및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 대학 건립(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 3,573억원)
- 군 주거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
  -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 군관사, 독신자 숙소 등을 현대화('09년 8,283억원 → '10년 1조 5,595억원)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거 보급확대
  - '05~'10년간 BTL사업을 통해 불량하수관거 8,200km 정비 ('10년 200km, 2,217억원)
-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청주 문화센터), 전문과학관(김천, 천안), 도서관(부산 동래) 등 건립(1,058억원)

### '10년 BTL대상시설별 사업규모

(단위: 억원)

대상 사업	(추정)총사업비
<b>【국가사업】</b>	20,147
① 군 주거시설 개선	15,595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3,573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초중등학교	979
<b>【국고보조 지자체사업】</b>	3,394
④ 하수관거	2,217
⑤ 문화복합시설	380
⑥ 도서관	147
⑦ 전문과학관	531
⑧ 공공보건의료시설	119
<b>【예비한도액】</b>	1,177
소 계	24,718
<b>【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b>	11,070
합 계	35,788

## VII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1.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 도입

- 성인지(性認知)예산의 의의
  - 개념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 근거 : 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국가재정법 제34조 9호 및 부칙 제5조)

※ 정부 차원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 내외

\*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민간단체에서 성별 영향분석을 수행

- 추진 경위
  - (08. 6~12월) 09년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실시
    - \* 25개 기관, 105개 사업
  - (09. 4월) 201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통보 (재정부·각부처)
  - (09. 5~6월) 소부처 성인지예산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 (09. 6월) 2010년 성인지예산서(안) 제출(각부처·재정부)
- 2010년 성인지예산서(안) 주요 내용
  - 29개 기관,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사업별로 성별 수혜자 분석 등 성별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
    - \* 보육료 지원(복지부), 장학금 지원(교과부), 미취업자 직업훈련(노동부) 등
  - 성인지예산 도입 첫해인 만큼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계량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
- 도입효과
  - 예산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 기여

## 2. 복지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10년 1월 통합관리망을 개통하여, 급여 신청자별 수급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심사하고 개인별 수급내역도 통합 관리
    - ☞ 부정·중복수급 방지로 예산누수 최소화
-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 현행 주관적 판정방식을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세부 항목별 점수표를 활용한 객관적인 근로능력

### 판정기준 적용

☞ 근로능력자에 대한 부당한 급여지급 방지

### ■ 복지급여 관리단 활성화

- 현장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보장관리단(복지부)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 개편(11명 → 30명 수준)
  - ☞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당 지급액은 환수 조치

### ■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만성질환자 등의 과다 의료이용행위 집중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를 증원(499명 → 570명)하고 중앙지원팀 신설
  - ☞ 부적절한 장기입원·과잉진료·중복처방 억제

### ■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방식 개선

- 부처간·사업간 중복되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합·정비하고 급여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지출 절감 도모
  - \* 취업촉진수당(실업급여 잔여분의 1/3~2/3) : 재취업 성공 즉시 지급 → 재취업 3개월 후 30%, 6개월 후 70% 지급
  - ☞ 중복지원 방지 및 공통경비 절감

#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 1.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안은 증감률, %)

	'09 예산	'09 전망	'10 예산			
			'09 예산대비	'09 예산대비	'09 전망대비	
■ 총 국 세	164.0	164.6	0.6(0.4)	171.1*	7.1(4.3)	6.5(3.9)
• 소득세	36.3	33.9	△2.3(△6.4)	37.0	0.7(2.0)	3.1(9.0)
- 근로소득세	14.9	13.3	△1.5(△10.4)	14.2	△0.7(△4.8)	0.9(6.2)
- 종합소득세	7.3	5.9	△1.4(△19.0)	5.9	△1.4(△19.2)	0.0(△0.3)
- 양도소득세	6.3	7.3	0.9(14.9)	8.9	2.6(40.8)	1.6(22.5)
• 법인세	32.2	36.1	3.9(12.1)	35.4	3.2(9.9)	△0.7(△2.0)
• 부가가치세	45.6	46.3	0.7(1.5)	48.7	3.1(6.6)	2.4(5.0)
• 기타 세목	49.9	48.3	△1.6(△3.3)	50.0	0.1(0.2)	1.7(3.6)

\*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168.6조원

① '09년 전망 : '09년 예산(164.0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164.6조원

-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 및 임금동결로 감소(△1.5조원),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감소(△1.4조원), 양도세는 합리적 제도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증가(+0.9조원)
-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전망치보다 양호하여 증가(+3.9조원)
- 부가세는 경기호전 및 소비증가로 증가(+0.7조원)

② '10년 세입 : '09년 전망(164.6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한 171.1조원

- '09년 (-) 경제성장과 감세효과(△5.5조원 : '08년 △13.2조원, '09년 +7.7조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3.9%(6.5조원) 증가
-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0.8조원), 양도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가(+1.6조원)
- 법인세는 '09년 경기침체 및 감세 효과로 감소(△0.7조원)
- 부가세는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증가(+2.4조원)

### 2. 주요 세목 관련 2010년 세수 분석

① 소득세 : 37.0조원('09년 전망 33.9조원 대비 3.1조원 증가)

- (근로소득세) 14.2조원('09년 전망대비+0.8조원, 6.2%↑)
  - 명목임금 상승(5.0%)과 고용확대(15만명)에 따라 증가
- (종합소득세) 5.9조원('09년 전망대비 △0.02조원, △0.3%↓)
  - '09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정체 상태에 있을 전망

\* '10년 종합소득세는 '0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 (양도소득세) 8.9조원('09년 전망대비+1.6조원, 22.5% ↑)
- 양도세 합리적 제도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활성화(전년 대비 4.8% 증가)로 세수 증가

**② 법인세 : 35.4조원 (09년 전망 36.1조원 대비 △ 0.7조원 감소)**

- 세계개편에 따른 세수감소(△2.2조원\*)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 호전이 기대되어 감소 폭은 축소
- \* '08년 개편에 따른 감세 △7.4조원, '09년 개편에 따른 증세 +5.2조원

**③ 부가가치세 : 48.7조원 (09년 전망 46.3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 '10년 경상성장률 상승(6.6%)과 수입액 증가(16.0%) 등으로 인해 세수 증가
- \*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46.2조원

**II.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① 조세부담률 : 20.8%('08년) → 20.5%('09년e) → 20.1%('10년e)**

- 조세부담률 : 20.8%('08년) → 20.5%('09년e) → 20.1%('10년e)
- '10년 조세부담률 감소(0.4%p)는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세수감소와 '08년 세계개편의 감세효과가 '10년에 집중(△13.2조원)된 데에 기인
- \* 조세부담률 추이(%): (95)18.1 ⇒ (00)18.8 ⇒ (05)18.9 ⇒ (10)20.1
- \* 주변국 조세부담률 ('07년, %): (대만)13.7 (싱가폴)14.3 (일본)17.7 (중국)17.8

\* 선진국 조세부담률 ('06년, %): (미국)21.3 (영국)30.3 (OECD 평균)26.8

**② 국민부담률 : 26.6%('08년) → 26.4%('09년e) → 26.4%('10년e)**

- 조세부담률 하락(△0.4%p)에도 불구하고 '10년 국민부담률의 현 수준(26.4%) 유지는 사회보장기여금 상승(0.4%p)에 기인

**③ 1인당 조세부담액 : 438만원('08년) → 434만원('09년e) → 453만원('10년e)**

- '10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19만원)한 이유는 총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6조원(4.5%) 증가한 데 기인
- \*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조세부담액(총조세/인구)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

**③ 국세 · 지방세 구조**

- 부가가치세 5%(2.43조원) 지방소비세 전환 등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09년 22.2%에서 '10년 23.8%로 증가
- \* 전체 조세 중 지방세 세수 비중(%): (08)21.4 ⇒ (09)22.2 ⇒ (10)23.8
- \* OECD국가 지방세 비중('08년 revenue statistics, %): (비연방제)18.6 (연방제)38.4
- 지방세 세목 수는 16 → 17개로 증가\*(전체 세목은 30 → 31개)
- \* 지방소득세 · 소비세 신설, 사업소득세 폐지(지방소득세 · 균등할주민세로 분할)

### Ⅲ. 중기 국세 수입전망('09~'13년)

(단위: 조원, %)

	'08	'09e	'10e	'11e	'12e	'13e
• 국세수입	167.3	164.6	168.6	182.1	199.8	219.5
(증가율)		(Δ1.6)	(2.4)	(8.0)	(9.7)	(9.8)
• 지방세수입	45.5	47.1	52.6	56.7	61.1	65.9
• 실질성장률	2.2	Δ1.5	4.0	5.0	5.0	5.0
(경상성장률)	(5.2)	(1.1)	(6.6)	(7.6)	(7.6)	(7.6)
<조세부담률>	20.8	20.5	20.1	20.1	20.4	20.8

\* 조세연구원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

\* '10년 이후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를 차감한 금액

#### ① 중기 국세수입

- '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고,
  -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 병행 추진 결과

#### ② 조세부담률

- '13년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과 '10년 이후 경기회복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20.8%대로 증가

### Ⅳ. 향후 추진계획

- 9.27일(일) : 차관회의
- 9.28일(월) : 국무회의
- 10.1일(목) : 국회제출

### 참고 1 '10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세 목	'09년		'10년 예산	'09예산 대비		'09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총 국세	1,640,017	1,646,382	1,710,537	70,520	(4.3)	64,156	(3.9)
■ 소득세	362,553	339,285	369,879	7,326	(2.0)	30,594	(9.0)
• 근로소득세	148,697	133,222	141,532	Δ7,165	(Δ4.8)	8,310	(6.2)
• 종합소득세	73,057	59,185	59,010	Δ14,047	(Δ19.2)	Δ175	(Δ0.3)
• 양도소득세	63,323	72,776	89,162	25,839	(40.8)	16,386	(22.5)
■ 법인세	322,270	361,303	354,015	31,745	(9.9)	Δ7,288	(Δ2.0)
■ 상속증여세	37,573	22,569	27,015	Δ10,558	(Δ28.1)	4,446	(19.7)
■ 부가가치세	456,369	463,320	486,688	30,319	(6.6)	23,368	(5.0)
■ 교통에너지환경세	122,368	111,758	116,950	Δ5,418	(Δ4.4)	5,192	(4.6)
■ 관세	89,649	87,421	97,701	8,052	(9.0)	10,280	(11.8)
■ 교육세	42,944	40,663	45,426	2,482	(5.8)	4,763	(11.7)
■ 종합부동산세	14,882	11,836	10,461	Δ4,421	(Δ29.7)	Δ1,375	(Δ11.6)
■ 농어촌특별세	40,190	37,642	41,029	839	(2.1)	3,387	(9.0)
■ 기타세목	151,219	170,584	161,373	10,154	(6.7)	Δ9,211	(Δ5.4)

### 참고 2 '09년 전망의 주요 세목별 분석

- ① 소득세 : 33.9조원 ('09년 예산 36.3조원 대비 Δ2.3조원 감소)
  - 근로소득세 : 13.3조원('09년 예산대비 Δ1.5조원, Δ10.4%↓)
    - 임금상승률 정체와 취업자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
  - 종합소득세 : 5.9조원('09년 예산대비 Δ1.4조원, Δ19.0%↓)
    - 경기침체와 유가환급금·근로장려금 지급 등에 따른 감소
  - 양도소득세 : 7.3조원('09년 예산대비 +0.9조원, 14.9%↑)
    - 양도세 합리적 제도 개선 등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증가

- ② 법인세 : 36.1조원 (09년 예산 32.2조원 대비 3.9조원 증가)
  - '08년 법인의 실적이 전망보다 양호하였으며,
  -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외화평가손실에 대한 세법상 비용 불인정(법인세 과세)으로 세수가 증가
  
- ③ 부가가치세 : 46.3조원 (09년 예산 45.6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
  
- ④ 상속·증여세 : 2.3조원 (09년 예산 3.8조원 대비 1.5조원 감소)
  - 증여세율 인하법안 국회계류로 증여를 보류한 데 주로 기인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1.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국정운영 비전 및 재정운용 방향)**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명박정부의 비전과 '08~'12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
  -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정운영 비전 뒷받침
  - 총지출 증가율(6.2%)을 총수입 증가율(7.6%)보다 낮게 관리하여 '12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는 30% 수준에서 안정화
- \* 재정수지 (GDP 대비, %) : ('08)  $\Delta 1.1$  → ('10)  $\Delta 0.9$  → ('12) 0.0%
- \* 국가채무 (GDP 대비, %) : ('08) 32.9 → ('10) 31.9 → ('12) 30.9%
- 재원배분은 R&D,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민생안정, 삶의 질 선진화 등 복지투자도 확대

#### 분야별 연평균 지출증가율(%)

	R&D	복지	교육	산업중소
'08~'12 계획	10.7	8.7	7.6	4.4

- **(재정운용 환경변화)** '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12 계획의 운용여건이 크게 변화
  -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8년 2.2%, '09년  $\Delta 1.5\%$ (전망) 등 크게 낮아짐
  -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심화
  - 위기 이후 재편될 세계 경제질서에 대비할 필요
- **(향후 과제)** 경제위기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
  -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
  -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R&D, 신성장동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
  -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
  -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 수정예산, 추경편성으로 인해 확대된 분야의 조정 등 변화된 전체 재원배분 구조를 정상화

2.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 **(사전 준비)** '08년말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09. 1월말)
- **(계획안 마련)** 분야별 작업반 운영,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분야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중점 논의
  -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등을 심도있게 토론('09. 5. 26)
  - 13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09. 6. 22~26)

\* 주요 토론주제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분야 전달체계 효율화, 교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총 17개 주제
- **(계획의 확정)** '10년 예산안 편성내용 및 '09년 세제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 제출(10. 1)

II. 2009~2013 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① 대외 여건

- **(최근 경제상황)**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조성
  - (선진국) 일본·프랑스·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이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미국도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보다 크게 개선
  - (개도국)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내수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 **(향후 전망)**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 (선진국)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내재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등이 금융기관 부실 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
  - (개도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전망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	5.1	3.1	△1.4	2.5	4.3	4.8	4.9
- 선진국	2.7	0.8	△3.8	0.6	2.6	3.1	3.0
- 개도국	8.3	6.0	1.5	4.7	6.1	6.7	6.8

\* IMF, World Economic Outlook('09. 7월)

② 대내 여건

- **(최근 경제상황)**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2/4분기 GDP가 전기 대비 2.6%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금융·외환시장도 3월 이후 안정세
  -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의 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아직 미흡
  -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 대비)가 1/4분기 및 2/4분기에 예년('07~'08년 평균 0.7%p)보다 큰 1.8%p와 1.9%p를 차지
  - 본격적인 투자회복이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정책효과 이외의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
- **(향후 전망)** 금년도는 △1.5% 내외 성장할 전망이며,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전망

- 하반기 중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도 존재
  - '10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으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 내외 성장 전망
  - '11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 전제
- \* OECD는 우리나라가 '11~'17년간 연평균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09. 6)

## 2. 재정운용 여건

### 1) 재정수입 여건

- **(국제)** 성장률 하락으로 '08~'12 당초 계획 대비 크게 감소
- '09년 및 '10년 이후 성장률이 당초 전망 대비 하락함에 따라 '08~'12 계획의 세수 대비 크게 감소 예상
- \* 실질성장률(%) : (09당초) 5.0 → (수정예산) 4.0 → ('09 추경) Δ2.0 → ('09. 6월) Δ1.5
- \* '09 추경시 국제 세입경정 : Δ11.2조원
- **(세외수입)** 경제여건에 따라 기은·산은 등 공기업 매각 일정 및 기타 세외수입 규모 유동적

### 2) 재정지출 여건

- '09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대로 지출 베이스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
- \* '08년 추경 4.6조원, '09년 수정예산 11.4조원, '09. 4월 추경 17.2조원
- '10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

- 미래의 친환경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소요 반영 필요
-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 지출 증가 등 의무적 지출 소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 **(재정수지)** 세입감소와 지출확대에 따라 재정수지가 '09년 기준 GDP 대비 Δ5.0%로 크게 악화 ('08년 Δ1.6%)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수지가 악화

### 주요국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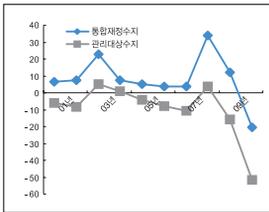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08	Δ1.6	Δ5.6	Δ4.7	Δ5.4	Δ3.4
'09	Δ5.0	Δ9.9	Δ13.6	Δ9.8	Δ6.2

\* 한국 :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주요국 : 통합재정수지(IMF, '09. 6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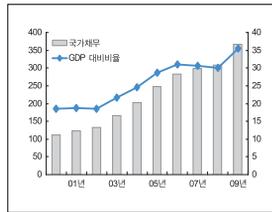
- 확대 재정에 따라 당초 계획상의 '12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 각국의 재정건전성 목표 수정사례 : (미) '12년 균형 → '13년 Δ3%, (프) '12년 균형 → '12년 Δ1.2%, (일) '11년 기초재정수지 균형 → '19년 균형 등

- **(국가채무)** 수정예산 및 추경 재원을 대부분 국채로 충당함에 따라 '09년의 경우 GDP 대비 35.6%로 상승 ('08년 30.1%)
-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 III. 2009~2013 재정운용방향

#### 1. 중기 재정운용기조

##### ① 재정운용의 중점

-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
  - 현재 재정적자는 '97년 외환위기시 초기 재정적자 모습과 유사
  - \* 관리대상수지(GDP 대비 비율) : ('98) △5.1% ('99) △3.9% ('09) △5.0%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 (중점투자 분야)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미래 대비 투자
  - (구조조정 분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분야, 투자효율 및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등
-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재정수지 균형은 가급적 조기에 회복 (당초 '12년 → '13~'14년 균형)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②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정비
  -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계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
  -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 성실신고 유도
  -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하여 추진
  - 민간투자, 아웃소싱(outsourcing) 등 시장친화적 재정운용 확대
  -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재정소요 최소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예산편성 피드백 기능을 강화

## 2. 중기 재정총량 전망

- (경제성장률) '11~'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 (조세부담률) '13년 20.8% 수준
  - \* 세입기반 확대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후반부에 다소 상승
- (재정수지) '10년 GDP 대비  $\Delta 2.9\%$  수준, 점차 축소하여 '13~'14년 균형('13년  $\Delta 0.5\%$ )
-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2년에 하락세 전환 후 '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09		'10	'11	'12	'13
	당초	추경				
실질성장률(%)	4.0	$\Delta 2.0$	4.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1.0	279.8	287.8	309.5	337.6	361.7
• 국세수입(조원)	175.4	164.0	168.6	182.1	199.8	219.5
조세부담률(%)	21.6	20.5	20.1	20.1	20.4	20.8
재정지출(조원)	284.5	301.8	291.8	306.6	322.0	335.3
재정수지(조원)	$\Delta 24.8$	$\Delta 51.0$	$\Delta 32.0$	$\Delta 27.5$	$\Delta 16.1$	$\Delta 6.2$
(GDP 대비, %)	$(\Delta 2.4)$	$(\Delta 5.0)$	$(\Delta 2.9)$	$(\Delta 2.3)$	$(\Delta 1.3)$	$(\Delta 0.5)$
국가채무(조원)	349.7	366.0	407.1	446.7	474.7	493.4
(GDP 대비, %)	(34.1)	(35.6)	(36.9)	(37.6)	(37.2)	(35.9)

## 3. 중기 자원배분방향

- ◇ 서민생활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분야별로도 강화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를 강화
  -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근로능력 확충,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 제고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
-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
-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법질서 확립, 재해예방 투자 등 사회안전 부문에 중점 투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 원스톱 서비스 공급 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본격 추진
-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는 적기에 반영
-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 R&D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투자 효율성, 연구성과의 책임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 추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등 학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능력이 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여 분야별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
  -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성과 평가 및 집행관리 강화 등 분야별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추진

#### IV.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및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분야 투자 확대
- SOC,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등 경제 분야와 통일·외교, 일반행정 분야 등은 투자 내실화 추진

(단위: 조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
1. R&D	12.3	13.6	14.9	16.6	18.4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4.4	15.1	15.9	17.0	1.3
3. SOC	24.7	24.8	25.3	25.9	26.7	2.0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17.4	19.2	17.6	1.2
5. 보건·복지	74.6	81.0	85.3	90.7	96.9	6.8
6. 교육	38.2	37.8	40.7	44.3	48.3	6.0
7. 문화·체육·관광	3.5	3.7	3.8	3.9	4.0	3.4
8. 환경	5.1	5.4	5.5	5.7	5.8	3.5
9. 국방(일반회계)	28.5	29.6	30.9	32.3	33.7	4.2
10. 통일·외교	3.0	3.4	3.4	3.4	3.4	3.6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3	12.9	13.2	13.7	14.0	3.3
12. 일반행정	48.6	49.5	52.7	54.0	54.8	3.0
총지출	284.5	291.8	306.6	322.0	335.3	4.2

#### V.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효율·책임”의 원칙하에 재정규율을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재원의 낭비 방지 및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
- 기존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정책 지원
-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 부담금 효율 인하·통폐합 등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 예타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낭비 요인 제거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정착
-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불평등 개선
- 국가계약제도 개선, 국유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고관리 기능 효율화
-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대상사업 선별, 재정부담 관리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 내실화

#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표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10월 8일(목)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정부 39개, 민간 23개)에 적용되는 「기금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62개)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나
  - 기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 결산보고서의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였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09년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라
  -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음
- 이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각 기금간에 상이하계 회계처리하던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을 통일적이고 명확히 제시함

### 〈출연금의 정의〉

출연금 :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재산

- 출연금 중 시설물의 신·증설 등 자본적 지출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자산·부채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 재정상태표의 순자산(기본순자산)에 직접 반영하여 회계처리함
    - ◆ 재정상태표에 직접 반영하는 경우
      - ☞ 시설 신설 및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 자산(부실채권, 유가증권 등)매입 또는 용자 재원으로 사용
      - ☞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의 재원
  - 출연금 중 사업비 보전 등 주로 비용 충당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 재정운영표의 수익(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반영하는 경우
        - ☞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 관련 기금)
        - ☞ 관리·운영비 충당 (사업경비 등)
        - ☞ 연구개발 관련된 기금

② 부담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수익(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부담금, 출연금, 분담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에 적용함

〈부담금의 정의〉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③ 보증, 보험,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해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함

- 준비금 및 적립금은 보증, 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금이 미래 발생할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근거법 등에 따라 부채로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 준비금 및 적립금의 증가 또는 감소액은 각각 비용(준비금전입액) 및 수익(준비금환입액)으로 계상하고,
- 해당 준비금 및 적립금의 회계연도말 잔액은 부채(충당부채 등)로 회계처리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 기금간 회계처리의 일관성·통일성이 높아져서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며
- 기금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 10월중 각 기금관리주체에 시달하여 2009년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

해 나가겠음

#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에서 발표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상반기 조기집행 167.1조원 중 157.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에 지출
- ◆ 민간 실집행 연간 진도율은 61.1%, 상반기 목표 60.6%를 0.5%p(1.4조원) 초과 달성

-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09. 10. 7) 하여 국민일보가 보도(10.8)
- 정부는 '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전망에 따른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
  - 상반기 중 본예산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집행하여 당초 목표 60.6%인 157.5조원 대비 4.2%p(11조원)을 초과 집행함.

## '09. 6월말 재정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적)

구분	'09 계획(A)	'09.6월말			연간 진도율	
		계획(B)	실적(C)	집행률(C/B)	'09.6월(C/A)	'08.6월
주요사업비		(△1.6)	(2.4)	(8.0)	(9.7)	(9.8)
• 예산	170.1	102.5	110.9	108.2	65.2	50.2
• 기금	30.5	19.0	17.9	94.0	58.6	44.9
• 공공기관	57.1	34.6	38.3	110.7	67.1	50.4

주: 1. 40개 부처 예산, 39개 기금, 25개 공기업의 주요사업비(6,104개 사업)

2. 상반기 계획 미달기관(9개): 문체부, 농식품부, 국세청, 법제처, 인권위 등

- 민간 실집행률은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하여 '09. 6월부터 집계하고 있는바,
  - 상반기 조기집행액 167.1조원 중 94.3%인 157.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상반기 집행목표 156.1조원을 1.4조원 초과한 것으로 연간진도율도 61.6%로 상반기 목표 60.6%를 상회한 것임
-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을 집중 관리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음의 사유로 부분적인 차이가 발생함.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지원된 자금 중 일부사업의 집행이 설계 변경, 보상협약 및 법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시점과 현장 실행 시점간에는 일정기간 시간차(Time-lag)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7일 발표한 실행률 통계는 정부가 집행관리 하는 40개 부처, 6,147개 사업 중 극히 일부인 446개(7.2%)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
- 특히, 실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와 집행률 수치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1/4, 2/4분기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8%, 1.9%로 나타남(한국은행)
  - IMF,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또한 정부는 집행된 재정자금이 민간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
- 매월 2회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기업 임원이 참여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 조기집행 절차 간소화 등 집행촉진을 위해 126건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각 부처 및 공기업 등 104개 조기집행 참여기관은 총 1,389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없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6일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에서 발표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 특히,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녹색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 신재생에너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동 지원방안은 녹색성장 분야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도 기여함으로써,
  - 개도국과 우리나라가 Win-Win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동 지원방안은 녹색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지원조건 개선 및 지원방식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향후 4

년간('09~'12) 당초 1.2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확대

- 녹색성장 관련 6개 중점 지원분야\* 선정·지원
  -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수력
-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개도국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한 신성장분야(태양광, 풍력, 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
  - \*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0.01~0.05% → 0%), 기타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금리(0.1~0.15%) 대비 0.05%p 추가 인하
- 개도국의 신성장분야 관련 사업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동 분야에 대해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
- 對 개도국 정책자문 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에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경우(예, 풍력단지·태양열 단지 조성 등), EDCF, 수출입은행 녹색성장 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
- 향후 EDCF를 통한 녹색성장을 브랜드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녹색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임

#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IMF팀에서 발표한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MF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WEO) 1장, 2장 주요 내용

### I.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 1.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 세계경제는 확장적 정부정책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완화되면서 성장세로 전환
  - 선진국은 전례 없는 정부개입에 힘입어 안정세로 전환
  - 신흥시장국들은 상품가격 상승, 확장적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선두로 하여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
- 다만,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재고주기 전환효과도 감소
  - 금융시스템이 훼손되고, 자산버블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회복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
- 세계경제 성장전망은 '09년  $\Delta 1.1\%$ , '10년  $3.1\%$ 로 지난 7월('09:  $\Delta 1.4\%$ , '10:  $2.5\%$ )에 비해 '09:

0.3%p, '10: 0.6%p 상향

- 한국의 경우 '09년  $\Delta 1.0\%$ , '10년  $3.6\%$ 로 전망하여, 7월('09:  $\Delta 3.0\%$ , '10:  $2.5\%$ )에 비해 '09: 2.0%p, '10: 1.1%p 상향

	'09.4(WEO)	'09.7(WEO)	'09.8(연례협의)	'09.10(WEO)
'09년	$\Delta 4.0\%$	$\Delta 3.0\%$	$\Delta 1.8\%$	$\Delta 1.0\%$
'10년	1.5%	2.5%	2.5%	3.6%

- 선진국 경제는 분기별 성장이 '10년까지 잠재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전망
- 신흥시장국은 '09년 하반기 및 '10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
- 성장률의 완만한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산출갭(output gap)은 '10년 말까지 계속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낮게 유지
- 향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회복이 정체되는 것이며, 확장정책의 조급한 철회는 미미한 회복세에 악영향

## 2. 위기 이후 중기 성장전망

- 세계경제가 건강한(healthy) 성장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장애의 해소, 글로벌 수요의 재조정이 필요

### 1) 공급측면 :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률 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potential output)이 약화될 전망
    -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이 훼손되면서 투자가 크게 둔화되고,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난 40년간 각국의 금융위기 후 성장경로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 \* 금융위기 후 7년간 1인당 GDP 성장경로를 추정해 보면 위기前 성장수준과 비교해서 약 10% 정도 낮음

### 2) 수요측면 :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 문제

- 글로벌 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
  - 특히, 흑자국의 경우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저축 축소와 소비 확대를 유도
  -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
  - 다만, 글로벌 재균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과정으로 환율변동성 확대를 수반할 필요

## 3. 정책 과제

-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출구전략을 통해 단기적 지원정책에서 중기적 정책으로 정책기조의 원활한 이행 필요
  - 설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 \* '36~'37년 미국의 재정긴축과 지급준비액의 2배 증가는 건전한 경기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됨
  - \* '97년 설부른 일본의 증세가 장기침체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음
- 반면, 출구전략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 왜곡과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
  - \* 일부에서는 닛컴 버블 붕괴 후 수용적 통화정책의 철회가 지연된 것이 과도한 위험선호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입장

### 1) 통화정책

- 통화정책 담당자가 직면한 핵심 이슈는 긴축통화정책의 시행시기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처리(unwind large balance sheets) 방법
- 통화정책의 기초전환 시점(monetary policy tightening)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은 다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인여생산능력 등에 따른 산출갭과 물가안정으로 인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통화정책 기조를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은 정부채 시장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다시 매각할 수 있음
  - 그러나, 너무 이른 매각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으며, MBS 등 일부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

**②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지원 유지**

-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확고하게 회복될 때까지 재정지원은 유지될 필요
  - 만약 하방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에 비해 확대될 필요성도 존재
- 정부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에서 향후 대규모 재정조정이 필요
  - 무엇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

**③ 금융부문 개혁**

-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
  - 부실자산 처리 · 자본확충 · 새로운 금융환경(자금조달 방식 및 규제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
  - 향후 금융부문의 개혁은 ①규제범위의 확대, ②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③시장규율의 확립\*, ④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등을 토대로 추진될 필요

\* 금융기관의 자체 정리계획 수립, 주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권한을 감독기관에 부여,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확충 등

**④ 사회정책**

- 선진국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
  -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세액 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s) 등을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Job Matching 및 교육훈련 확대

- 일부 개도국이 직면하는 빈곤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확보될 필요

**II. 국가 · 지역별 전망**

- (미국) 전례 없이 확장적인 정부정책에 힘입어 '09. 2분기 이후 안정세로 전환
  -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 강도와 지속성은 금융시스템 안정, 출구전략, 가계 등의 불균형 해소 등에 좌우될 전망
  - \* 미국의 성장률 전망(%) : ('09년) Δ2.7 ('10년) 1.5
- (아시아) 중국 등의 확장적인 정부정책, 금융시장 회복 및 해외자금 유입, 재고조정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취약한 노동시장 · 유희생산시설 등에 따른 투자 수요 약화 ·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분명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대만	싱가폴	홍콩	한국
'09년	Δ5.4	8.5	5.3	4.0	Δ3.5	Δ4.1	Δ3.3	Δ3.6	Δ1.0
'10년	1.7	9.0	6.5	4.8	3.7	3.7	4.1	3.5	3.6

- (유럽) 독일 ·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09.2/4분기 성장률이 (+)로 전환되는 등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모습
  - 그러나, 금융중개기능 약화 · 정부정책 효과감소 · 동유럽 경기부진 지속 등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09년	Δ5.3	Δ2.4	Δ4.4	Δ5.1	Δ3.8	Δ6.7	0.5	Δ3.4	Δ7.5
'10년	0.3	0.9	0.9	0.2	Δ0.7	0.9	2.1	1.6	4.0

#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 - 5월 1일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감동의 무료 세무서비스 -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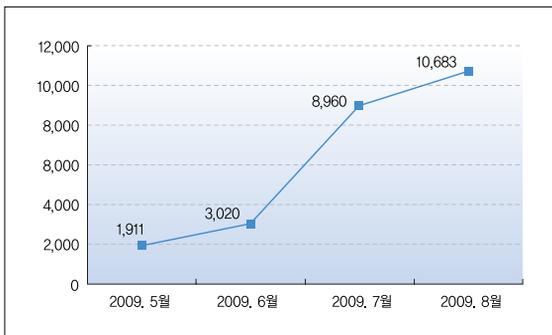
### 1. 1만 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 ① 시행 4개월 만에 영세납세자의 길잡이로 안착

- 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31일까지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함
- 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 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임
-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금 신고지원, 과세자료 소명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8월말 현재 10,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함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실적 추이(누적)

(단위: 건, %)



### 2. 국세행정 접점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세납세자를 지원

#### ② 신고지원, 고충 및 불복민원, 체납처분 등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됨
-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함
- 8월말 현재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0,683건은
  -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9,161건 (85.7%),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관련 736건 (6.9%), 체납처분 관련 345건(3.2%), 과세자료처리 관련 199건(1.9%), 기타 242건(2.3%)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임

- 시행 4개월 만에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영세납세자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여
- 세무도우미\*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준 높고 실용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임

\*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이며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하였음

### 3.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

③ 국번 없이 ☎1577-0070번으로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 5. 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④ 운영상황 상시 점검, 현장중심 홍보 강화 등

-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방식을 중앙, 지역 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상담을 병행할 계획임

\* 지방청별·관서별로 지역 사업자단체 등 홍보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

- 향후에도 세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

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 | 재정통계 |



- 상속세 예산 및 징수
- 상속세 부과
-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1. 상속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A)	(B)		(C)			(B/A)	(C/A)
1965	64	53	44	49	0	4	82.7	76.3
1966	101	80	137	77	0	3	78.9	76
1967	78	192	280	175	0	17	246.4	224.1
1968	233	308	296	263	0	44	132.1	113
1969	270	399	504	370	0	28	147.6	137.1
1970	313	1,039	1,407	870	12	157	332	278
1971	407	1,233	1,586	1,036	10	188	303	254.6
1972	882	1,162	1,053	955	10	196	131.7	108.3
1973	957	1,376	1,268	877	2	496	143.8	91.7
1974	1,824	1,636	1,685	1,601	1	34	89.7	87.8
1975	4,200	5,083	9,613	4,234	1	848	121	100.8
1976	2,947	8,241	5,438	5,687	12	2,542	279.6	193
1977	3,308	5,118	3,981	4,917	18	183	154.7	148.6
1978	4,148	4,225	3,187	3,799	19	407	101.9	91.6
1979	9,573	7,301	1,796	6,582	52	667	76.3	68.8
1980	9,311	11,265	4,290	9,623	33	1,608	121	103.4
1981	11,859	18,389	22,671	11,975	24	6,390	155.1	101
1982	14,471	22,483	20,326	17,889	209	4,385	155.4	123.6
1983	16,728	21,957	21,516	18,107	116	3,733	131.3	108.2
1984	22,567	39,812	40,929	19,946	317	19,549	176.4	88.4
1985	21,564	27,078	28,225	17,821	810	8,446	125.6	82.6
1986	18,594	45,069	48,460	33,382	2,348	9,339	242.4	179.5
1987	38,696	42,970	50,558	32,724	1,506	8,740	111	84.6
1988	49,736	56,460	53,896	36,007	1,892	18,561	113.5	72.4
1989	39,165	53,986	87,704	39,472	2,096	12,418	137.8	100.8
1990	40,942	82,240	115,506	71,033	635	10,572	200.9	173.5
1991	97,486	143,017	230,967	104,372	31	38,614	146.7	107.1
1992	119,618	226,987	325,624	175,030	51	51,906	189.8	146.3
1993	179,485	475,923	676,050	346,337	1,215	128,371	265.2	193
1994	498,700	629,226	783,725	523,570	2,340	103,316	126.2	105
1995	632,500	772,470	880,967	605,644	19,444	147,382	122.1	95.8
1996	762,900	712,260	720,296	565,773	10,812	135,675	93.4	74.2
1997	615,100	708,056	779,527	604,660	8,456	94,940	115.1	98.3
1998	360,600	490,200	727,852	309,488	12,913	167,799	135.9	85.8
1999	473,530	674,426	711,384	480,670	52,989	140,767	142.4	101.5
2000	523,100	573,003	513,720	448,711	14,965	109,327	109.5	85.8
2001	439,300	505,114	401,147	429,955	11,392	63,767	115	97.9
2002	453,600	474,027	473,674	397,819	30,826	45,382	104.5	87.7
2003	428,900	528,748	462,331	485,302	9,543	33,903	123.3	113.2
2004	374,800	686,966	953,973	588,328	11,246	87,392	183.3	157
2005	734,100	742,629	725,607	701,964	10,583	30,082	101.2	95.6
2006	821,500	930,555	757,582	867,649	7,489	55,417	113.3	105.6
2007	1,015,800	1,132,167	1,166,555	1,058,963	6,412	66,792	111.5	104.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상속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재산가액	공제금액 <sup>1)</sup>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 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1965	590	734	446	288	44	516	-	44
1966	711	1,456	690	767	154	17	-	137
1967	664	2,048	793	1,256	290	7	-	280
1968	490	2,805	1,237	1,568	424	128	-	296
1969	455	3,871	2,061	1,866	527	24	-	504
1970	585	7,040	2,565	4,475	1,724	320	-	1,407
1971	666	8,718	3,436	5,282	2,059	661	-	1,586
1972	664	8,110	4,313	3,798	1,237	184	-	1,053
1973	407	7,322	3,597	3,725	1,376	107	-	1,268
1974	296	9,036	4,775	4,262	1,820	135	-	1,685
1975	241	21,853	5,131	16,722	10,166	553	-	9,613
1976	270	26,705	15,807	10,898	5,898	460	-	5,438
1977	300	18,353	9,773	8,580	4,202	221	-	3,981
1978	285	16,877	8,352	8,525	4,039	852	-	3,187
1979	317	14,544	9,488	5,056	1,946	150	-	1,796
1980	350	27,777	17,510	10,267	4,551	262	-	4,290
1981	866	94,558	40,781	53,777	29,569	6,898	-	22,671
1982	820	92,185	47,164	45,021	21,297	971	-	20,326
1983	1,105	120,456	60,926	59,529	26,717	5,201	-	21,516
1984	1,144	180,560	82,957	97,604	45,346	4,893	476	40,929
1985	1,110	157,275	82,262	75,013	32,526	5,368	1,066	28,225
1986	1,324	231,971	117,443	114,527	51,576	4,625	1,508	48,460
1987	1,140	246,699	127,288	119,411	53,904	5,162	1,816	50,558
1988	1,414	261,368	133,496	127,872	57,356	6,428	2,968	53,896
1989	1,703	404,130	191,582	212,548	95,703	11,148	3,149	87,704
1990	2,294	655,696	329,188	326,508	129,230	20,074	6,350	115,506
1991	2,869	872,847	326,380	546,467	241,497	28,258	17,728	230,967
1992	3,438	1,510,240	671,284	838,956	334,185	37,695	29,134	325,624
1993	2,291	2,196,649	683,219	1,512,430	691,053	76,658	61,655	676,050
1994	2,549	2,680,931	884,291	1,796,640	794,154	99,366	88,937	783,725
1995	3,464	3,300,717	1,241,930	2,058,787	890,074	92,025	82,918	880,967
1996	2,850	3,086,530	1,206,997	1,879,533	730,124	79,879	70,051	720,296
1997	2,805	3,651,648	1,511,464	2,140,184	812,349	141,569	108,747	779,527
1998	3,455	4,555,897	2,239,207	2,316,690	778,973	136,957	85,836	727,852
1999	2,020	3,826,440	1,754,197	2,072,243	752,021	118,146	77,509	711,384
2000	1,389	3,413,441	1,548,159	1,865,282	639,102	168,161	42,779	513,720
2001	1,982	3,081,159	1,647,176	1,433,983	449,280	86,313	38,180	401,147
2002	1,661	2,993,597	1,226,500	1,767,097	583,178	142,049	32,545	473,674
2003	1,720	3,127,966	1,586,148	1,541,818	534,966	102,672	30,037	462,331
2004	1,808	4,791,927	1,916,268	2,875,659	1,171,007	263,526	46,492	953,973
2005	1,816	3,799,637	1,953,049	2,645,835	1,032,624	337,886	30,967	725,607
2006	2,221	4,159,079	2,180,502	2,510,410	931,919	210,277	36,925	757,582
2007	2,603	5,794,589	2,802,838	3,616,719	1,390,659	276,810	52,706	1,166,555

주: 1) 2005 이후 공제금액은 상속공제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 공제를 합한 공제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백만원)

연도	토지	건물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합계	재차증여가액	총계
1965	391	140	88	111	730	4	734
1966	732	272	194	197	1,395	61	1,456
1967	1,034	356	467	180	2,037	11	2,048
1968	1,522	458	358	245	2,583	222	2,805
1969	2,290	815	404	292	3,801	57	3,857
1970	3,783	885	1,594	576	6,839	202	7,040
1971	4,929	1,290	1,961	503	8,683	35	8,718
1972	4,948	1,207	964	897	8,016	95	8,110
1973	4,477	1,407	698	637	7,219	103	7,322
1974	4,849	1,464	2,038	644	8,994	35	9,029
1975	4,554	1,830	9,935	1,091	17,410	4,443	21,853
1976	14,947	3,146	6,595	1,196	25,884	821	26,705
1977	8,799	3,035	4,095	1,969	17,898	455	18,353
1978	9,485	2,743	1,714	1,502	15,443	1,434	16,877
1979	8,190	3,103	1,808	1,401	14,502	142	14,644
1980	15,424	6,276	2,868	2,645	27,213	565	27,778
1981	52,147	21,457	12,148	6,969	92,721	1,837	94,558
1982	54,117	22,145	9,526	5,685	91,472	713	92,185
1983	63,377	29,515	12,483	5,733	111,107	9,349	120,456
1984	110,931	34,813	17,718	5,714	169,176	11,384	180,560
1985	90,029	41,871	8,986	10,242	151,128	6,148	157,275
1986	134,488	59,611	15,664	16,396	226,159	5,812	231,971
1987	144,811	61,699	24,809	10,451	241,770	4,929	246,699
1988	136,918	46,355	40,995	23,331	247,599	13,769	261,368
1989	233,780	88,091	50,098	17,583	389,552	14,578	404,130
1990	420,780	111,432	60,993	32,346	625,551	30,145	655,696
1991	575,849	123,413	114,063	12,731	826,056	46,344	872,400
1992	942,171	161,454	150,477	12,073	1,266,175	123,629	1,389,804
1993	772,910	131,807	165,801	46,600	1,117,118	239,842	1,356,960
1994	929,181	145,594	195,278	15,397	1,285,450	191,289	1,476,739
1995	1,305,678	225,765	196,307	20,604	1,748,354	223,023	1,971,377
1996	2,067,960	348,295	333,255	115,522	2,865,032	221,498	3,086,530
1997	2,247,262	326,016	541,247	121,470	3,235,995	415,653	3,651,648
1998	2,838,273	412,623	582,640	414,796	4,248,332	307,565	4,555,897
1999	2,236,789	225,555	840,232	272,432	3,575,008	251,432	3,826,440
2000	1,772,175	301,817	711,103	193,552	2,978,647	434,794	3,413,441
2001	1,626,148	293,520	548,262	270,052	2,737,982	343,177	3,081,159
2002	1,360,318	288,524	691,621	229,492	2,569,955	423,642	2,993,597
2003	1,402,434	326,279	796,910	251,788	2,777,411	350,555	3,127,966
2004	1,624,802	415,619	1,693,244	476,678	4,210,343	581,584	4,791,927
2005	1,633,167	525,654	1,255,046	225,035	3,638,902	-	-
2006	1,839,823	705,798	1,223,772	251,958	4,021,351	-	-
2007	2,293,302	1,208,156	1,836,768	301,266	5,639,492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외국기업, 한국은 세금으로 가장 힘든 나라

세무조사는 적법여부가 아닌 돈 걷기 위해

국내 조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세금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며 세무조사의 목적도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토론회에서 조세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세무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조세·세무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윤희 원장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조세 흐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가경영개발원(IMD) 등 국제평가기관의 우리나라 조세 분야에 대한 평가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 등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변화되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IMD 등의 평가는 설문 조사에 비중이 큰 만큼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지만 최근 발표된 국제기관의 조세 평가는 부정적인 게 많다”면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조세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세 개혁에 있어 기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조세 제도를 자주 바꾸면 조세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정부의 부단한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정부 조세 정책의 일관성, 예측성,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일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도 20년 동안 유지된 것을 올해 말로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바람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 심 주한미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기업들 사이에 한국이 인도에 이어 세금 문제로 가장 힘든 나라로 꼽힌다”면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세무 조사가 투명성이 없다는 견해를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세무 조사 목적이 적법 여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걷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은 “조세를 집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정부 조직 특성상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협의 과정에 애로사항이 일부 있다”면서 “세무 조사 또한 탈세를 전제로 진행돼 서로를 존중하는 시각이 아쉽다”고 말했다.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 대표이사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조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15일자)

### ‘녹색 조세체계’ 구축 서두르자

(기고)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기, 책임분담에 대한 논의에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발전의 축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3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유해 보조금’ 점진 철폐를

하지만 이러한 국가전략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CO<sub>2</sub>) 저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더욱이 세계시장이 녹색기술 및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은 저탄소 녹색기술시장 선점과 녹색수출 확대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유인체계가 아직 매우 미약하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도로건설이나 산업 지원을 위해 복잡하게 운영돼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은 녹색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미래의 기대수익과 비용에 관한 적절한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전달받지 못해 이 분야에 과소투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에너지·자동차·친환경설비·건설·주택·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국민생활에서 저탄소 소비 패턴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의 녹색투자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작용한다. 가령 발전용 석탄에 대한 보조금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행한다. 이 같은 ‘환경유해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철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면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비례)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률을 높여주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조세체계에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면 탄소저감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행위변화를 유도,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정책 DNA’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탄소(비례)세는 무상분배 배출권거래제나 자발적 협약과 달리 추가세수를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를 위한 세출 측면의 보조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화석연료에 탄소세 강화해야

더욱이 지난해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조치와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법인세·소득세

의 2단계 인화조치와 연계해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재정건전성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최근 여러 선진국에 이어 프랑스가 내년에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도 2013년 탄소세 도입을 건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만 내세우고 있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의 저탄소 소비·생산 구조로의 체질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세계개편과 녹색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녹색 조세체계 구축 없는 녹색성장의 길은 매우 험난한 것 아닐까.

(서울경제 2009년 10월 12일자)

## 고액납세자 존경받는 풍토로

### 〈기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세청이 지난 4년간 10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 2600여명이 3조6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1인당 평균 5억5000만원씩 1조4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소득탈루율은 1차 조사 때 56.9%에서 10차 조사 때 40.9%로 낮아졌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 의혹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탈루율은 이보다 낮다. 필자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평균 소득탈루율은 2000년 46.1%, 2005년 36.0%, 2007년 26.3%로 위의 수치보다 낮다. 소득탈루율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성실납세 의식이 빠르게 확산됨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발표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 탈루액이

많아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일반인은 평생을 벌어도 만져 보기 어려운 큰돈을 탈세해서 그렇다. 그러나 2007년 현재 국세청 등록사업소득자 49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비중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이다. 훨씬 더 많은 다수의 고액납세자가 조용하지만 묵묵히,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에 안도하고 싶다.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은 70%를 조금 넘는다고 추정된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70~90%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득탈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탈루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다.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나 행정은 상당히 잘 정비된 편이다. 그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과 세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높은 소득탈루율의 원인이 된다. 서양에서는 중세 이래 영주(또는 국가)가 신변 및 재산권을 보호해준 대가로 세금을 인식했다. 반면에 우리는 조선 말기의 '삼정문란'이나 일제강점기에 보았듯이 세금을 수탈의 도구로 사용했다. 세금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정서가 뿌리 깊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탈세가 오히려 애국운동이자 저항운동으로 여겨졌다.

고소득층 탈루를 막는 현재의 장치는 대부분 규제와 징벌적 처벌 위주이다. 일각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찍만으로 탈세의 뿌리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부부 사이에도 감추어둔 소득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대, 본인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규제와 처벌만으로 장롱 속에 감춰둔 소득을 찾아 과세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세금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나 처벌 위주의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정책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양심과 성실에 바탕을 두고 존경과 부러움을 확대재생산하는 정책수단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세금을 잘 낼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학계에서 많이 제기한 조세

마일리지 제도가 좋은 예이다. 이를 통해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불법·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규제나 처벌 일변도의 꾸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어린아이를 위대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탈세 방지를 위해 채찍은 많이 들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 고액납세자일수록 존경하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고소득층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야 한다.

(동아일보 2009년 10월 8일자)

## 두 토끼 잡기 나선 '2010 예산안'

〈기고〉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지난달 28일 발표된 2010년 예산·기금안에서 우리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목표와 고민들을 함께 엿볼 수 있다.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이라는 기본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초는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비추볼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재정건전성과 관련,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며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3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경제위기 및 MB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9%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올해 GDP의 7.7%에서 내년 8.8%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91.6%에서 내년 100.2%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물론 대외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이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복지예산 증가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주요 선진국들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지출이나 재정수지 등의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나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면서도 중기적 재정운용목표가 보다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 예산에서 눈여겨 볼 점은 R&D나 복지예산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위축된 민간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위기에 대처하는 일시적인 비상대책인 것이며,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들의 근로의욕과 소비, 저축, 투자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재정건조성을 축소하고 민간중심의 경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시장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또 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2009년 10월 6일자〉

그는 “내년 총지출을 293조4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로 올해(-5%)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세출 쪽에서 올해 추경예산 대비 10조원이 절감되고 세입에서도 늘어 양쪽에서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 센터장은 국가채무에 대해 “내년에 GDP 대비 38%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2012년까지는 40%를 넘을 수도 있으며, 2013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경우 4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9년 9월 19일자〉

## 조세연구원 “내년 세수 170조 예상”

### 국가채무 GDP대비 38% 수준 상승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안보다 많은 165조~166조원이 되고, 내년에는 1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 전망’ 공청회에서 “세계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되고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 내년 세수는 2008년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날 보고에서 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 잡힌 164조원보다 1조~2조원이 많은 165조~166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포럼

2009년 10월호 통권 제16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10월 15일 발행 / 제14권 제10호(통권 제16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